

관내는 대륙에 접한다고 하는 지리적 관계상 대상자 중 86명은 만주 북지(北支)에 진출해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 | |
|------------|-----|
| 농업에 종사하는 자 | 41명 |
| 상점경영자 | 11명 |
| 점원 | 5명 |
| 군대 통역 | 2명 |
| 신문기자 | 1명 |
| 불명 | 26명 |

이다. 그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당소와 연락 없이 진출하고 있다.

4. 사건처리 상황

사건을 수리(受理)하자마자 사상동요의 우려가 있는 자, 생활이 불안정한 자, 혹은 사유 발생이 새로운 자부터 순차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조사에 즈음에서는 미리 경찰서에 본인이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사상 및 생활 상황의 조사를 의촉(依囑)하거나 혹은 본인에게 스스로 소요사항을 기재 반송하게 한 뒤에 본인의 집에 출발하여 엄하게 신문하는 태도를 피하고 좌담 중에 진실을 파악하는 것에 힘써서 조사하고 있다. 종래 심사회는 매월 1회 평균개최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금년에 들어와 월 1회 개최를 장려하여 행하고 있어서 미제(未濟) 건수의 감소를 보기에 이르러 당소의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사건 처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 | |
|----------------------------------|-----|
| (1) 처리사건 총 건수 | 87 |
| A 전년 이월 | 56 |
| B 신수(新受) | 31 |
| (2) 심사 불청구 | 14 |
| (3) 심사 청구 | 38 |
| A 가결 | 37 |
| B 부결 | 1 |
| (4) 타청(他廳) 이송 | 2 |
| (5) 그 외 | 3 |
| (6) 미제 사건 | 30 |
| (7)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자 | 37 |
| A 보호사 관찰에 대한 자 | 34 |
| B 보호자 인수 | 1 |
| C 보호자 단체 위탁 | 2 |
| (8) 1939년 8월말 현재에 있어서의 보호관찰 총 인원 | 124 |
| A 보호사 관찰 | 117 |

| | |
|----------------------|----|
| B 보호자 인도 | 1 |
| C 보호단체 위탁 | 3 |
| D 그 밖에 적당한 자에게 위탁 | 3 |
| (9) 기간만료에 따라 처분갱신한 자 | 19 |

5. 사상보국연맹 신의주 지부의 활동 상황

사상보국연맹 신의주 지부는 지난 해 9월 3일에 결성되어 아직 시일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적 정비가 꼭 완전하지는 않은 중에서 시국의 중압은 한 순간도 안락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연맹원 일동은 즉시 사상전선의 제일선에 진출하여 그 사명이 명하는 곳에 되는 대로 결속하여 실천을 충실하게 감행해온 바 오늘날 그 자취를 반성할 때 일간 11개월간의 발자취가 결코 무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하는 바다. 올 1월 이후의 활동상황 다음과 같다.

1) 시국에 대응하는 활동

(1) 국경경비경찰관 위문

국경경비경찰관은 사실 제일선 장병과 그 신고(辛苦), 공로에 있어서 추호의 참차(參差)³⁵⁾가 없다. 따라서 이 위문을 계획한 결과 금년 2월 8일 일본정신발양주간 제1일 다케무라(竹村) 보호사, 동도(同道) 연맹원 조기승(趙紀勝) 외 4명이 본도(本道) 경찰부장을 방문해 위문하였고 곁들여 금 100엔을 전해 주며 제일선 경비 경찰관에게 증정할 것을 의뢰했다.

(2) 전몰(戰歿)장병 유가족 위문

금년 3월 10일 육군 기념일을 의의있게 하기 위해 부내 전몰장병의 유가족 4집을 각각 위문하여 향화(香華)³⁶⁾로 각 5엔씩을 증정한 뒤 동행한 촉탁보호사 북출입전(北出入佃, 정토사(淨土寺) 주직(住職) 및 토판현료(土坂顯了, 서본원사(西本願寺) 주직(住職)의 독경을 바쳤다.

그때 용사의 유서를 낭독했는데 감명이 의외로 깊은 것이 있었고 연맹원에 대한 정신적 효과 또한 심대했던 것을 기뻐한다.

(3) 영령에 생화를 증정

매월 애국일(제1 일요일)에 위 유가족을 방문하여 생화를 바친다.

(4) 각 연맹원에게 내선일체, 일본정신, 시국인식 등에 관한 '팜플렛' '리플렛' 등을 수회에 걸쳐 분포한다.

(5) 강연회, 영화회 개최

4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어서 선천(宣川), 정주(定洲), 영변(寧邊), 강계(江界), 초산(楚山), 삭주(朔洲), 의주(義州) 7개소에 분회 결성을 보았는데, 이를 계기로 위 7개소 및 신의주에 있어서,

조선군사령부 □소좌(□少佐)

35) 참차부제(參差不齊), 뒤섞여 가지런하지 못한 모양.

36) 불전에 공양하는 향과 꽃.

연맹지부장 고일청(高一淸)

연맹지부간사 김응방(金應芳)

및 소생 등 연사(演士)로서 강연회를 개최하여 시국, 내선일체, □원정신 등에 대해 강연하여 효과가 심대했던 것을 믿는다. 또한 위 7개소 중 강계, 초산, 삭주, 의주 4개소에서 조선군사령부 원조 제공하에 영화회를 개최.

〈일본(日本)〉 〈부인과 국방(婦人と国防)〉 〈화통의 울림(火筒の響)〉 〈전우(戰友)〉

등의 영화에 의해 일본의 진정한 모습, 부인의 자각 등에 대해 반도인 계몽에 저절로 효과를 거뒀다.

또한 7월 23일 지부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향자의 심경을 말하는 회’를 개최하여 연맹원 길일수(吉一錫) 외 3명의 심경을 발표하여 일반 인사에게 호소하는 바 있었다.

(6) 사상전 무기의 헌납

2월 11일 기원절(紀元節)의 가일(佳日) 본부 계획에 관계되는 사상전 무기 헌납에 참가 연맹원으로부터 금 100엔을 각출했다.

(7) 폐품회수

① 7월 7일의 지나사변 2주년 기념일에 위문주머니 작성 증정 계획에 대비하여 기금 양성을 위해 폐품회수를 행한다. 즉, 7월 2일의 애국일에 연맹원 및 야학부 생도 중 연장자 등 5반으로 나누어 종래 뒤돌아보지도 않았던 조선인 거리의 폐품을 회수한다.

그 수익, 22엔 19전

② 8월 10일의 장고봉(長鼓峰)사건³⁷⁾ 1주년 기념일에 국경 수비대 장병에 대한 위문금 증정 계획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폐품회수를 행한다.

그 수익 29엔 88전

폐품회수는 금후 매월 애국일 행사로 한다.

(8) 위문주머니 및 위문금 증정

① 7월 7일 지나사변 2주년 기념일에 제일선 장병 위문을 위해 위문주머니 작성한다. 위 폐품회수로부터 얻은 금 22엔 19전에 연맹원 유지 및 관찰소 직원 각출금을 합한 금 49엔 36전 중에서 금 34엔 69전으로써 위문주머니 18개를 작성, 이를 군사후원연맹에 기탁한다.

② 8월 10일 장고봉사건 1주년 기념일에 국경 수비대 장병에게 위문을 위해 폐품회수 2)항 기재의 29엔 88전에 전 항 잔금 14엔 67전을 더한 금 44엔 55전(중 송료 35전 공제)을 조선군사령부에 기탁한다.

(9) 명령에 대한 추도회

7월 7일 사변 2주년 기념일에 당지 서본원사에서 오전 9시부터 지나사변 전몰영령에 대한 추조회(追弔會) 집행, 부내 연맹원 일동 외에 야학부 생도 150여 명 및 관찰소 직원 일동 참가했다.

(10) 금 헌매(獻賣) 알선

기관지 『아리나라(ありなれ)』로부터 금헌매(獻賣)를 연맹원에게 호소하여 이 알선을 연맹에서 취급

37) 1938년 7-8월에 조선, 만주, 소련의 국경 부근에 있는 장고봉에서 일본과 소련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한 사건.

한 바 현재 467엔 15전의 헌매 알선을 마쳤다.

2) 정신보도에 관한 활동

(1) 매월 제1일 일요일을 애국일로 정하여 조조신사참배, 궁성요배 후 경내 청소 그 밖에 근로봉사를 행해 왔다.

단 7월부터 위 근로봉사를 폐품회수 행사로 바꿨다.

(2) 군사후원, 실전담, 수양 강화(講話), 좌담회 등 십 수회에 걸쳐 개최한다.

(3) 기관지 발행

연맹원의 정조합양과 지방적 색조를 왕성하게 함을 주로서 지나기관지 『아리나래』를 매월 400여 부 발행.

(4) 야학부 개설

내선일체 즉 황국신민 완성에 국어 철저의 필요를 통감, 부내 미취학자 300여 명을 모아연맹원 스스로 교편을 잡고 국어 교수를 맡고 있다.

그 개황 다음과 같다.

가. 야학부 수강상황

① 금년 3월 17일 우선 연맹지부원 그 부녀자 지나어 미해(未解)자 25명을 목공부 2층에 수용하여 당소 직원 및 연맹원 등 번갈아 야간 이 교수를 행해온 바,

② 5월 19일 연맹원 백명규(白命奎), 손학현(孫學玄) 두 명이 그 공동경영(연맹 원조 하에)에 관련된 목공부에서 일반 미취학 자제에 대해 야간 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싶다는 취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그 취지를 상양(賞揚)하여 즉시 이를 실시하게 했지만, 금새 105명의 수학회망자가 있음으로써 이를 지부 직영 목공장과 위 두 명의 공동경영 목공장에 적당히 배분하여 그날 밤부터 개강해왔다.

그러나 위 수강에 요하는 교본, 잡기장, 그 밖에 모든 비용은 지부에서 부담해왔다.

③ 그런데 위 교장(敎場) 충당의 양 목공장은 모두 주간 작업 제품, 기구 등의 정리 및 유루(遺漏)가 없기를 기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품이 대량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저기 아동들의 호기심적 유희로부터 예측하지 못하는 손상이 없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후자인 연맹원 자영공장과 같은 경우는 2층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름뿐이고, 사실상 다락방을 개조한 것으로 통풍이 유난히 좋지 않고 5월말 야간에 이미 방에 열기가 있어 보건상 좋지 않다. 또한 다수를 수용한 결과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하지 못할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장소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각 방면에 원조를 구한 바 다행히 당지 국경노동회관 주재(主宰) 정원섭(鄭元燮)이라는 자의 양해하에 동회관을 야간 차용(무료)의 편의를 얻었기 때문에 6월 21일에 이전, 동아부터 개강했다.

④ 위 회관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또한 광범하기 때문에 그 후 학급 증가를 기획한 바 응모자 실로 많아 이를 연장인 자부터 순차 수용하여 현재 인원수 318명이 되어, 이를 능력고사 결과 4반으로 나누어 수강하고 있다.

그 중 최고 38세부터 최저 21세까지의 가정부인이 29명 있고, 또한 그 중에 유아를 동반하고 있는 자 3, 4명이 있고 대체로 진솔하다.

그 경비책임자 다음과 같다.

야학부 주임 이방우(李芳遇)(통역생) 교무주임 길일수(吉一洙)(연맹원)
서무계 박광원(朴光遠)(연맹원) 물품외계계 송이관(宋利官)(연맹원)
교사로서는 위 4명 외 연맹원 3명
관찰소 직원 2명
도 사회과로부터 스즈키(鈴木)축탁 외 수 명

나. 야학부 파생 행사 상황

① 7월 9일(일요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야학부 생도를 교장(敎場)인 노동회관에 소집하여, 주로 과외 정조(情操)교육을 행한다. 다행히 당국 축탁보호사 중에는 일요학교 경영 경험자가 2, 3명 있어서 이들을 교대로 담당하게 한다.

당 지방은 기독교□로서 일요일은 야학부 생도의 대부분이 일요일예배에 향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를 견제하여 황국신민 완성의 길에 여념 없기를 기하려고 한다.

② 응소(應召), 출정 장병의 환송영

야학부 생도는 거의 빈민계급인가하면 부형과 생활에 급급하기 때문에 응소, 출정 장병의 출발 통과시간 등을 지득(知得)할 기회가 부족하고, 또한 가령 이를 지득했다고 해도 환송영에 관해 각별한 감정이湧出(湧出)하기에 결핍된 상태에 있었는데, 야학부 설치 후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환송영을 장려하여 행하고 있다.

즉 전날 밤 야학 시 시간을 고지해두고 위 시각에 역 앞에, '시국대응 전선(全鮮) 사상보국연맹 신의주지부'인 깃발을 선발하게 해두고 연맹원 및 야학부 생도를 이에 집합하게 하여 도열(堵列)해서 환송영을 행한다.

요즈음에는 일요학교에서 교수한 〈일본 육군의 노래(日本陸軍ノ歌)〉 〈애국행진곡(愛國行進曲)〉 〈애마진군가(愛馬進軍歌)〉 등을 고창, 각자 수기(手旗)를 흔들며 열의 있는 송영을 행한다.

항상 200명 내외의 집합을 보는 중, 가정부인인 생도가 유아를 업고 아동에게 섞여 진솔한 태도로 송영하고 있다.

요즘 여름휴가에 들어가 일반 정규학생의 환송영이 없는 중에 있어서 200명 내외의 조선복의 생도 일단이 소리높여 깃발을 흔들며주는 모습은 출정 장병의 눈에 저절로 감회를 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③ 폐품회수

7월 7일 지나사면 2주년 기념일에 위문봉투 증정 계획이 있었던 때 위문봉투 작성 자금을 폐품회수로부터 얻는 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7월 2일 (제1 일요일)의 당 지부 애국일을 이용하여 야학부 생도 50여 명을 5반으로 나누어 각 반에 지부원 2명을 반장으로서 인솔하고 종래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조선인 거리를 목표로 폐품회수를 하게 했다.

“실로 훌륭한 계획이다”라고 상양하면서 폐품을 주는 자

“지금 처가 부재라서 얼마 안 되지만”이라며 현금을 각출하는 자 등 조선인 거리에서 전에 없던 밝은 모습을 현출(現出), 오히려 일반 계몽의 효과도 따라왔다. 시국하 의의있는 행사를 2시간에 걸쳐 종료 수익 22엔 19전 있었다.

생도는 당초 좀 수치심에 주저하는 태도가 있었던 것도 점차 익숙해져서 스스로 솔선하여 각 호를 두드리기에 이르러 우리 선행을 행하는 양심적 희열의 빛을 엿보아 알 수 있었다.

위 수익금 및 지부원 유지 각출금을 더해 7월 7일 사변 기념일에 위문주머니 18개를 작성 증명한다.

또한 8월 10일의 장고봉사건 기념일에 국경수비대 장병에 대한 위문금 양성 목적으로 8월 6일(제1일) 애국일에 전 회와 동일한 폐품회수를 행하였고, 그 수익금은 29엔 88전이다.

다. 야학부에 대한 일반 지원

① 전기(前記)와 같이 국경노동회관 주재자 정원섭씨로부터 위 회관을 무료 대여받았다.

② 야학부 생도에게 학용품으로 부여되었으면 한다며 이와하타 고마(岩畑コマ) 씨 외 7씨로부터 865엔을 기증 받았다.

③ 지난 번 본부 학무국장님 내신(來新) 시 야학부 상황보고한 바,

국어 교본 327권

황국신민 선서 1,000매 기증이 있었다.

④ 본도 사회과장의 이해를 얻어 동과(同課) 촉탁 혹은 직원을 월 수회에 걸쳐 파견 교수를 응원받는 것 외에 월 1회 교육영화, 그림연극 등을 지참, 생도에게 참관하게 한다.

라. 야학부에 관한 회계 상황

야학부 생도에게 잡기장 혹은 연필이라도 사주라고 해서, 찬조금 총계

수입 865엔

지출 237엔 33전

위는 준비비, 교과서, 잡기장 등 그 밖의 잡비가 되는 것도 8월에 책상 그 밖의 것을 구입한 것에 대해 금월 분으로 2, 3백 엔을 지출 예정이다.

3) 생활전도에 관한 활동

(1) 목공장의 경영상황

① 직원연맹 개개의 생활전도에 관해서는 보호관찰소, 재단법인 자제회 등의 활동원조 하에 각각 생활안정을 얻어가고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취업이 곤란한 자, 혹은 취업의 전망이 있어도 아직 그 확정까지 상당 날짜가 있어서 임용할 수 있는 자 등을 수용하여 이에 수산(授産) 및 기술 습득을 도모하게 해야 할 필요를 통감하여 나무도시락, 나무젓가락의 제조를 계획해서 작년 12월 1일부터 목공부를 개설했다.

즉 영림서(營林署)의 이해와 원조 하에 원료, (원목 토막)을 염가로 불하 받아 운임을 가산한 것에 1할증으로 목공부원에게 인도하여 목공부원이 이를 나무도시락, 나무젓가락 등으로 제작하여 이를 연맹에 인수하여 적당히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목공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맹원은 9가족 30여 명이다.
그러나 이들 일 가족의 수익은 대개 평균 월 10엔 내외다.

② 목공부 수지(收支)상황

금년 7월말 현재의 수지 다음과 같다.

수입부

| | 엔 |
|----|--------------|
| 일금 | 10, 839 · 18 |

내역

재고원료

| | 엔 |
|-----|------------|
| 원목 | 1,513 · 50 |
| 토막 | 1,142 · 80 |
| 주머니 | 750 · 00 |
| 기구 | 650 · 20 |

재고제품

| | |
|----------|-------------|
| 얇은 판자 | 389 · 00 |
| 나무도시락 | 814 · 43 |
| 나무젓가락 | 1, 034 · 85 |
| 외상금 | 290 · 24 |
| 목공부원 원료대 | 1, 931 · 05 |
| 보증금(영립서) | 151 · 00 |
| 집세보증금 | 100 · 00 |
| 현금 | 86 · 10 |
| 제품 매상수입 | 1, 986 · 01 |

(연맹예산에 반환)

지출부

일금 9, 796엔 06(연맹으로부터 목공부에 지출기금)

공제잔액

일금 1, 043엔 12

(2) 생활 쇄신

현재 반도인의 생활습관에는 수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개선의 범위를 연맹원으로 하여금 솔선 장려하여 행하게 하기 위해 항상 강조, 역설해온 바, 연맹원도 매우 그 뜻을 명심하여 이 실행을 행하는 자 잇달아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그 실례 하나, 둘 요점을 기록하면,

① 부내 재주(在住) 연맹원 손학현은 목공부에서 취업 중이었는데 생활 곤궁 시에 있어서는 일가 총력으로 이 곤궁을 타개하기 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촉탁보호사 북출입전(北出立佃) 씨의 하녀로서 일하게 하여 월 수십 엔의 증수(增收)를 내고 있다. 이런 사례는 극빈 가정에 있어서는 꼭 드문 사례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에 어업조합 서기 등의 경력을 갖고 비교적 지식층으로 자처하는 본인과 같은 경우는 생각건대 용단(勇斷)이라고도 칭할만하다.

본인의 이 용단, 진지한 생활태도는 일반의 호감을 산출하는 바가 되어 요전에 자제회(自制會) 사무원 결원생이 생겨 동 회로부터 본인을 후임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취지 신청이 있었을 정도였다. 본인은 겸양 그 임무에 적합지 않다고 해서 이를 고사했지만, 관찰소의 알선, 자제회 이사의 직접 교섭 등으로 결국 본인도 삼고지우(三顧知遇)로 취임을 수락하는 등 취직에 바람직스러운 밝은 모습을 보였다.

목하 자제회 숙사에 전 가족이 이사하여 본인은 사무에, 그 아내는 동 회 수용 중의 보호생의 의식 알선을 행하고 있다. 그 생활태도는 점점 진지하다.

② 부내 연맹원

송□관도 동□□의□□□□력의 □□□□□□□□□□하등□처의 취업방침 알고 □□□□□ 뜻을 제출함에 중중의 고려결과 ○인하숙을 경영하게 되었다.

목하 본인은 목공부로부터 □□□□□□ 가구 목공소를 경영하고 아내는 하숙인 5명을 수용, 생활갱생에 진지하다.

③ 목공부 연맹원 박은□(朴恩□)은 □□□□□□ 본인은 □□□□□□ 타파를 기도하고 결혼식 피로연 증물(贈物) 등 모든 비용을 30엔으로 □□□□□□지난 9월 2일 정토사(淨土寺) 북출입전(北出立佃)(촉탁보호사)의 의식 하에 불교식 결혼을 거행하였다. 본인의 생활태도가 진솔한 것은 물론 상대방(비연맹원)이 이에 응한 것이야말로 기대 이상의 수확이었다.

④ 연맹원 일동 대마(大麻) 봉사를 행한다.

⑤ 애국저금 목공부원은 작금 겨우 기술적 습련(習練)의 결과 월수도 40엔을 거두고 있음으로써 이번 달부터 매월 애국저금 1엔씩 장려하기에 이르러 점차 저축심 배양과 국책 순응을 계획하고 있다.

(3) 사상보국연맹 신의주지부의 활동은 오로지 대 사회적 중시(終始)할만한 성질에 있으면 이에 대한 사회 태도는 연맹 활동의 성식에 중대한 영향을 갖는다는 이론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당 지부는 결성 당소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일반 인식과 원조를 구해왔기 때문에 일반의 인식이 실로 커서 적극적 원조를 주려고 하는 자 또한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에 항(項)을 나누어 연맹에 대한 관민 태도를 예증한다.

제1. 관공서 측의 태도

1. 경찰의 태도

연맹이 활동을 행하는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원조 이해를 바라는 것은 경찰 당국이다.

관찰소 개설 당초부터 경찰 당국과의 밀접한 연락과 지원을 얻는데 대해 여러 가지 연구, 구책해온 바 다행히 당국도 연락 협조에 적지 않은 성의를 보이고 있다. 이 점 실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변이 발발하고 나서 당소 관내인 평북도(平北道) 경찰관은 지리적 관계로부터 호조건으로 맞는 만주국에 수출하는 자, 혹은 번성 산업방면에 참여하는 자 등 상당히 많아 현재 이미 정원에 수백 명 부족을 산출하기에 이르고, 더군다나 시국하 특수사무의 극증은 점점 더 현원(現員)의 부담을 배가 해온 현상이다. 고등사찰(高等查察) 일손부족이 커지는 추세 또한 불가피한 현상에 있다.

그런데 당소가 사상보국연맹으로서 관내 대상자의 관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사상 국방의 일선에 집결 시켜 가고 있는 선도 진영을 보기에 이르러, 당국의 인식이 더욱 새로워진 것을 더하여 신뢰감도 점점 더 깊어졌다.

1) 핫토리(服部) 본도 경찰부장은 평상시 심사회 석상에서 이런 종류의 말을 공공연히 말한다.

2) 금년 5월말 본도 경찰서장 회의석상, 상기 경찰부장은 “경찰부는 보호관찰소, 사상보국연맹에 절대적 지원을 주고 각 서장은 보호사가 된 심산(心算)으로 이에 협력하라”고 훈시했다.

3) 사상보국연맹 당 지부의 각지 분회(지금까지 7개소)결성에 관해서는 위 경찰부장으로부터 심심한 축하가 있었다.

의주분회 결성식에 즈음하여 상기 부장 스스로 출석, 선천분회 결성식에는 고등과장을 파견 참석하게 한다.

또한 삭주분회 결성식에 즈음해서 삭주서장의 경성 출장 신청에 대해 분회결성 준비를 실행한 뒤에 이에 허가를 주고, 그 뿐만 아니라 동 서장에 대해 분회결성식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귀청(歸廳)을 명한 결과, 동 서장은 결성식 당일 오전 2시 자동차 특편(特便)으로 귀임한 사례가 있으며, 감사해마지 않는 바다.

4) 7월 23일 당 지부대회에서 목공부의 경영 보고 중에 제품의 재고품이 있는 취지를 설명한 바 참석 중의 고등과장으로부터 각 서에 명하여, 제품을 처분할 쪽을 알선해야 할 취지를 말하고 그 후 각 서에 그 취지를 통달했다. 그 결과 각 경찰서로부터 800엔의 나무젓가락 등의 주문이 있었다.

5) 위와 같이 경찰부에서 절대 지원을 방침으로 하면 관내 각 서가 함께 그 방침에 따르므로, 분회결성과 연맹활동에 보내는 각 서의 호의는 실로 치열하다.

작금 신의주 경찰서장과 같이 방공협회 사업을 사상보국연맹에 맡겼고, 또 고등과 이형사 및 신의주 서 고등계 윤행사는 연맹의 활동후원은 우리들의 직무이고 연맹의 기금 양성에 대해 재산조사 그 외의 것을 후원한다.

2. 그 밖의 관공서의 태도

그 밖의 관공서도 점차 연맹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력을 행하는 자 서로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1) 당지 영립서과 같이 연맹 목공부의 취지를 찬동하고 원료인 원목, 자투리 등의 불하에 각별한 계획을 행하여 원조를 주고 있다. 또한 지난번과 같이 영립서 직원에게 관찰소, 연맹의 취지 활동상황 혹은 현하의 사상문제에 대해 좌담회를 개최하여 소생 이하 직원연맹원을 초빙하는 등 적극적 교섭을 행하며 접근하고 있다.

2) 본도 사회과는 연맹 야학부 사업에 찬동하여 동과(同課) 직원 중 교수에 경험 있는 자로서 월 수회에 걸쳐 교수를 지원하는 것 외에 월 1회 교육영화, 그림연극 등을 개최하여 생도에게 참관하게 한다.

특히 사회과 스즈키(鈴木) 촉탁은 매일 밤 야학에 오는 생도에게 일본정신을 주입하고 있다.

3) 조선군사령부는 당 연맹의 활동을 지원하여 분회결성식 혹은 강연회는 항상 □소좌를 파견하는 등 또는 목공부 제품을 군수품으로써 매상해야 할 취지를 말한다.

4) 금년 7월 7일 만주국에 있어서도 사상범 선도기관으로서 보민교도위원회(保民教導委員會)를 결성하였다. 그 결성준비 시절 안동성(安東省) 경무직원이 자주 소생을 내방 관찰소 및 연맹 활동상황을 청취하고 이를 참고로 했다. 또한 7월 7일의 결성에 즈음해서는 특별히 소생도 초빙되어 요청대로 사상범 교화에 대해 강연한 바 동월 4일 동위원회 20수 명이 당 연맹을 시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만주국 방면에도 우리 연맹활동의 선전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5) 전단(前段) 야학부 개설 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부 학무국장님의 좋은 뜻으로,

국어 교본 327책
황국신민의 선서 1,000매

의 각 기증을 받았다.

6) 그 밖에 자제회, 방공협회와 같은 연맹과 부즉불리(不即不離)의 관계에 있으며 항상 원조 협조를 받고 있다.

제2. 민간 측의 태도

민간 측의 연맹에 대한 태도는 또한 실로 감격 깊은 것이 있다. 오늘까지 연맹에 보내어진 찬조신청 금액 46,000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써 그 태도를 말로 일일이 표현할 필요 없다고 사려하며 그 성의 있는 사례를 2, 3 요점을 기록함으로써 참고에 이용되게 하려고 한다.

1. 일부러 소생을 내방한 김수일(金洙一)같은 경우는,

“이번 사변으로부터 ‘내지인’은 6만 남짓의 희생이 있었다던데 반도인으로서 실로 감사해마지 않고, 우리들 반도인은 목하, ‘천황폐하’를 위해 신명(身命)을 바칠 기회가 부족하여, 적어도 물질적 봉사라도 행해야 한다. 다행히 귀 지부의 취지 활동에 감격이 새롭다, 자신은 목하 재산 상의 분쟁이 있어, 이 정리를 해버리면 한층 더 찬조하고 싶지만 당분간은 근소하지만 활동자금에 이용해주었으면 한다”라며 금 30엔을 제공하였다.

2. 동일 내방한 김향수(金享洙)는,

“당지(當地) 동(東)중학교(전 고등보통학교)는 수많은 공산주의운동에 참가한 생도를 내어 적지 않게 세간 및 당국에 폐를 미쳤지만, 자신은 동교(同校) 2회 졸업생으로서 후배의 지나간 죄에 대해 책임이 중대함을 느낀다. 이들 잘못된 후배를 선도하시는 보호관찰소 및 사상보국연맹에 대해 근소하지만 후원하여, 선배로서의 책임을 다소라도 완수하고 싶다”라며 금 1,000엔을 제공하였다.

3. 또한 당지 민간 측에게

“국방헌금과 사상보국연맹에 대한 기부는 우리들의 의무다”라는 유언(流言)이 있다는데 당지 형무소장의 말이다.

4. 그 밖에 전기(前記)과 같은 야학장에 국경노동회관의 무료대여를 응낙하는 등.

5. 멀리 함흥의 이태완(李泰完)으로부터 내선일체의 정신적(挺身的) 활동을 감사하는 서신에 첨부하여 금 500엔을 송금 하였다.

6. 다전영길(多田榮吉)³⁸⁾은, 연맹의 야학은 실로 영원을 얻었다. 자신이 일찍부터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연맹에서 실현해 주셔서 만강의 감사와 원조를 보내고 싶다며 소생에게 말하며 금 30엔을 제공했다.

7. 목하 찬조금은 반도인 측 31,500엔, 만지인(滿支人) 측 1,000엔 ‘내지인’ 측 13,500엔 인 바 신보신길(神保信吉)은 찬조금 2,000엔을 각출하는데 즈음해서 “반도인만 다액의 각출을 행하는 것은 내선일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들 ‘내지인’도 응분의 찬조를 행해야 한다”고 한다.

8. 중입정일(中込精一)은 찬조금 2,000엔 각출하는데 즈음해서 “당 신의주에서는 거액의 찬조금 각출금의 예가 없다. 이런 파격의 각출금은 결국 연맹 활동을 사회가 인식한 덕택이다”고 한다.

이와 같이 관민의 우리 연맹에 보내는 성의는 실로 심후하고, 사회의 연맹에 대한 부탁(負託) 기대에 응하기 위해 한 층 더 연맹 활동의 감독 책력을 기하고 있는 바다.

각 분회의 활동상황

1. 선천(宣川)분회

- 1) 4월 21일 분회 결성한 동야(同夜) 분회주체의 강연회 개최
- 2) 6월 21일 조선군 후원 하에 강연회 개최
- 3) 7월 7일 사변 2주년 기념일에 일반 행사에 참가 분회로부터 100엔을 취□하여 헌납함.

2. 정주(定州)분회

- 1) 4월 23일 분회 결성 동야 강연회 개최
- 2) 6월 10일 제1회 평의원회를 개최, 활동방침을 협의함
- 3) 6월 30일 제2회 평의원회를 개최
- 4)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3. 영변(寧邊)분회

- 1) 4월 25일 분회 결성한 동야 강연회 개최
- 2)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위문금 14엔 40전을 헌납함

4. 강계(江界)분회

- 1) 6월 13일 강계분회 결성한 동야 강연회 개최
- 2) 6월 27일 제1회 평의원회 개최, 활동방침을 협의
- 3)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위문주머니 10개를 송부 유가족을 위문함

5. 초산(楚山)분회

- 1) 6월 15일 초산분회 결성한 동야 강연회 개최

38) 전영길의 창씨명.

2)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위문주머니 20개를 작성하고 출정병사 유가족을 위문함

6. 삭주(朔州)분회

1) 6월 17일 삭주분회 결성한 강연회 개최

2) 6월 20일 지원병 유가족 위문

3)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위문주머니 작성 송부 유가족 위문

7. 의주(義州)분회

1) 6월 19일 의주분회 결성함

2)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위문주머니 작성 송부, 출정 유가족 위문, 위문주머니를 증정

오후 강연회 개최, 기념일에 즈음해서 분회 성명서를 인쇄 배부함

〈출전 : 新義州保護觀察所長, 「新義州保護觀察所 管内狀況」, 『思想彙報』 제21호, 153~178쪽〉

3. 사상범 예방구금제도

1) 법령

(1)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칙재를 얻어 이를 공포한다.

1941년 2월 12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제령 제8호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가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는 경우, 석방 후 또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본인을 예방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친 자, 또는 형 집행의 유예를 인도받은 자가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보호 관찰로는 동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여 재차 이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는 역시 전항과 같다.

제2조 예방구금의 청구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전항의 청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 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예방구금의 청구를 할 때는 미리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3조 검사는 예방구금의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취조를 하거나 또는 공무소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취조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본인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검사는 본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지 못한 경우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방구금 청구 시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옥에 가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항의 가수용은 본인의 진술을 들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단 본인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도망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전조의 가수용 기간은 10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예방구금의 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히 본인을 석방해야 한다.
- 제6조 예방구금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판소의 합의부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소는 전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소는 본인에게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본인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도망할 때에는 진술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형 집행 종료 전에 예방구금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형의 집행 종료 후라 하더라도 예방구금에 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 재판소는 사실을 취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사실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재판소는 공무소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검사는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을 하게 하거나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는 경우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9조 본인이 속한 가(家)의 호주, 배우자 또는 4촌수 내의 혈족 또는 3촌수 내의 인족은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보좌인이 될 수 있다.
보좌인은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는 경우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는 참고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소는 본인을 구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지 못한 경우.
 2. 본인이 도망할 때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3.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2항의 출두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 제11조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소는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옥에 가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전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가수용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형사령에 따를 것을 정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사소송법이라 칭한다)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10조의 구인에, 구류에 관한 규정은 제4조 및 전조의 가수용에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 및 책부에 관한 규정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예방구금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예방구금에 처한다는 결정에 대해 본인 및 보좌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제14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은 제6조의 결정에,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즉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는 예방구금소에 이를 수용하고 개전을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해야 한다.
- 제16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거나 편지 기타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는 편지 기타 물건을 검열, 차압 또는 몰수하거나 보안 또는 징계를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다. 가수용된 자 및 본령에 의해 구인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자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다.

제17조 예방구금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예방구금 기간 만료 전에 갱신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기간 만료 후라 하더라도 갱신 결정을 할 수 있다.

갱신의 결정은 예방구금 기간 만료 후에 확정되었을 때라 하더라도 이를 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갱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에서의 감옥은 예방구금소로 한다.

제18조 예방구금 기간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구금되지 않은 일수 또는 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일수는 결정 확정 후라 하더라도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 결정 확정 시 본인이 수형자일 경우 예방구금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를 집행한다.

감옥에 있는 본인에 대해 예방구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송 준비 기타 사유를 위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구금을 계속할 수 있다.

예방구금의 집행은 본인에 대한 범죄의 수사 기타 사유를 위해 특히 필요할 때에는 결정을 내린 재판소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34조 내지 제536조 및 제544조 내지 제552조의 규정은 예방구금 집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가 수용된 후 그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제17조에 규정된 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이를 퇴소시켜야 한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예방구금의 집행을 행하지 아니한지 2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결정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는 사정에 따라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천재 사변을 당해 예방구금소 내에 피난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용된 자를 다른 곳으로 호송해야 한다. 만약 호송할 틈이 없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석방할 수 있다.

석방된 자는 석방 후 24시간 내에 예방구금소 또는 경찰관서에 출두해야 한다.

제23조 본령에 의해 예방구금소 또는 감옥에 수용된 자 또는 구인장이나 체포장이 집행된 자가 도주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석방된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역시 전항과 같다.

제24조 수용설비 또는 계구(械具)를 손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통모하여 전

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조 전 2조의 미수죄는 이를 별한다.
제26조 본령에 규정하는 외에 예방구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 칙

본령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출전 :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制令 第8號)」,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2월 12일)

(2)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조선총독부령 제52호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41년 3월 7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제1장 수속 규정

제1절 구금에 대한 수속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가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될 경우 형무소장은 석방 전에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것을 통지해야 한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하 영이라 칭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해 동항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은 본인의 현재지 또는 그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예방구금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고 또 범죄 사실의 요지 및 기타 참고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조 검사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나, 그 밖에 예방구금에 처할 자가 있는 것을 인지했을 때에는 신속히 본인의 경력, 환경, 성행, 심신 상황, 사상의 추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취조를 해야 한다.

검사는 전항의 취조를 다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검사는 취조 결과에 따라 예방구금에 처해야 한다고 사료되었을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4조 예방구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 대해서 사항을 지시하고 취조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전항의 청구에 따를 때에는 그 취조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청구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예방구금위원회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해 서류 및 자료를 송부 받았을 때 신속히 예방구금에 처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환부해야 한다.

제6조 예방구금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항의 청구에는 이유를 첨부하고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서 및 기타 서류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 다음의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형무소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예방구금 청구를 할 때 또는 이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
2. 전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제8조 영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두 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항의 서면은 이를 송달한다.

제9조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보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방구금 청구가 있을 후 서면으로 해당 재판소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전항의 신청에는 영 제9조에 규정하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10조 재판소는 본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게할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 또는 보좌인이 의견을 개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11조 검사는 재판소의 심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류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보좌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참고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및 자료를 열람하거나 또는 등사하고, 재판소가 본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 입회하거나 또는 이들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 예방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예방구금 기간 갱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구금 집행 수속

제13조 구금중인 자에 대해 예방구금에 처하거나 또는 예방구금 기간을 갱신하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검사는 신속히 예방구금소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

전항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집행해야 할 취지를 지휘할 수 있다.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집행 지휘에 관한 서류는 형무소장을 경유하여 예방구금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집행 지휘는 법정 기간 내에 즉시 항고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항의 즉시 항고 신청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 의해 행해졌을 때에는 검사는 신속히 그 신청이 있다는 것을 형무소장 또는 예방구금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제13조 제3항의 경우 형무소장은 신속히 집행 지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을 예방구금소로 이송해야 한다.

본인이 형 집행중일 때에는 그 종료 후 전항의 처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구금되지 않은 자를 예방구금에 처하거나 또는 예방구금 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검사는 신속히 이를 검사국으로 소환하고 집행 지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예방구금소로 호송하게 해야 한다.

본인을 체포장에 의해 연행한 경우도 역시 전항과 같다.

제17조 예방구금소장은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에 대해, 영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544조, 제546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구금 집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결정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제16조의 규정은 예방구금의 집행 정지가 취소된 자 또는 예방구금에 처해져 도주한 자에 대해 예방구금의 잔여기간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처분은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행한다.

제20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에 대해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퇴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경력, 환경, 성행, 심신 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참고 사항에 관한 조사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예방구금소장은 제19조의 처분을 할 때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조선총독에게 품의해야 한다.

제22조 제20조 및 전조의 규정은 검사가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에 대해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집행을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처우규정

제1절 통칙

제23조 조선총독은 적어도 매년 1회 관리로 하여금 예방구금소를 순열하게 한다.

판사, 검사, 전옥(典獄), 전옥보, 교회사(敎誨師), 보호관찰소 보도관, 동 보호사, 예방 구금위원회 회장 및 동 위원은 예방구금소를 순시할 수 있다.

제24조 예방구금소를 참관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예방구금소에 남구(男區) 및 여구(女區)를 두어 이를 분격한다.

제26조 수용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계급으로 누진 처우한다.

제3급

제2급

제1급

제27조 수용자는 제3급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진급시킨다.

진급은 사상 상태를 심사하여 이를 정한다.

제28조 상급에 속하는 자는 그 계급에 상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계급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제29조 수용자는 심신의 상황에 따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독거하게 한다.

제2급 이상의 수용자는 이를 잡거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수용자가 구금에 의해 질병에 걸리거나 창상을 입어 사망 또는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수당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전항의 수당금액은 예방구금소장이 정하여 퇴소 시 본인에게 이를 지급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31조 본장 중 제26조 내지 제28조, 제29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영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 구금소에 가수용된 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절 수용

제32조 수용될 자가 있을 때는 영장 또는 집행 지휘에 관한 문서를 사열한 후 수용 수속을 해야 한다.

제33조 수용될 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과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해야 한다.

부녀의 신체 및 의류검사는 부녀인 관리가 이를 행해야 한다.

제34조 수용될 자에 대해서는 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3절 보안

제35조 예방구금소에서는 출입 경계를 엄히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출입자의 착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전항의 검사는 상당한 예의를 갖추어 하며 은닉물 발견에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36조 예방구금소장은 관리로 하여금 임의로 수용자의 신체 및 거실검사를 하게 해야 한다.

제1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전항의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준용한다.

제4절 교화

제37조 수용자의 교화는 국체에 대한 명징한 관념과 황국의 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수용자에게는 엄격한 기율 하에 전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그 계급에 따라 필요한 교양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9조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게 강화(講話)를 위촉할 수 있다.

제40조 예방구금소에는 교화상 유익한 도서를 구비하고 이를 수용자에게 열독하게 한다.

수용자에게 교화상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는 사본(私本)의 열독을 불허한다.

제41조 초등보통교육 정도의 교양이 없는 수용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42조 수용자에게는 농업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단 심신의 상황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다른 작업 훈련을 실시하거나 또는 작업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작업 훈련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 작업 훈련을 받는 자에게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장려금을 급여할 수 있다.

제5절 면회 및 통신

제44조 수용자는 예방구금소장의 허가를 얻어 면회 및 문서의 수발을 할 수 있다.

제45조 면회는 면회실에서 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

면회에는 예방구금소 관리가 입회해야 한다. 단 예방구금소장이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46조 수용자가 수발하는 문서는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검열해야 한다.

검열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차압 또는 몰수한다.

제47조 공무소로부터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는 펼쳐보고 이를 본인에게 교부한다.

제6절 상벌

제48조 수용자로서 특히 추천하고 잘려할 만한 행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상여를 행할 수 있다.

제49조 수용자가 기율을 위반했을 때는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50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책.
2. 3개월 이내의 필지묵 사용 금지.
3. 3개월 이내의 도서 열독 금지.
4. 2개월 이내의 병거(屏居).

전항 각호의 징계는 이를 겸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 징계는 정상에 따라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절 급양

제52조 수용자에게는 본인이 자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류, 침구 및 잡품을 대여하고 음식물 및 일상 필수품을 급여한다.

예방구금소장은 수용자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급여해야 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을 정하여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3조 수용자에게 처우상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는 물품의 자변을 불허한다.

제8절 위생

제54조 거실 및 공장 기타 다수가 잡거하는 장소는 보건상 필요한 크기를 유지하고 채광, 채난 및 환기를 적당하게 해야 한다.

제55조 수용자에게는 보건상 적당한 운동을 시켜야 한다. 단 작업 훈련의 종류에 따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수용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사에게 치료받게 해야 한다.

병자가 자비로 의사를 지정하고 치료 보조 또는 약제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7조 예방구금소에서 수용자의 적당한 치료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된 자는 이를 수용자로 간주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예방구금소로 환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58조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예방을 엄중히 하고 응급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제9절 차압 및 몰수

제59조 수용자에 대한 또는 수용자로부터의 물품의 수수는 예방구금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수용자가 휴대 또는 수수하는 물품은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검열해야 한다.

검열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환부하거나 차압, 몰수한다.

제61조 차압물은 퇴소 시 본인에게 이를 교부한다. 단 예방구금소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수용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절 퇴소 및 사망

제62조 수용자는 명령서의 도달이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처분 또는 기간 종료 후 신속히 이를 퇴소시켜야 한다.

제63조 수용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이 사체의 검시를 해야 한다.

자살 기타 변사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검시를 받아야 한다.

제64조 예방구금소장은 병명 또는 사인 및 사망 일시를 신속히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게 통지하고 사체를 인수하게 해야 한다.

제65조 사체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이를 예방구금소 묘지에 토장한다. 단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화장에 처하고 유골을 매장할 수 있다.

사채 또는 유골은 매장 후 2년이 지나면 이를 합장할 수 있다.

부 칙

본령은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시행일로부터 이를 실행한다.

〈출전 :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施行規則(朝鮮總督府令 第52號)」,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3월 7일〉

2) 해설

(1) 일본보다 앞서 예방구금제도 실시(기사)

조선의 사상불온자 상대로 예방구금제도(豫防拘禁制度)를 실시 — 전과자에 한할지 일반인에 한할지 주목, 예산액 20만원 통과

1940년도 예산이 39년도보다 1억 8천2백만 원의 증가로 신규 사업 개요를 4일에 총독부에서 발표하였는데 사회 시설용 방면과 평화 산업적 시설 방면에는 두드러진 예산이 보이지 않고 대개는 시국 관계, 특히 사변처리를 목적인 생산력 확충(生産力 擴充)에 주력을 둔 것이 드러나고, 한편 국내치안 확보와 재정경제정책의 수행 확충을 위하여서의 방침도 드러났는데 일반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예방구금제도(豫防拘禁制度)비로 20만 원의 신규 사업비가 통과된 것이다. 당국의 설명을 들으면 병참기지 조선의 치안을 확보시키기 위하여 사상범(思想犯)의 예방구금을 목적으로 원래 30만원을 청구한 것이 20만 원의 인정을 보게 되었다. 이 예방구금에는 그 제도의 발동상 제령(制令)이 있어야 하므로 「조선예방구금령(朝鮮豫防拘禁令)」을 현재 입안 중으로 근근 발표 실시를 보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이 예산을 제출하여서 삭제를 보았다. 따라서 조선의 특수성을 가미하여 실시되는 것인데 이 점에는 일본에 앞서서 실시를 보았고 보호관찰(保護觀察) 제도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적에는 예방구금을 하게 되었는데 감옥을 거쳐 나온 소위 전과자(前科者)에만 한할 것인지 또는 일반 사상 불온한 자에까지 미칠지는 아직 법령의 발포를 보지 않고는 내용을 확지키는 어렵다.

이 20만 원의 예산은 구금제도 실시 기관의 기구 확충에 사용할 것인데 인원의 증원 등에 쓸 터이다.

구금(拘禁)은 원래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나 수형자(受刑者)를 일정한 기간 특별한 장소에 수감하여 유치하는 것으로 감옥법(監獄法)에 보면 징역(懲役)에 처한 자는 징역감, 금고(禁錮)에 처한 자는 금고감, 구류(拘留)에 처한 자는 구류장, 형사피고인과 사형 언도를 받은 자는 구치감(拘置監)에 구금되는 것으로 예방구금인 이상이 정규적 구금을 말하는 것이다.

“특수 사정을 참작, 일본(内地)보다 앞서서 시행”

◇총독부 오노(大野) 행정과장 담(談)◇

총독부 대야(大野) 행정과장(行刑課長)은 말하되

“조선의 특수성을 가미하여 일본에서는 삭제되었는데 드디어 예산의 통과는 보게 되었으나 아직 법령의 발표를 보지 못했으므로 명언은 못한다. 근근 조선예방구금령의 발표로 전후하여 일반에게 알려 드리려고 한다. 사상범의 예방구금이 목적으로 일반범에는 미치지 않는다.”

검사 23명 증원

총독부 법무국에서는 물가통제와 생산력 확충의 정책 수행에 협력하는 한편, 조선의 사법행정의 확충 강화를 위하여 이번에 새로이 형사과, 민사과의 두 과를 분립시키는 한편 새로 사무관의 3명, 속관 11명의 증원과 고원 17명 증원을 볼 것인데 이에 따라서 물가통제와 금밀수 취체(取締)³⁹⁾를 위하여 전 임검사를 23명이나 대량으로 증가시키기로 되어 대장성의 사정을 받았고 오는 4월부터 실시할 것이다.

〈출전 : 『朝鮮의 思想不穩者相對로 豫防拘禁制度를 實施 前科者에 限할지 一般人에 限할지 注目 豫算額二十萬圓通過 特殊事情을 參酌 内地보다 앞서서 施行 總督府大野行刑課長談』, 『東亞日報』, 1940년 1월 5일〉

(2) 사가라(相良春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 대하여

1941년 4월 15일

부산지방법원 검사 사가라 하루오(相良春雄)

목 차

1. 사상 범인에 대한 예방구금제도는 왜 생겼는가?
2. 사상 범인에 대한 예방구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3. 누구를 예방구금에 처하는가?
4. 어떤 순서로 예방구금 수속이 행해지는가?
5. 예방구금 기간
6. 예방구금위원회의 직무 범위

39) 단속.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 대하여

1. 사상범에 대한 예방구금제도는 왜 생겼는가?

개정 치안유지법은 금기(今期) 의회를 통과하여 지난 3월 8일 법률 제54호로 공포되었는데 근간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개정 법률의 제3장에 예방구금에 대하여 쓰여 있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이에 앞서 금년 2월 28일 제령 제8호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 공포되어, 이미 금년 3월 10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부령 제48호 참조). 그리고 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하 단순히 영이라고만 표기한다)과 개정 치안유지법(이하 단순히 법이라고만 표기한다) 제3장의 예방구금 규정과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예방구금제도가 태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상 범인은 소위 확신 범인으로서 일단 감염된 사상은 용이하게 불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형의 집행을 받아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긴 형무소 생활에도 사상의 전향을 수긍하지 않는 자, 비전향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된 자, 또는 전향을 위장하여 관대한 처치를 받은 자 등 그 수는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산주의 운동에서 그 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비전향 분자 또는 위장 전향 분자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또는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 중에는 내지에서 소위 3·15사건 내지 4·16사건과 관계가 있는 비전향 거두 분자이면서 출옥할 자가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함남북 방면에서 한때 극히 □악했던 사상 범인으로서 출옥하는 자가 다수에 이르고 또 현재 상당수가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다시 검거되고 있는 실상인데, 이러한 자들을 지금 현재의 긴박한 사회 정세 속에 방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궤격(詭激) 분자는 사상범 보호관찰에 처해도 도저히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예방구금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2. 사상범에 대한 예방구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본법에 의한 예방구금은 궤격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국가 치안에 대한 위협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험한 범죄를 막는 효과를 완□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과 수단 하에 이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나쁜 사상의 전파를 방지하고 아울러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사상의 개선을 꾀하여 충량한 일본인으로 입□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예방구금제도는 소극적으로 본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본인이 다시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유□하여 일본인으로서의 정도에 복귀시키고 또 정도를 확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구금소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교화는 국체에 대한 명징한 관념과 황국의 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제37조 이하 참조)

이리하여 사상 범인에 대한 예방구금은 일면에서는 사상 범죄를 막고 치안 확보에 □익함과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일본적 사상 행동의 순화와 명□을 □래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상

범예방구금제도는 사상 국방 전선의 일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누구를 예방구금에 처하는가?

본 제도는 그 대상자를

(1)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옥하는 자.

(2)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져 형 집행 종료 또는 형 집행 유예의 언도를 원인으로 해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따른 보호관찰에 처해진 비전향자.

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39조와 제1조 참조)

따라서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검사국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 보류 처분, 또는 형 집행 정지 혹은 형 집행 면제를 받은 경우 등에는 본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고 이미 석방된 자 또는 형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로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아직 보호관찰에 처해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본령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제1의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로서 이상의 (1)(2)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바로 예방구금소에 수용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예방구금 청구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이를 청구하며, 만약 그 자가 보호관찰에 처해져 있는 자일 때에는 그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영 제2조, 법 제40조 참조)

이를 위해서 검사는 필요한 제반 취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리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영 제2조 제3항, 법 제40조 제3항)

검사로부터 예방구금 청구가 있으면 재판소 합의부는 본인의 진술을 들은 후 예방구금에 처할지 여부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구금에 처한다는 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어떤 순서로 예방구금 수속이 행해지는가?

이에 대해서는 1941년 3월 7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의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이하 단순히 규칙이라 한다)에 상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 수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 형무소장이 소할 검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가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는 경우 형무소장은 그 석방 전에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규칙 제1조)

(2) 보호관찰소장이 소할 검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친 자 또는 형 집행 유예를 언도받은 자로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

우, 보호관찰로도 동 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하고 또 이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비전향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장이 본인의 현재지 또는 그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3) 검사의 인지에 의한 경우

검사는 이상의 통지와 상관없이 예방구금에 처해야 할 자가 있음을 인지했을 때에는 언제라도 그 수속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조)

검사는 형무소장,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스스로 인지했을 때에는 신속히 본인의 경력, 환경, 성행, 심신의 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필요한 사항의 취조를 하는데, 이 취조는 다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하거나 또는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규칙 제2조)

검사가 취조 결과에 따라 예방구금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합니다.(규칙 제3조)

한편 예방구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검사에게 사항을 지시하고 취조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검사는 반드시 이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규칙 제4조)

예방구금회는 이상의 규칙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로부터 서류 및 자료를 송부 받으면 신속히 예방구금에 처할 사유가 있는지 어떤지를 심의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환부합니다.(규칙 제5조)

예방구금위원회는 회장 및 위원을 합하여 5인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으며, 그 의사는 과반수에 의해 이를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조선총독부 예방구금위원회 관제 제7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상의 검사 및 예방구금위원회에 속하는 제 수속은 모두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가 영 제4조(법 제42조)에 의해 본인에 대해 가수용의 수속을 하고 있는 경우 검사의 가수용 기간은 10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영 제5조, 법제43조) 이 사이에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로 신속 처리는 한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사는 예방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청구에는 이유를 첨부하고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서와 기타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규칙 제6조)

재판소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합의부에서 본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하여 예방구금에 처할지 여부를 선언합니다.

본인이 속한 가(家)의 호주, 배우자 또는 4촌수 내의 혈족 또는 3촌수 내의 인족이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보좌인이 되어,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혹은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게 하는 경우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고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영 제9조, 법 제47조)

검사는 재판소의 심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재판소에 제출된 서류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 보좌인도 역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1조)

재판소가 예방구금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방구금에 처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 및 보좌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영 제13조, 법 제51조) 이들 결정 및 즉시 항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영 제14조, 법 제52조)

이렇게 재판소의 결정이 확정되어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되어 동소에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필요한 처치가 행해집니다.(영 제15조, 법 제53조) 예방구금소의 조직은 금년 3월 3일 칙령 166호 조선총독부 예방구금소 관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의 예방구금소는 조선총독부 보호교도소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고 위치는 경기도 경성부로 되어 있는데, 이는 3월 10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1941년 3월 8일 부령 제53호) 즉 현재 조선에는 이 1개소의 예방구금소가 있을 뿐입니다.

5. 예방구금의 기간

예방구금의 기간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통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영 제17, 18조, 법 제55조, 56조),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라도 수용 후 그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이상 규정한 2년의 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이를 퇴소시킬 수 있습니다.(영 제20조, 법 제58조)

이 퇴소 처분은 예방구금소장이 하는데(규칙 제19조) 예방구금소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규칙 제20조 내지 제21조 참조)

6. 예방구금위원회의 직무 범위

예방구금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심의사항은 조선총독부 예방구금위원회 관제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1) 영 제2조에 의해 검사가 예방구금을 청구하고 의견을 구해온 경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2) 영 제17조에 의해 검사가 예방구금 갱신을 청구하고 의견을 구해온 경우.

예방구금 기간인 2년을 경과해도 본인에게 개선의 정이 없어 이를 더 계속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규칙 제12조), 검사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소에 그 청구를 하기 전에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영 제20조에 의해 영 제17조에 규정된 기간 만료 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본인을 퇴소시키는 것에 대해 예방구금소장이 의견을 구해온 경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에게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퇴소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경력, 환경, 성행, 심신의 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참고할 사항에 관한 조사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규칙 제20조)

예방구금소장은 위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조선총독부에 품의하고 퇴소시키는 것입니다.(규칙 제21조)

이 경우에는 판사, 검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4)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의견을 구해온 경우.

예방구금의 집행을 행하지 아니한지 2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결정을 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는 사정에 따라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영 제21조) 이 경우에 검사는 위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 기타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한 후 이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규칙 제22조)

이들 모든 경우에도 예방구금위원회는 의견을 구해온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필요에 따라 검사 혹은 예방구금소장에게 사항을 지시하고 취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심의 결과는 반드시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혹은 예방구금소장에게 환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규칙 제4, 5, 20조 참조)

이상으로 극히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이를 요약하면 본 제도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국하 후방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도 절대 필요불가결한 제도라고 사료되므로, 그 수속은 신속함을 중시하는 반면 상당히 정중한 수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이 사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직책의 중대함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로지 이 제도의 운용이 잘 이루어져 사상 국방의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을 염원해 마지않을 뿐입니다.

(이상)

〈출전 : 釜山地方法院檢事 相良春雄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に就て』, 1941년 4월 15일〉

(3) 정광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해설

정촌광현(定村光鉉, 鄭光鉉)

내용 목차

1. 서언
2. 예방구금제에 부치는 자와 부치지 않는 자
3. 예방구금의 수속
4. 예방구금의 내용
5. 사상범과 보호관찰제도
6. 결어

1. 서언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은 1941년 제령 제8호로 금년 2월 12일에 공포하여 3월 10일부터 실시(1941년 3월 1월 부령(府令) 48호)된 불과 26개조의 내용을 가진 간단한 법령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상생활상 이 이상의 긴밀한 관계를 가진 법령은 없다고 할 만한 중요 법령이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하여 창설된 예방구금제도는 형벌을 목적인 제도가 아니고 정신장애자의 정신적 발작을 감호하기 위하여 감호소에 수용함과 같은 정신에서 주정(酒精) 중독자, 마약 중독자의 그 습벽을 교정하기 위하여 교정원에 수용함과 같은 정신에서 또는 불량자, 노동 혐기자(嫌忌者)에게 근로봉사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노작소(勞作所)에 수용함과 같은 정신에서 나온 소위 보안 처분의 일종이다.

사상범예방구금제도가 이와 같이 형벌을 목적인 제도가 아니고 보호 처분에 속하는 제도지만은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전향을 촉진하는 힘은 실로 위대하리라고 믿는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제도가 실시 전에는 전향치 않은 사상범 전과자라도 치안유지법 위반 행위만 없으면 보호관찰에부터 보호받고 있었고 신체의 구속은 절대로 받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는 전향의 필요를 그리 절실히 느끼지 않고 있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 구속, 생활의 제한을 즐겨 하지 않음이 인정이다. 그러므로 이 법령의 실시 후는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입장에서도 그들은 전향의 필요를 긴절히 느끼게 하기 때문에 본령(本令)은 법령의 공포만으로는 그 농후한 위협(威嚇)⁴⁰⁾ 작용으로 말미암아 전향을 촉진함에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견지로 보아 사상범예방구금제도는 긴박한 현하 중대 시국에 있어 고도(高度) 국방국가체제를 확립함에 가장 필요한 제도요, 따라서 본령은 참으로 우리 제국 사법사상 및 사상상(思想上)에서 획기적 입법이라 하겠다.

개정형법에서는 사상범 이외에 범죄에 대하여 특히 방화범, 살인범, 강도범의 전과자에 대하여 예방구금제도를 채용하고 있다.(개정형법 제129조)

현재 이 사상범예방구금제도는 전국(全國) 중에서 조선에만 실시되며 일본, 대만, 사할린(樺太) 등에는 아직 실시되지 않는다. 현재 의회에서는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일본, 대만, 사할린 등에서는 이 치안유지법 개정법률의 실행에 의하여 사상범예방구금제도가 실시케 된다.

그리고 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은 잠정적 법령이다. 개정치안유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 임시 구급(救急)을 위한 법령이다.

왜 그런가 하면 현행 치안유지법은 조선에도 1925년 5월 12일 이래 시행 중에 있으므로 (1925년 칙령 175호) 이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이 조선에 시행케 되는 까닭이다.

2. 예방구금제에 부치는 자와 부치지 않는 자

사상범이라 하여 누구나 예방구금에 부치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제 이 규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조선총독부 형무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복역 중에 있는 자로 만기출옥할 때까지 비전향자로 인정되는 자. (2) 이미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복역)을 마치고 출옥하여 현재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부쳐 있는 자 중에서 비전향자로 인정되는 자. (3)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 언도는 받았으나 집행유예의 은전(恩典)을 입고 현재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부쳐있는 자 중 비전향자로 인정되는 자를 법이 정한 수속(후술 참조)에 의하여 예방구금에 부치기로 결정된 자

40) 위협.

에 한하여 예방구금에 부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左)와 여(如)한 자는 사상범인이나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1) 치안유지법 위반의 전과자라도 현재 전향자로 인정된 자는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그는 벌써 반항국사상을 일체 청산하고 충량(忠良)한 황국신민이 되며 적극적으로 국책에 협력하여 신도(臣道) 실천, 멸사봉공하는 자로 인정되었으니 예방구금의 여지가 없다.

(2) 준전향자도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준전향자라는 것은 반항국사상만은 충분히 청산한 것을 확보할 수 있으나 아직 국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박약하여 신도 실천, 멸사봉공의 표시가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는 보호관찰소 보호사의 교도만으로도 완전한 전향자로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안법 위반 1919년 제령 제7호(정치에 관한 범죄의 건) 위반에 의한 사상범 전과자는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음은 본령 제1조가 치안유지법 위반에 국한하기 때문이며 이 사상범은 치안유지법 위반의 사상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4) 현재 보호관찰에 부쳐 있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상범인은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원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검사관의 생각에 전향자 내지 준전향자로 인정된 자이므로 예방구금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불행히 당국의 인정과 기대에 반하여 후일 비전향자로 인정케 되는 경우에는 기왕의 기소유예 처분을 공소시효 완성 전에 한하여 언제든지 취소하고 기소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자는 예방구금에서 제외했다 하고 사상생활상 불근신(不謹愼)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가출옥 중에 있는 자도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현재 가출옥 중에 있는 자도 사상범보호관찰에는 부치게 되지만 [사상범보호관찰법 제1조 후단(後段)] 원래 가출옥을 허한 것은 개전(改悛)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형법 28조) 그러므로 가출옥 중에 있는 자는 예방구금에 부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출옥 기간 중에 비전향자로 역행하면 언제나 그 가출옥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형법 29조) 따라서 다시 형무소에 들어가 만기까지 복역하게 될 것이다. 또 가출옥 기간 경과 후는 그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므로 다시 비전향자로 인정될 때는 일정한 수속에 의하여 예방구금에 부칠 수 있다.

(6) 치안유지법 위반의 사상범인으로 기왕 보호관찰에 부쳐 있었으나 현재 해제된 자 또는 아직 보호관찰에 부치지 않은 출감자는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비전향자로 인정되면 언제든지 보호관찰에 부치는 수속을 취해 가지고 그를 예방구금에 부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 전이라도 보호관찰에 부칠 수 있고(사상보호관찰법 제6조) 또 예방구금수속 전이라도 가수용(假收容)하는 경우도 있다.(후술 참조)

(7) 현재 내지의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부쳐있는 자는 조선인이라도 그가 조선의 형무소에서 복역하였거나 또는 조선총독부재판소에서 집행유예의 인도를 받은 자였거나를 불구하고 조선사상예방구금령은 적용하지 않으며 또 일본의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만기출옥하는 자에게도 본령은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개정치안유지법이 실시될 때까지는 원칙으로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조선에 건너온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는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로 전적(前籍) 수속을 취해 가지고 예방구금에 부칠 수 있으며 그러한 수속 전에 다시 가수용도 할 수 있다.

3. 예방구금의 수속

예방구금에 부침을 결정하는 수속에 관하여는 상세 정확한 설명이 도리어 복잡하여 일반 독자에게 알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평이하게 그 수속의 윤곽만을 설명코자 한다.

당국에서 비전향자로 인정하여 예방구금에 부치고자 할 때는 우선 검사가 본인의 관계 형무소 또는 본인의 관계보호관찰소 등에 조회하여 신분의 조사를 하고 또 관할예방구금위원회(각 지방법원 검사국에 설치)의 자문을 거친 후에 재판소(관할지방법원회의부)로 예방구금의 결정을 청구한다. 이러한 청구를 접수한 재판소는 본인의 진술 참고인, 보좌인(補佐人) 등의 진술 내지 감정(鑑定), 검사의 의견, 관계 형무소 관계 보호관찰소의 보고 등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신중히 혹은 예방구금에 부치기로 혹은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검사의 청구에 반하여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게 결정된 때는 검사 측에서, 이와 반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방구금에 부치기로 결정된 때는 본인 측에서 3일 이내로 불복신청(不服申立⁴¹), 소위 즉시항고)를 할 권리가 있다. 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면 여기서 그 결정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고 즉시 항고하면 항생(抗生)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예방구금에 부치게 되든지 부치지 않게 되든지가 확정되는 것이다. 즉 복심제(覆審制)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구금에 부치기로 확정된 이후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케 된다.

그러나 본인이 주소 부정자(不定者)라든가 도피할 염려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방구금의 결정 전이라도 검사가 예방구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예방구금소 또는 감옥에 가수용의 처분을 하는 편법도 있다.(상세는 본령 제2조 내지 제14조 및 조선사상예방구금령 시행 세칙 참조)

4. 예방구금의 내용

예방구금에 부친 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되어 거기에 기거하면서 보도관, 보도관보 등에게 전향에 필요한 교도 훈련을 받게 된다.(본령 15조) 그리고 독립한 예방구금소가 낙성(落成)되기까지는 임시 경성에 있는 현 서대문형무소 구치감(拘置監)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전문(傳聞)된다. 그리고 예방구금 생활의 기간은 원칙으로 2개년이나 전향이 현저한 특수인은 2년 이내로 퇴소할 수 있으며 2개년 간의 교도 훈육(薰育)에 의하여도 전향이 불철저한 자에게는 2년씩의 몇 해든지 전향할 때까지 수용 기간을 갱신 계속하게 된다.

예방구금제도는 이미 일언한 바와 같이 형벌제도가 아니고 보안 처분이므로 구금자로 하여금 독서, 운동 경기 같은 것도 하는 데 상당한 자유를 인정하리라고 한다. 그리고 타인과의 접견, 서신, 기타 필요 물품의 수수 등도 법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데 자유의 인정 범위는 본인의 전향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한다. 이와 반대로 예방구사자(豫防拘事者)가 수용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폭행하거나 협

41) 개인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해 의사 표시를 함.

박하거나 또는 도주한 자 또는 이러한 불온한 행동을 취하려한 경우에는 일반형법에 의하지 않고 본령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중형을 받게 되어 있다.(본령 23조 내지 25조 참조)

5. 사상범과 보호관찰제도

사상범예방구금제도를 정당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실시중에 있는 보호관찰제도를 알아야 한다. 보호관찰제도는 치안유지법 위반의 사상범인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케 하기 위하여 창설된 우리 제국 행정사상(刑政史上) 획기적 시책이다. 조선에서는 1936년 12월 21일부터 일본에서는 동년 11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보호관찰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형에 처하여 (1) 만기출옥한 자. (2) 가출옥한 자. (3)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중에서 보호관찰에 부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인(例外人)을 제하고 대개 보호관찰에 부치게 된다.

보호관찰에 부치게 된 자에게 대하여 보도관 이하 보호사는 사상생활상의 교도를 함은 물론이거니와 무직자에게는 직업 등을 알선해주고, 독신자에게는 적당한 배우자까지 구하여 주며 취학을 원하는 자에게는 입학, 복교(復校)를 원하는 자에게는 복교 운동을 성심으로 친절하게 해준다. 이렇게 친절히 보호해주며 전향하도록 성의를 다하여 교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절한 보도관, 보호사 등의 교도와 훈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치 않는 자를 상대하여 다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해가며 전향하도록 선도할 목적에서 예방구금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되기 전야(前夜)의 상태를 회고해보자. 사상범 전과자는 사회에서 배척받고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보호관찰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상당한 다수의 사상범 전과자가 취직하게 되고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각기 직역(職域)에서 멸사봉공하게 된 자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필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예심(豫審)을 경유하여 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이 집행유예의 판결에 비하여 반드시 유리한 것 아니라는 것을 부언코자 한다. 왜 그런가 하면 무죄의 언도를 받으면 보호관찰에 부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다. 독자 중에는 무죄의 언도를 받고 보호관찰에 부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요, 보호관찰에 부치는 것이 무슨 명예로운 일이겠느냐고 논란할 분도 있을 줄 믿는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론에는 통효(通曉)⁴²⁾했는지 모르나 사회 실정에는 매우 어두운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사상범에 있어서는 무죄의 언도를 받은 자를 반황국사상이 추호도 없는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신도실천하며 멸사봉공하는 자로 세인(世人)은 보지 않는다. 더욱이 검찰관 내지 예심판사는 무죄의 언도가 내린 경우에도 불온사상인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관 눈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정도의 가벼운 사상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예심판사까지도 유죄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심 면소(免訴)의 결정을 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예상하고 공판에 회부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공판의 결과 확실한 증거가 없어 현행 형사재판의 원리에 의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의 언도는 하였으나 불온사상이 전무한 자로는 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과연 그러하면 그는 세인에게서 사상범인으로 인정되어 배척받게 될 것이며 보호관찰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니 본인을

42) 통달하여 환하게 앎.

위하여 자못 불리하다 아니할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유죄로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으면 그는 사상범인으로서의 낙인을 받게 되나 그는 후일 보호관찰에 부쳐져 명예의 회복과 직업을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되나 무죄언도를 받으면 역시 사상범인으로 세인에게 취급당하면서 명예의 회복, 직업의 회복을 하기에 매우 곤란한 입장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그의 변호인, 기타 관계자 여러분은 결코 무죄의 언도 받았다 하여 반드시 기뻐할 바 아니며, 집행유예의 언도가 내렸다 하여 무죄 언도에 비하여 반드시 비관 낙심할 바 아니라 함을 이해하기 바란다.

6. 결어

우리 제국은 목하 세계 신질서 건설의 일대혁신적 세국에 대처하여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성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 성업을 완수함에는 병력충실의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총후 일역 신민의 거국일치가 또한 필요하다. 총후 일역신민의 거국일치는 내선일체의 완벽에 있고 내선일체의 근저는 ‘충량한 황국신민을 함양함에 있다.’

그러나 현금 반도민중의 사상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급속도로 호전(好轉)하여 대다수의 민중은 내선일체의 대도를 정진하고 있음은 이미 당국에서도 이를 시인하는 바이나 아직 민중 일부 중에는 공산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등 반황국사상을 청산치 못한 자가 존재해 있음을 당국은 자못 우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국은 이러한 반황국사상을 가진 자를 계몽 지도하자 각종 수단과 방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형벌을 가하면서 전향을 촉진하고 있으며 또 만기출옥 후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에 부쳐야 취직, 결혼 등을 알선해주며 반황국사상의 청산을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와 같은 비전향자를 사회에 방치해 두는 것은 — 더욱이 제국의 대륙정책행상(大陸政策行上) 병참기지인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또 소련과 그 경계를 접하여 국방상 중요한 지위에 개재(在)⁴³⁾하고 있는 반도 사회에 산재(散在)하여 잡거케 하는 것은 - 국가대업 수행상 매우 위협스러운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가지고 일본정신을 체득케 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도록 교도 훈련할 필요가 매우 긴절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고(本稿) 모두(冒頭)에서 일언한 바와 같이 당국은 치안유지법의 개정안통과를 기다릴 여유 없이 우선 잠정적일지라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제정 실시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반도 민중의 사상이 최후의 일인까지 완전히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었다면 이러한 법령은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을 반성하매 다단(多端)한 국제난국에 대처한 이때 외환(外患)을 극복함에 국민의 총력을 경주하여야 될 차제에 그 일부를 내우(內憂) 퇴치 방면, 환원하면 황국신민화를 위한 시책에 유용(流用)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실로 참회(慚悔)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동시에 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의 실시를 계기로 반도 민중은 전부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어 거국일치하여 신도실천 멸사봉공을 철저히 함으로써 일본제국을 맹주로 한 ‘동양인의 동양 건설’이 급속도로 전개 실현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43)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전문

(1936년 2월 12일 제령 제8호)

제1조 치안유지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한 자,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경과(境過)에 석방 후에 다시 동범의 죄를 범할 염려가 현저한 때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본인을 예방구금에 부칠 뜻(旨)을 명(命)할 수 있음.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하여 그 집행을 마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인도를 받은 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부쳐져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에 의하여도 동범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하고 다시 이를 범할 염려가 현저한 때 역시 전항과 같음.

제2조 예방구금의 청구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이를 행함이 가능함.

전항의 청구는 보호관찰에 부쳐져 있는 자에 관한 때는 그를 보호관찰하는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이를 행할 수 있음.

예방구금의 청구를 행함에는 미리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함을 요함.

제3조 검사는 예방구금의 청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취조를 하고 또는 공무소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경(事項)⁴⁴⁾의 보고를 구할 수 있음.

전항의 취조를 함에 있어서 필요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본인을 동행시킬 수 있음.

제4조 검사는 본인이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은 경우, 또는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구금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수용하여도 무방함.

전항의 가수용은 본인의 진술을 들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음. 단 본인이 진술을 불공(不肯)하거나 또는 도망한 경우에는 차한(此限)에 부재함.

제5조 전조의 가수용의 기간은 10일로 함. 그 기간 내에 예비구금의 청구를 하지 않는 때는 속히 본인을 석방이 가능함.

제6조 예방구금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當該) 재판소의 합의부(合議部)에서 결정함이 가능함.

재판소는 전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는 것이 가능함.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소는 본인에게 출두를 명할 수 있음.

본인 진술에 응하지 않고 또는 도주한 경우에는 진술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음. 형의 집행 종료 전 예방구금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소는 형의 집행 종료 후라 할지라도 예방구금에 부치는 뜻(旨)의 결정을 행할 수 있음.

제7조 재판소는 사실의 취조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에 출두를 명하고 사실 진술 또는 감정을 행하게 할 수 있음.

제8조 검사는 재판소가 본인으로 하여금 진술을 시키고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의 진술 혹은 감

44) 사항(事項)의 오기로 보임.

정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음.

제9조 본인의 소속하는 집의 주소, 배우자 또는 사친(四親) 등 내(內)의 혈족 혹은 삼친(三親) 등 내의 인족(姻族)은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보좌인이 될 수 있음.

보좌인은 재판소가 본인으로 하여금 진술을 행하게 하고 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의 진술 혹은 감정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 또는 참고로 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제10조 좌의 경우에는 재판소는 본인을 구인(勾引)할 수 있음.

1. 본인이 일정한 주소를 갖지 않은 때
2. 본인이 도망하였을 때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3.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2항의 출두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제11조 전조(前條)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재판소는 본인을 예방구금에 가수용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수용함도 무방함.

본인 감옥에 있을 때에는 전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가수용할 수 있음.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제12조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除)한 외에 조선형사령에서 의용(依用)키로 정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사소송법이라 칭함)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10조의 구인에 구류(勾留)에 관한 규정은 제4조 및 전조의 가수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 단 보석(保釋) 및 책부(責付)에 관한 규정은 차한에 부재함.

제13조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을 뜻(旨)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보좌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음.

제14조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 형사공소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은 제6조의 결정에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즉시항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

제15조 예방구금에 부쳐진 자는 예방구금소에 이를 수용하고 개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처치를 함이 가능함.

제16조 예방구금에 붙여진 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의 접견 또는 서신, 기타 물건을 수수할 수 있음.

예방구금에 부쳐진 자에 대하여는 신서(信書), 기타의 물건의 검열, 차압 혹은 몰수를 행하고, 또는 보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가출옥된 자 및 본령에 의하여 구인상(勾引狀)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자에 의하여도 또한 동일함.

제17조 예방구금의 기간은 2년으로 함. 특히 계속의 필요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소는 결정으로써 이를 갱신할 수 있음.

예방구금의 기간만료 전 갱신의 청구가 있는 때는 재판소는 기간만료 후라 할지라도 갱신의 결정을 할 수 있음.

갱신의 결정은 예방구금의 기간만료 후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만료 시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함.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갱신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이 경우에 있어서 제11조 제2항 중 감옥이라 함은 예방구금소로 함.

- 제18조 예방구금의 기간은 결정 확정の日로부터 기산(起算)함.
구금하지 않은 일수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구금된 일수는 결정 확정 후라 할지라도 전항의 기간에 산입(算入)치 않음.
- 제19조 결정 확정 당시 본인이 구금자인 경우에는 예방구금은 형의 집행 종료 후 이를 집행함.
감옥에 있는 본인에 대하여 예방구금을 집행하려는 경우에 있어 이송의 준비, 기타의 사유로써 특히 필요 있는 때에는 일시 구금을 계속할 수 있음.
예방구금의 집행은 본인에 대한 범죄의 수사, 기타 사유로서 특히 필요있는 때에는 결정을 행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이를 정지(停止)할 수 있음.
형사공소법 제524조 내지 제536조 및 제544조 내지 제552조의 규정은 예방구금의 집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
- 제20조 예방구금에 부친 자로 수용 후 그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제17조에 규정한 기간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이를 퇴소시킴이 가능함.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
- 제21조 예방구금의 집행을 행하지 않고 2년에 달하는 경우에는 결정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는 사정에 의하여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음.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
- 제22조 천재사변에 제(際)하여 예방구금소 내에 있어 피난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되어 있는 자를 타소(他所)에 호송함이 가능함. 만약 호송할 여가(餘暇)없는 때에는 일시(一時) 이를 해방할 수 있음.
해방된 자는 해방 후 24시간 내로 예방구금소 또는 경찰관서에 출두함이 가능함.
- 제23조 본령에 의하여 예방구금소 혹은 감옥에 수용된 자 또는 구인상(勾引狀) 혹은 체포상(逮捕狀)의 집행을 받은 자로서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전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방된 자로서 동조(同條)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또한 전항과 동일함.
- 제24조 수용설비 혹은 계구(械具)를 손괴하거나 폭행 혹은 협박을 하거나 또는 2명 이상 통모(通謀)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제25조 전(前) 2조의 미수죄는 이를 벌함.
- 제26조 본령에 규정한 외에 예방구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함.

부칙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함.(1941년 3월 1일 부령 제48호로써 1941년 3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함)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1941년 3월 7일

부령 제52호

제1장 수속규정

제1절 구금에 부치는 수속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한 자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될 경우에 있어서는 형무소장은 그 석방 전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검사에게 그 뜻(旨)을 통지할 것.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하 령이라 칭함)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동항에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보호관찰소장은 본인의 현재지 또는 그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검사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예방구금에 관한 의견을 부치고 또 범죄사실의 요지,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것.

제2조 검사(檢事) 전조(前條)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 기타 예방구금에 부칠 만한 자가 있는 것을 인지한 때는 속히 본인의 경력, 경우, 성행, 심신의 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필요한 사항의 취조를 할 것. 검사는 전항의 취조를 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또는 촉탁할 수 있음.

제3조 검사 취조의 결과에 의하여 예방구금에 붙일 만하다고 사료한 때는 관계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할 것.

제4조 예방구금위원회에서 필요 있다고 인정할 시는 검사에 대하여 사항을 지시하고 취조를 청구할 수 있음.

검사 전항의 청구에 응할 시는 다시 그 취조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할 것. 청구에 응하지 않는 때는 속히 그 뜻을 통지할 것.

제5조 예방구금위원회가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및 자료의 송부를 받은 때는 속히 예방구금에 부칠만한 사유의 유무를 심의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검사에게 환부(還付)할 것.

제6조 예방구금의 청구는 서면으로서 이를 행할 것.

전항의 청구에는 이유를 붙이고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서, 기타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할 것.

제7조 좌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는 그 뜻을 형무소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할 것.

1. 예방구금의 청구를 한 때 또는 이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

2. 전호(前號)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때

제8조 영(令) 제9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두 명령은 서면으로서 이를 말할 것.

전항의 서면은 이를 송달함.

제9조 영(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방구금청구가 있을 후 서면으로서

- 해당 재판소로 허가의 신청을 할 것.
- 전항의 신청에는 령 제9조에 규정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
- 제10조 재판소는 본인의 진술을 들은 때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의 진술 혹은 감정을 시켰을 때는 조서를 작성할 것. 검사 또는 보좌인 의견을 개진하였을 때 또한 동일함.
- 제11조 검사는 재판소의 심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서류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 보좌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통지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 참고인은 감정을 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류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혹은 등사(謄寫)할 수 있으며 재판소가 본인 혹은 다른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을 하게 하는 경우에 입회할 수 있으며 또는 이들에게 대하여 직접 질문을 발(發)할 수 있음.
- 제12조 예방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검사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
- 제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 제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예방구금의 기간 갱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함.
- 제13조 구금중인 자에 대하여 예방구금에 부치고 또는 예방구금의 기간을 갱신할 뜻의 결정이 확립한 때는 검사는 속히 예방구금소장에게 그 집행할 지휘할 것. 전항의 결정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된 때는 집행할 뜻을 지휘할 수 있음.
- 본인 감옥에 있을 때는 집행 지휘에 관한 서류는 형무소장을 경유하여 예방구금소장에게 송부할 것.
- 제1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집행 지휘는 법정 기간 내에 즉시 피고의 신립(申立)이 있을 때에 그 효력을 잃음.
- 전항의 즉시 피고의 신립이 본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된 때는 본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된 때는 검사는 속히 그 신립이 있음을 형무소장 또는 예방구금소장에게 통지할 것.
- 제15조 제13조 제3항의 경우에는 형무소장은 속히 집행 지휘에 관한 서류를 붙여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이송할 것. 본인 형의 집행 중인 때는 그 종료 후 전항의 처치를 할 것.
- 제16조 구금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예방구금에 부치거나 또는 예방구금의 기간을 갱신할 뜻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검사는 속히 이를 검사국에 소환하고 집행 지휘에 관한 서류를 붙여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예방구금소에 호송할 것. 본인을 체포상에 의하여 인치(引致)한 때도 또한 전항과 동일함.
- 제17조 예방구금소장은 예방구금에 부친 자에 대하여 제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법공소법 제5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구금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뜻을 결정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할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통지할 것.
- 제18조 제16조의 규정은 예방구금의 집행 정지를 취소당한 또는 예방구금에 붙은 채 도망한 자에 대하여 예방구금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행할 경우에 이를 준용함.
- 제19조 영(令) 제20조 규정에 의한 퇴소처분은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행함.
- 제20조 예방구금에 붙은 자에 대하여 영(令) 제20조의 규정에 대해서 퇴소케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경력, 경우, 성행, 심신 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할 것.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함.

제21조 예방구금소장이 제19조의 처분을 할 때에는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조선총독에게 품의(稟議)할 것.

제22조 제20조 및 전조 규정은 검사가 예방구금에 부친 자에 대하여 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집행을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함.

제2장 처우 규정

제1절 통칙

제23조 조선총독은 적어도 매년 1회 관리로 하여금 예방구금소를 순열(巡閱)케 함.

판사, 검사, 전옥(典獄), 전옥보(典獄補), 교회사(教誨師), 보호관찰소 보도관, 동 보호사, 예방구금위원회 회장 및 동 위원은 예방구금소를 순시(巡視)할 수 있음.

제24조 예방구금소를 참관하려는 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을 것.

제25조 예방구금소에는 남구(男區) 및 여구(女區)를 설치하여 이를 분격(分隔)함.

제26조 수용자는 이를 좌의 계급에 의하여 누진 처우함.

제3급

제2급

제1급

제27조 수용자는 제3급으로부터 순차(順次) 이를 진급케 함.

진급은 사상 상태를 심사하여 이를 정함.

제28조 상급에 속한 자 그 계급에 상당치 않다고 인정한 때는 계급을 저하케 할 수 있음.

제29조 수용자는 심신의 상황에 의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를 제한 외에 이를 독거케 할 것. 제2급 이상의 수용자는 이를 잡거케 할 수 있음.

제30조 수용자 구금에 인하여 질병에 걸리고 또는 창상을 입은 까닭에 사망하거나 또는 업무를 영위하기 어렵게 된 때에는 정상(情狀)에 의하여 수당금을 줄 수 있음.

전항의 수당 금액은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정하고 퇴소할 때, 본인에게 이를 주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식, 아버지 및 어머니 중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이를 줌.

제31조 본 장(章) 중 제26조 내지 제28조, 제29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령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구금소에 수용된 자의 처우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치 않음.

제2절 수용

제32조 수용시킬 자가 있을 때에는 영장(令狀) 또는 집행지휘에 관한 문서를 사열(査閱)한 후 수용 수속

을 할 것.

제33조 수용시킬 자에 대하여서는 건강 진사(診査)와 신체 및 의류의 검사를 행함.

부녀의 신체 및 의류의 검사는 부녀인 관리(官吏)가 이를 행함.

제34조 수용시킬 자에 대하여서는 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제3절 보안

제35조 예방구금소에서는 출입의 경계를 엄하게 하고 필요를 인정한 때에는 출입자의 착의(著衣) 및 휴대품의 검사를 함을 득함.

전항의 검사는 상당한 예의로써 하고 은닉 물품 발견에 필요한 범위에 끝일 것.

제36조 예방구금소장은 관리로 하여금 적당히 수용자의 신체 및 거실을 검사케 할 것.

제1급의 수용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전항의 검사를 행하지 않음.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이를 응용함.

제4절 교화

제37조 수용자의 교화는 국체에 대한 명징(明徵)한 관념과 황국의 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를 파악케 하고 또 이를 실천케 함으로써 목적함.

제38조 수용자에는 엄격한 기율 하에 전조의 목적을 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계급에 응하여 필요한 교양 및 훈련을 베풀 것.

제39조 교화상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식덕망 있는 자에게 위촉하여 강화(講話)케 함을 득함.

제40조 예방구금소에는 교화상 유익한 도서를 비치하고 이를 수용자에게 열독(閱讀)케 함. 수용자에는 교화상 방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본(私本)의 열독을 불허함.

제41조 초등보통학교 정도의 교양이 없는 수용자에게는 교육을 베풀 것.

제42조 수용자에게는 농업훈련을 베풀 것. 단 심신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작업 훈련을 베풀고 또는 작업 훈련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음.

전항 단서(但書)의 규정에 의한 작업 훈련의 종류에 대하여서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을 것.

제43조 작업 훈련을 받는 자에게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하여 장려금을 급여할 수 있음.

제5절 면회 및 통신

제44조 수용자는 예방구금소장의 허가를 받고 면회 및 문서의 발수(發受)를 할 수 있음.

제45조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게 할 것. 단 특별한 사유 있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음. 면회에는 예방구금소 관리가 이에 입회할 것. 단 예방구금소장이 특히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한에 부재함.

제46조 수용자의 발수하는 문서는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검열할 것.

검열한 결과 부적당하다 인정할 때에는 이를 차압 또는 몰수함.

제47조 공무소에서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는 피열(被閱)하여 이를 본인에게 교부함.

제6절 상벌

제48조 수용자로서 특히 추장(推獎)⁴⁵⁾할만한 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특히 정한 바에 의하여 상여(賞與)를 행함을 득함.

제49조 수용자가 기율에 위반된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음.

제50조 징계의 종류는 여좌함.

1. 질책
2. 3월 이내의 필지묵(筆紙墨)의 사용 금지.
3. 3월 이내의 도서 열독 금지
4. 2월 이내의 병거(屏居)⁴⁶⁾

전항 각호의 징계는 이를 병과(併科)⁴⁷⁾할 수 있음.

제51조 징계는 정상에 의하여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음.

제7절 급양(給養)

제52조 수용자에게는 본인이 자판(自辦)⁴⁸⁾하는 경우를 제한 외, 의류, 침구 및 잡품(雜品)을 대여하고, 음식물 및 일상 필수품을 급여함.

예방구금소장은 수용자에게 대여하고 또는 급여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을 정하여 조선총독에게 신보(申報)할 것.

제53조 수용자에게 처우상 방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물품의 자판을 불허함.

제8절 위생

제54조 거실 및 공장, 기타 다수 잡거케 하는 장소는 보건상 필요한 기적(氣積)을 보지(保持)하여 채광, 채난(採暖) 및 환기를 적당케 할게.

제55조 수용자에게는 보건상 적당한 운동을 하게 할 것. 단 작업훈련의 종류에 의하여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함.

제56조 수용자 질병에 걸린 때에는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것.

병자 자비(自費)로써 의사를 지정하고 치료의 보조 또는 약제의 사용을 구하는 때에는 특히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음.

제57조 예방구금소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적당한 치료를 베풀기 불가능 때에는 이를 병원에서 이송할 수 있음.

전항에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한 자는 이를 수용자로 간주함.

제1항의 경우에는 그旨를 조선총독에 신보할 것. 예방구금소에 환송시킨 때도 또한 같음.

45) 추천하여 장려함.

46) 세상에서 물러나 집에만 있음

47)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48)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

제58조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예방을 엄하게 하고 응급 적절한 처치를 할 것.

제9절 차압 및 몰수

제59조 수용자에 대하여 또는 수용자에게서 물품의 수수를 할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의 허가를 받을 것.

제60조 수용자가 휴유(携有) 또는 수수한 물품은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검열할 것.

검열한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이를 환부하고 또는 차압 혹은 몰수함.

제61조 차압물은 퇴소할 때에 본인에게 이를 교부함. 단 예방구금소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 중이라도 본인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음.

제10절 퇴소 및 사망

제62조 수용자는 명령서의 도달 또는 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처분 혹은 기간 만료 후에 속히 이를 퇴소케 할 것.

제63조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이 사체의 검사를 할 것.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에는 그旨를 경찰관서에 통지하여 검사를 받게 할 것.

제64조 예방구금소장은 병명 또는 사인 및 사망의 일시를 속히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게 통지하여 사체를 인수케 할 것.

제65조 사체의 인수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구금소 묘지에 토장(土葬)함. 단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장하고 유골을 매장할 수 있음.

사체 또는 유골은 매장 후 2년을 거친 후 이를 합장(合葬)할 수 있음.

부칙

본령은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실시일부터 이를 시행함.

(출전 : 定村光鉉(鄭光鉉),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解説』, 『朝光』 제7권 4호, 1941년 4월, 84~100쪽)

(4) 총독부 법무국,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안 이유

예방구금관계조사서류

1940년
송포속(松浦屬)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안 이유

개설

1. 일반적 이유

사상범인은 교격한 주의를 신봉하고 그 주의를 사회적 실천 활동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그 수단과 조직을 수반하여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또 다시 동질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치안유지법 시행 이래의 실적에 비추어 보면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그 포회하는 교격한 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 즉 소위 비전향자로 인정하면서도 기소 유예 처분을 하거나, 형 집행 유예를 언도, 또는 가출옥을 허가한 사례는 없지만, 이러한 비전향자로 인정된 자로서 형 집행을 마치고 그대로 만기 석방된 자는 매년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별지1의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 석방 시의 전향 상태 누년 비교 참조)

게다가 이들 비전향 석방자로서 다시 동질의 죄를 범하는 자는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아무런 개선의 정이 없는 완미(頑迷) 흉악한 비전향자를 형기 만료와 동시에 그대로 사회에 석방하는 것은 국가 치안을 위해 매우 위험하며 또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본인으로서도 역시 개선의 호기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상 범인에 대해서는 특히 형벌제도 외에 이를 보충할 제도로써 보안 처분을 인정할 필요가 긴요하다. 그런데 사상 범인에 대한 개선 처분으로서 현재 실시 중인 사상범 보호관찰제도는 전향 도상에 있는 자 또는 적어도 전향의 징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실로 현저한 바가 있었지만, 완강한 비전향자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기능을 발휘하여 선도의 성과를 올리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비능률적이므로, 비전향 석방자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 격리를 요소로 하는 보안 처분을 필요로 한다.

2. 조선의 특수 사정

조선은 직접 대륙 및 소련과 접양하고 있어 공산주의 사상 침입 방지상 특수한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제국의 대륙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특수 사명이 가중되어 있는 정세에 비추어 보면 반도의 사상 정화는 초미의 급무인 바, 원래 반도 사상 범인은 그 의식 정도가 낮은 자라 하더라도 극히 실행력이 풍부해 현저한 흉악성을 지니고 있고, 그 거의 전부가 편협 고루한 민족주의 의식을 포회하여 내지 사상 범인에 비해서 사상 전향이 극히 곤란하며, 그 중에서도 악질적인 비전향 전과자 중에는 사상범 보호관찰제도만으로는 사상 선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자가 있다. 현재도 이들 완강한 불령 비전향자 중에는 사변하에서도 여전히 활발한 지하운동을 계속하여 후방 치안의 교란을 기도하는 자가 끊이지 않는 정세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재감중인 사상범 수형자의 사상 상황 역시 행형 당국의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히 우려할 만한 상태이다.(별지2의 비전향자 재감중의 개황. 별지3의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의 중대 형무 사고 내력 참조)

실제로 1939년 10월말 현재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 총수 641명 중 비전향자는 467명(73%)을 차지하

고 있고 1940년도 이후 출옥자 중 완강한 비전향자는 상당히 다수에 이르는 실상이다.

이러한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신속히 이런 종류의 불령 흉악한 사상운동의 절멸을 기하지 않으면 대륙 전진 병참기지인 반도의 치안, 나아가서는 제국의 대륙 국책의 전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위에서 언급한 반도의 특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상 범인에 대한 예방구금제도 창설의 긴요성은 더욱 심각하다.

즉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안은 위의 요구에 적합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특히 인권유린에 빠지지 않게 유의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형에 처해진 자가 그 형 집행을 마치고 석방될 경우 석방 후 또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 한하여 그 처분의 적용을 받게 하고, 특히 형무위원회제도도 마련하여 검사가 예방구금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처분이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노력했다.

〈출전 : 總督府 法務局,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案理由」,
『豫防拘禁關係調査書類』(松浦屬), 1942년, 24~26쪽, 국가기록원 소장〉

V. 언론출판계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지지와 선전 강화

1. 『매일신보』의 주요 논설

1) 전향자대회 의의 심대

1

금 23일부터 3일간 경성(京城)에서 각 지방의 2백여 전향자 대표가 모이며 시국대책 전향자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것은 비상시국 하에 일찍이 없던 바 의의(意義)있는 회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측문(仄間)¹⁾ 하건데 동 회합에 출석한 대표들은 모두 과거에 소위 좌익운동 민족운동 등에 상당히 활동하던 인물들이 많이 있다 한다. 물론 그들은 장년간 불온사상에 사로잡힌바 되어 다소의 파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자신으로도 혹은 영어(罎圖)의 고통을 체험한 일도 있고 물질의 결핍을 자감(自甘)한 일도 있어 단순한 향락주의나 '에고이즘'에 기울어진 자와는 스스로 그 부류를 달리 하는 바이며 개중에는 공막(空漠)한 이상에 현혹되고 일시적 감정에 달리는 등 그 심정은 다종다양이나 현 사회와 국가를 해독한 죄과는 단 불용대(斷不容貸)²⁾의 것이었다. 이것은 전혀 인류역사의 진행이 복잡다단하여 일률로써 논하지 못할 것임을 이해치 못하고 부질없이 어떤 범주(範疇)로써 모든 것을 규율하려는 데서 나온 과오이다.

2

더욱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조국을 잃고 세계에 표랑(漂浪)하는 유대인(猶太人)들의 소산이니 저들은 이와 같이 불리한 환경에 처하니만큼 세계도처에서 냉대를 받고 내려온 관계상 그들의 심정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국가를 부인하고 군부(君父) 부인하여 인류의 정당한 질서를 파괴함으로 그들의 수 천 년래의 왜곡된 울분을 발산하려한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사회 각종 질서간의 이간(離間)·반목(反目)·쟁투(爭鬪)로써 그 흉□(凶□)을 정(正)하려는 것이다.

3

총괄하여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는 끝이 없는 살육과 암흑이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소련의 현상이 웅변으로 증명함이 아니냐.

이에 대하여 역사를 정당(正當)히 인식하는 국가 및 국민은 모두 이 악사상(惡思想)의 감염을 방위(防衛)하여 그 적마(赤魔)에게 일지(一指)를 염(染)치 못하게 하는 중 특히 최선의 감염을 입었던 서구의 독일, 이탈리아는 그 감염이 좀 농후하였던 만큼 그 반발과 퇴치도 엄중하여 방공(防共)의 철벽을 쌓게 되었다.

동아에 있어서 일동(日東)의 제국은 세계만방에 그 비류(比類)³⁾가 없는 승엄한 국체를 받들어 의연

1) 얼핏 풍문에 들음. 남의 말을 잠깐 들음.

2) 단연코 용서하지 않음.

3) 비슷한 종류, 서로 견주어 비교할 만한 것.

(毅然)히 이 악역(惡疫)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를 위하여 지금도 지나에서 우리 충용한 장병이 성전(聖戰)을 계속하는 중이다.

불행히 조선에도 이 악사상의 기분(幾分) 침염(浸染)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으나 소련이 생긴 이래 부절(不絕)하는 피(血)의 난투를 눈앞에 보고 우리 숭엄한 황도(皇道) 정신의 무변(無邊)⁴⁾한 감화력은 필경 어제의 불온인으로써 오늘의 충용신민(忠勇臣民)으로 전환(轉換)하게 하여 금일의 성회(盛會)를 보게 되었다.

선철(先哲)은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목자는 잃지 않았던 99마리보다 잃었던 1마리를 더 사랑하리라'고 말하였다. 전향자들은 서상(敍上)과 같이 비록 향락이나 '에고이즘'에 취한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국가와 민중에게 유행한 해독이 불선(不鮮)⁵⁾하였으니 회고(回顧)하여 응당 참회의 감이 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일의 전향자는 향일(嚮日)에 악사상에 미혹되어 고통을 자초하고 결핍에 감(甘)하던 그 정신과 행동을 일신전환, 금일 우리 흥룡(興隆) 제국의 전도(前途)에 공헌하면 응당 그들은 제국 신민중에도 가장 충량한 신민이 되고 유용한 인재가 될 것이며 위대한 황도정신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여 줄 것이니 금일의 대회는 그 웅용(雄雄)한 신생로(新生路)의 1기를 획책할 것이다.

〈출전 : 「轉向者大會 意義深大」, 『매일신보』, 1938년 7월 24일〉

2) 반도통치의 이상

- 금일 30년에 완성

1

미나미(南) 총독의 금차(今次) 동상(東上)이래 관계당국에 반도통치에 대한 진언(進言)과 및 각 방면에 의식을 환기(喚起)하여 종래 흔히 생각하기 쉬운바 일본은 일본대로 반도는 반도대로의 수많은 수이(殊異)⁶⁾한 현상을 일체 제거하기에 힘쓰고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일관(一貫)한 체제하에 두게 하여 '청년일본'으로서 그 위자(偉姿)를 나타나게 하려는 지성(至誠)과 열의는 크게 각 방면의 감격과 찬양(讚仰)을 일으키었다. 특히 일찍이 조선군 사령관으로 있어 다년간 반도의 실정을 통효(通曉)⁷⁾한 고이소(小磯) 척무대신(拓務大臣)은 '자기는 군인이 된 이래 대장의 지도를 받았다. 더욱 조선에 대하여는 안전(眼全)에서 대장의 절륜(絶倫)한 통치를 배(拜)하였으니 자기에게 무슨 이견(異見)이 있으리요. 자기의 일에 대하여 지도를 원할 뿐이다.' 하였다. 이것은 응당 미나미 총독의 열성에 감복한 나머지에 진정을 토로(吐露)한 바일 것이다. 미나미 총독은 몸소 일본에 거주하는 반도인의 부락을 방문하고 반도의 실정을 이야기하며 장래에 더욱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위하여 공헌할 것을 격려하였을 뿐이 아니라 척

4) 끝이 없음.

5) 적지 않다.

6) 특별하게 색다름.

7) 통달하여 환하게 앎.

무(拓務), 문부(文部), 내무(內務), 후생(厚生) 등 각 성(省)과도 연락을 하여 그들의 교육 위생 제반 시설의 개선을 도모하고 종래의 난문제이든 조선노동자의 일본이주에도 상당히 의견을 개진(開陳)한 모양이다. 그 성과는 금후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려니와 이것은 전에 광전(廣田) 외상(外相)과 연락하여 내선일체의 견지(見地)로서 재외(在外) 사절(使節)에게 재류 반도인의 보호를 훈령(訓令)하고 이에 반(伴)한 보호시설을 확충함과 함께 획시기적 일이라 하겠다.

2

다시 전하는 바의 미나미 총독 통치의 대강(大綱)을 보면 대만주와 대지나 기지(基地)로서는 시국에 즉응(則應)하여 산업, 교통계획의 비약적 촉진을 계획하며 병참기지로서는 치안(治安), 방공(防空)의 강화를 기하여 대륙 경영기지의 사명으로서 만전을 도모하며, 산업계획의 근간을 농공병진주의로서 일본과 외지산업의 조정을 도모하며, 교육에는 기회균등 보급철저를 도모하여 가속도적으로 의무교육 실시에 거의 도달하게 하는 한편, 관리임용의 방도를 확대하고 취직 대우의 개선을 기하며, 다시 황국신민인 자랑과 의무 관념을 배양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원병을 점차 합리화 하여 국방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징병제도 실시의 길로 나아가게 하며 정신교육의 철저와 함께 공민교육을 충실하게 하여 장래의 반도 자치제 및 참정권 부여에 준비하되 이 모든 이상은 금후 30년 내에 전면적으로 달성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치안, 방공의 시설과 농공병진의 산업은 반도가 대륙전진기지로서 가질 바 큰 사명이며 징병제도 실시, 의무교육 실시, 자치 참정권의 부여는 모두 반도민이 황국신민으로서 가질 바 권리의무를 말한 바이다.

3

우리는 미나미 총독이 작년에 일대 영단(英斷)으로 지원병제와 신교육령을 실시할 때에 “이번 이 제도의 실시는 누구의 운동이나 요구로 된 것이 아니요. 반도 민중이 사변 이래 바친 바의 총후열성이 인천(人天)을 함께 감응하게 한 소이(所以)”이라 유(論)한 바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서술한 바의 전면적 실현도 결국 반도인이 황국신민으로서 바치는 바의 적성에 의하여 완성될 것을 믿는 바이다. 내선일체에 대하여 일본인 중에는 ‘선각자로서의 우위를 실(失)한다’ 오해하고 반도인 중에는 ‘급속한 전면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초조(焦燥)가 있음에 대하여 미나미 총독은 양자(兩者)가 모두 대승적(大乘的) 견지(見地)로 보는 정당한 견해가 아님을 지적하고 일본인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를 봉례(奉禮)하여 대화(大和), 대애(大愛)의 성심으로 겸허와 추양(推讓)의 도로 임할 것이요, 반도인은 자성(自省)·자숙(自肅)하고 수양단련하여 황국신민인 실질을 갖추면 그 명(名)과 그 대우는 자연히 이에 따를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인과 반도인이 각각 겸허와 반성으로 임하면 금후 30년 안에 반도가 일본과 일관하는 체제에 도달함을 얻을 뿐 아니라 더욱 촉성(促成)될 희망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선일체에 대한 ‘청년일본’의 위자(偉姿)이며 세계에 새로운 광명을 던져 20세기의 동아역사를 일신(一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출전 : 「半島統治의 理想」, 『매일신보』, 1939년 5월 17일〉

3)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진수 - 본부연맹 결성에 즈음하여

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일익(一翼)으로 이 운동의 효과를 앙양(昂揚)하기 위한 국민정신총동원본부연맹이 지난 26일 본부 내에서 결성되었는데 미나미(南) 총독은 이 결성식장에 임하여 일장(一場)의 고사(告辭)로서 국민정신총동원의 조선에 있어서의 의의와 사명에 대한 신념을 피력하였다. 즉 첫째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봉대(奉戴)하는 반도통치의 최고 지침인 내선일체의 대이상을 철저히 구현화하고, 둘째로 지나사변의 전과를 확보하여 동아신질서 건설의 대의를 관철하며 셋째로 제국의 안녕을 확보하고 전통의 황도(皇道)를 세계에 선포하여 세계 각 민족에게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참된 평화와 질서를 재래(齎來)하는 유일무이(唯一無二)의 방책인 것을 강조한 것이다.

2

성전은 이제 거의 만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나 대륙에는 제국의 총량한 백만 장병이 신질서 건설의 대업에 매진하고 있고 유럽(歐羅巴)에는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노후국(老朽)국가와 현상타파의 열렬한 기백에 불타는 신흥 국가 사이의 알력(軋轢)이 점차 발화점 가까이 이르러 있어 언제 어느 때 세계는 또 다시 포연(砲煙) 탄우(彈雨) 속에 파묻힐지 모르는 전야에 서 있다. 이 세계적 신질서 건설의 일대 변혁이 예상되어 웅비(雄飛)할 호기에 봉착한 제국의 총후국민은 모름지기 소성(小成)과 소안(小安)에 투(偷)⁸⁾하지 말고 앞날에 수많은 신산(辛酸)⁹⁾과 간난(艱難)을 극복할 불퇴전의 결의를 굳게 하여 일억일심 확호히 국가 의력(意力)의 달성에 매진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때에 당하여 미나미(南) 총독의 이 같은 정신총동원운동의 3대 진수에 대한 열렬한 신념의 강조는 실로 2천 3백만 반도신민의 반성과 각오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하는 바가 있다. 반도 신민은 모름지기 현하 제국 내외 각반의 사태를 다시 깊은 관심으로 통찰하고 다시 숙려(熟慮)하여 일치단결로써 봉공(奉公)의 결의를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다.

3

생각하건대 내선일체의 철저히 구현은 일시동인(一視同仁) 성지(聖旨)를 봉대(奉戴)하는 반도통치 최고지침이어서 역대 총독이 이를 위하여 진취(盡悴)¹⁰⁾하여왔고 특히 미나미(南) 총독은 착임(着任) 이래 이것의 실현에 진심갈력(盡心竭力)하여 이제 바야흐로 착착 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내외가 다 같이 경탄(驚嘆)하는 바이며 지나사변 '전국은 황군의 위무(威武)가 육해군을 제압하여 항일당군(抗日黨

8) 탐내다.

9) 맛이 맵고 심. 힘들고 고생스러운 세상살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정도(程度)로 열심히 힘을 다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일.

軍)의 기식(氣息)이 엄엄(奄奄)한 바 있으니 차제 일단의 압력을 가하여 사변의 전과를 확보하고 이로써 신동아 건설의 대업을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안으로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고 또 밖으로 동아 신질서를 건설하여 제국의 안녕을 확보하고 나아가 제국 고유의 황도를 세계에 선포함으로써 세계 각 민족에게 공존공영하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평화와 질서를 재래(齎來)하는 것이 국민정신총력동원의 일대 이상으로서 미나미(南) 총독의 피력한 신념의 진의가 여기 있는 것이다.

4

사변이래 반도의 신민은 시국의 인식을 철저히 하여 총후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봉사를 다하여 왔고 반도출신의 지원병도 장차 국방의 일원이 되어 반도 2천 3백만 신민의 의기가 자못 현양(軒昂)한 바 있으며 지난 해 7월 이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투철(透徹)을 기하기로 되어 중앙에 국민정신총력동원 조선연맹의 결성을 보고 이래 각 도(道)·부(府)·군(郡)·도(島)·읍면(邑面) 부락과 각종 단체에 이르기까지 각각 연맹의 조직망 확충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 단위 단체로 도비(都鄙)¹¹⁾에 널리 애국반의 결성을 보게 되어 이제 바야흐로 전 조선이 정신총동원연맹화하게 되었다. 연맹원은 이 운동의 진의를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일상의 업무와 생활을 통하여 실천에 노력하고 황국신민으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단련(鍛鍊)을 쌓아야 할 것이다.

〈출전 :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의 眞髓」, 『매일신보』, 1939년 5월 28일〉

4) 반도인 군인의 전사

- 호국의 영령으로 진좌(鎮坐)

1

반도출신의 군인으로서 전에 옥천(沃川)출생의 이인석(李仁錫)군이 산서전선(山西戰線)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지 미기(未幾)¹²⁾에 또 만몽(滿蒙)국경에서 전주(全州) 출생의 지인태(池麟泰) 중위가 전사하였다는 공전(公電)을 접하게 되었다. 이인석 군이나 지인태 중위는 하나는 지상의 부대로서 하나는 황취(荒鷲)의 일웅(一雄)으로서 구적(寇賊)을 향하여 깊이 적진에 들어갔다가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된 것이니 한결같이 자신(身)을 홍모(鴻毛)¹³⁾처럼 가볍게 두어 위로는 성은에 봉답(奉答)한 바로서 제국의 군인으로서 영원히 귀감이 될 바이며 그들의 반도의 출신이니만큼 또한 반도인의 광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사변 발발 이래 반도인이 전선에서 혹은 군의 통역(通譯)으로 혹은 운전수로서 전사한 사람이 있었으나 이것은 완전한 군인이 아닌 점으로 스스로 군인의 전사와는 성질을 달리 하는

11) 서울과 시골을 아울러 이르는 말.

12) 동안이 얼마 오래지 아니함.

13) 기러기의 털이라는 뜻으로, 매우 가벼운 사물을 이르는 말.

바이요. 이번에 양인(兩人)의 전사는 제국 군인으로서 전사한 점으로 일단의 의의가 높은 바이다. 생각 건대 양인(兩人)은 응당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합사되어 제국의 명령으로 길이 그 방명(芳名)이 국가와 함께 무궁할 것이다.

2

반도는 아직 징병제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다만 총후의 열성으로 황군을 환송하며 또 기타 총후 임무를 다하여 오던바 이 반도인의 성충(誠忠)을 잘 현양(顯揚)하기 위하여 미나미(南) 총독의 영단(英斷)으로 지원병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제1회의 지원자는 3천명이던 것이 제2회에는 1만 수천 명의 지원자를 보게 된 것으로 보아 반도의 청년들이 얼마나 국가에 충성을 다할만한 열애(熱愛)를 가졌는가를 증명하는 바이다. 이렇게 훈련된 지원병으로서 최초의 전사자를 내이고 또 이제 위관(尉官)의 전사자를 내인 것은 피(血)로써 애국에 진력(盡力)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내선일체로 황국에 봉사하는 고귀한 영예를 가지게 된 것이다.

3

제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에 몸을 바치어 전사하면 그 위패(位牌)는 길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는바 아무리 그 급위(級位)가 낮을지라도 한결같이 호국의 영(靈)이 되는 것이다. 구미(歐米) 제국(諸國)에는 흔히 무명(無名)의 전사(戰士)라 하여 지난 구전(歐戰)¹⁴⁾ 당시에도 다수한 무명전사인 전사자의 유골을 합장하고 그 국민들이 경의를 표하였거니와 우리 제국의 국정(國情)은 이와 크게 달라서 비록 위급(位級)이 아무리 낮을지라도 무명의 전사는 절대로 없고 반드시 그 방명(芳名)은 일주(一柱)로 진좌(鎮坐)하여 황송(惶悚)하옵게도 천황폐하의 친배(親拜)의 하사를 봉양(奉仰)하는 광영을 입게 된다. 이것이 황국의 국정이 만방에 탁절(卓絕)¹⁵⁾한 것이며 생을 황국에 향(享)한 군인의 지대한 감격이다.

물론 이것은 황국 군인의 영예를 말함이지요, 몸을 황국에 바친 군인자신으로서는 오직 몸을 폐하께 바치었다는 봉공의 일념뿐이요, 이러한 영예를 연상(聯想)할 바는 아닐 것이다. 이번에 전사한 이인석 군도 그 향리(鄉里)에서는 모범청년이었고 독농(篤農)¹⁶⁾으로써 이름이 있었다하며 또 지중위도 중학(中學)이래 착실한 수재로써 이름이 있던 바이라 하니 평소에 참된 국민이 전선에서도 장렬한 전사를 바치는 것이다. 이로써 참된 국민과 참된 군인은 일관하는 것이며 군민(軍民)의 일체는 불가분의 결정(結晶)임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의 가정에서도 부모된 이는 모두 잘 사사로운 정(情)의 비애를 누르고 황국에 바친 것을 감격하였다 하니 반도가 병제(兵制) 실행의 초기인 만큼 그 침착(沈着)과 애국심을 기릴 바이다. 이 반도출신 군인의 전사는 멀리 대각(臺閣)의 육상(陸相)과 본부의 당로자(當路者)들이 함께 애도하고 또 전 반도의 감격과 경의(敬意)가 집중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홍모경처사유영(鴻毛輕處死猶榮)¹⁷⁾’이 아니냐. 오인(吾人)은 그들의 명복을 빌고 겸하여 금후로부터 황군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14) 제1차 세계대전을 뜻함.

15) 남보다 훨씬 뛰어난.

16) 독농가. 열성스런 농부나 농가.

17) 목숨이 홍모처럼 가벼워진 때면 죽는 게 오히려 영예롭다는 뜻. 조선 전기의 문신이고 사육신의 한 사람인

기원하며 이번 사적(史的) 사실을 기념하게 된다.

〈출전 : 「半島人軍人の戰死」, 『매일신보』, 1939년 7월 13일〉

5) 일본식 ‘씨(氏)’ 창정과 그 의의 - 일부의 오해(誤解)는 불가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선인의 내지식 ‘씨’제도 실시는 반도인으로 하여금 명실공히 일본인이 되는 길을 연 것으로 내선일체(內鮮一體)에 획기적 사실인바 26일에 그 실행 세칙도 공포되어 건국 2천6백 년인 내년 봄의 기원(紀元) 가절(佳節) 2월 21일을 복(卜)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측문(仄聞)하건데 향간(巷間)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소의 오해가 없지 않은 모양이다. 즉 반도인으로서 일본인식 ‘씨(氏)’를 창정(創定)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정치방침에 반하는 듯이 오해하는 것이다. 미야모토(宮本) 법무국장은 이에 대하여 그 오해임을 지적하고 미나미(南) 총독의 담(談)을 예로 인하여 “본령(本令)의 개정은 반도 민중에게 일본인식 ‘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요, 일본인식 ‘씨’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라고 한 말이 상징하듯이 일점의 의념(疑念)을 품을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반도인 중에 열렬히 일본인식 ‘씨’를 부치고 싶다는 요망자에게 그 길을 열어준 것이요, 그 이외에 다른 이면(裡面)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제도에 의하여 일본에 영년(永年) 거주하던 반도동포들은 가칭(假稱)의 일본인식 씨에서 법률상의 합법성이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만주·지나에 활약하는 반도인으로서도 일본인식 씨를 부치어 여러 가지로 긍지(矜持)와 편리를 느끼게 될 터이니 그 파급하는 바 혜택은 자못 측량하지 못할 바이었을 것이다. 오인(吾人)은 본령(本令) 공포(公布) 당시에 조선식 성(姓)이라는 것도 반드시 조선고유의 것이 아니요, 신라(新羅) 말 고려(高麗) 초부터 지나식을 모방한 데 불과한 것을 지적한 바 있었거니와 일본의 ‘씨’도 원(源)·평(平)·등(藤)·교(橋) 등에서 점차 자가(自家)의 편리에 의하여 민속의 추이(推移)에 의하여 파생한 것인 것을 지적하려 한다. 이와 같이 문화의 발달과 민속의 추이, 자가의 편리 등에 의하여 종래의 성을 그대로 ‘씨’로 하는 이도 있을 것이요, 또는 일본인식 ‘씨’를 창정(創定)할 수도 있는 자유스러운 생각에 일임(一任)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등(藤)·교(橋) 등 성이 그대로 ‘씨’로 남은 것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이니 일만은 부질없이 오해에 사로잡히어 자신의 의사를 좌우할 것은 아니다.

〈출전 : 「內地式 ‘氏’ 創定과 그 意義」, 『매일신보』, 1939년 12월 29일〉

이개(李埏)가 사형에 임할 때 읊었다는 시의 한 구절.

6) 징병제 시행 결정

1

대망(待望)의 날은 왔다. 순국(殉國)의 지성(至誠)에 불타는 2천4백만 민중이 오랫동안 열망하던 징병제도가 드디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반도 민중은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걸머지게 되었으니 성대(聖代)의 신민으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 있으랴. 반도의 청년남아는 국가의 간성(干城)으로 제1선에 용약(勇躍) 출동하여 진충봉공(盡忠奉公)의 정성(誠)을 다하게 되었으니 황국에 생을 바친(享) 자로서 이보다 더 큰 환희가 또 어디 있으랴. 이제 반도 민중은 이 영광과 이 환희를 갖게 되었다. 이 광영과 홍은(鴻恩)에 보답하고 이 환희와 감격을 보람 있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니 2천4백만 민중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신을 가다듬어 일사보국(一死報國)의 대결의와 대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일일(一日) 완급(緩急)이 있을 때 정신(挺身), 새 국난(國難)에 대처하는 것은 신주(神洲) 남야의 전통적 충정이나 우리 제국은 건국 이래 병농일치(兵農一致)의 결실을 거두어 왔다. 즉 국가에 유사시(有事)에는 간과(干戈)를 잡고 전장에 나아가 천하를 평정하고, 난(亂)이 다스려지면 돌아와 농공상(農工商)의 업(業)에 취(就)하여 왔다. 메이지(明治) 성대(聖代)에 이르러 서양 각국의 병역제도를 참작하여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제도로써 징병령을 발포하옵시고 새로이 민병(民兵)을 징모(徵募)하여 현역(現役), 예비(豫備), 후비(後備), 국민의 4종으로 나누시고 동시에 군인에 대하여 칙유(勅諭)를 발급하옵시어 그 의지할 바를 명시(明示)하옵시었다. 일청(日淸) 일러(日露)의 양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나타내어 황실을 부익(扶翼)하고 국위(國威)를 중외(中外)에 선양한 것은 국민개병·진충보국(盡忠報國)의 성(誠)을 다한 때문이며 만주사변으로부터 지나사변을 거쳐 대동아전쟁에 이르기까지 황군장병이 선모용전(善謀勇戰)으로 미증유의 전승(戰勝)을 널리 거둔 것도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일신(一身)과 일명(一命)을 바친다는 순국(殉國)의 지성(至誠)을 발휘하여 온 때문이다. 이리하여 오늘날 국운이 날로 융성하여 가는 것은 실로 국가의 간성(干城)으로 일사보국함으로써 호국(護國)의 영령(英靈)이 되기를 기하는 충렬(忠烈)의 1억 국민을 가졌기 때문이다.

3

반도는 총독의 시정 이래 30여 년 역대 위정자(爲政者)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봉대(奉戴)하여 선정(善政)을 베풀어 왔고 반도의 민중들 또한 황국신민으로서의 깊은 자각을 가져왔다. 만주사변(滿洲事變) 이래 반도 민중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은 한층 양양(昂揚)되어 지나사변, 대동아전쟁에 들어 드디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반도민중의 애국지정(愛國至情)이 열렬히 병역제도의 실시를 요망하게 됨에 이르러 당국(當局)에서는 이 요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징병제 실시의 전제로 1938년에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다. 이번의 징병제 실시의 결정은 반도 민중에게 그 숙년(宿年)의 염원이던 숭고한 황국신민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니 바로 획기적

인 희보(喜報)다. 반도 민중은 이 광영 있는 제도실시의 정신을 체득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진의(眞義)에 투철함과 동시에 더욱 국민적 자질의 연성(鍊成) 향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칙유(御勅諭)로 하사 하옵신 군인정신, 특히 충절의 정신의 함양에 대하여 부단(不斷)한 수련을 쌓아 진정한 황국 신민으로서 국방의 대임(大任)을 완수하기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출전 : 「徵兵制施行決定」, 『매일신보』, 1942년 5월 10일〉

2. 『조선일보』의 주요 친일사실

1) 시국과 그 인식

1

북지사변은 지난 20일부터 드디어 중대화했다. 이때는 바로 우리가 종래보다 다시 일층 인식을 새로이 하여 선처할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일층 당국의 취체(取締)¹⁸⁾의 손까지는 믿지 못할 정도의 유언비어적 심리가 유행하여 일면으로 과도한 공포증에 걸리는 사람이 생겨나는 동시에 다른 일면으로는 공포를 지나서 자포자기에 빠지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말을 듣는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 전체로 보아 또한 사회 전체로 보아 실로 한심을 금할 수 없는 중대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물론 이 시기가 중대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아직도 우리가 공포증을 일으켜야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또한 장래에 있어서도 그러한 시기가 오고야 말리라는 과학적 이유는 없다. 천년을 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내일로 죽을 것처럼 일하라는 고언(古言)도 있거니와 사람의 생활철학은 마땅히 이룰 것임에 불구하고 목전에 아무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에 환상을 그려 가지고 그 환상이 명하는 바에 의하여 백해무일리(百害無一利)한 공포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개인은 물론 한 나라 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한심할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더구나 단순한 공포의 정도를 지나서 자포자기적 행동에까지 흐른다면 이것은 여간 한심하다는 말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수 백 년을 두고 조선 사람은 제 손으로 전쟁을 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시에 처하는 각오와 훈련을 가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18) 단속이라는 뜻.

저 한국(韓國)시대¹⁹⁾에 있어서 일청, 일러의 양역(兩役)을 당해 보았으나 이것은 조선인의 자의에 의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은 양역에 있어서 전시에 처하는 각오와 훈련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공포의 쓰라린 경험만을 맛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때와 지금과는 우리의 지식 정도와 문화의 “레벨”이 다르고 또한 전쟁의 양식이 다르다는 일사(一事)에 특히 유의하여 우리는 시국에 처하는 도리에 있어서 만유감(萬遺憾)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4

또한 이것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금일은 전쟁의 형식이 다른 까닭으로 속칭 소위(所謂) 피란(避亂)이라는 것이 사실에 있어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골서 집을 싸 보았대서 갈 데가 없는 것이 오, 서울서 집을 싸 보았대서 갈 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설사 최악의 경우에 도달하는 날이 만 일에라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최대 각오와 협력일치하므로써 사태에 대처할 일로(一路)가 있을 뿐이요, 공포 또는 이것을 지나서의 자포자기는 최대금물이라는 일사에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이다.

(출전 : 「時局과 그 認識」, 『朝鮮日報』, 1937년 7월 22일)

2) 총후의 임무

- 조선군사후원연맹(朝鮮軍事後援聯盟)의 목적

1

북지사변이 중대화하기 시작하자 조선 역시 제국 국민으로서의 응분(應分)의 의무와 성의를 다하고자 시국대처책을 강구(講究) 실시하고 있는 중 조선군사후원연맹(朝鮮軍事後援聯盟)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은 (1) 황군의 사기를 고무격려하며 (2) 또한 출정장병으로 하여금 후고(後顧)²⁰⁾의 우려(憂慮)가 없이 제일선의 임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총후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하는 자로써 조선 전도(全道)를 총괄하여 조선군사후원연맹이 있고 그 아래 각 도(道)는 각별로 도군사후원연맹이 있고, 도 아래는 다시 부(府)군(郡)도(島)별로 각부군도군사후원연맹이 있어 가지고 상하가 긴밀한 연락과 통제 밑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하도록 조직된 것이다.

2

군사후보연맹 목적은 이미 그 규약 중의 목적에 관한 문구를 보고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또는 그 명칭 자체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총후의 임무를 다하자는데 있다. 근데 총후의 임무는 이를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다. “황군의 사기를 고무격려하며”는 정신적에 속한 것이요, “출정장병으로

19) 대한제국 시기를 뜻함.

20) 지난 일을 못 잊어서 뒤돌아보거나 생각함.

하여금 후고의 우려가 없이”는 물질적에 속한 것이다. 황국의 위무 선양 및 동양 평화를 쌍견(雙肩)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 하여금 안심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身命)을 다하여 제일선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데는 총후에 선 일반국민의 정신, 물질 양방면에 걸쳐서의 후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것을 출정장병 측으로 본다면 이 후원의 유무가 사기의 증감에 하등 영향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정(人情)의 기미(機微)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총후의 성의를 다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것이요, 국민측이 이것을 다하면 제일선의 사기는 진작되는 것이다.

3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조직된 조선의 군사후원연맹은 여사(如斯)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 하면 (1) 일반국민에 대하여 황군 원호(援護)의 의식을 강화 철저케 하며, (2) 응소(應召), 출동 또는 개선(凱旋) 군인에 대한 송영 및 접대 (3) 파견 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전병사상 군임 및 가족, 유족에 대한 조위문(弔慰問), (5) 상이군인 및 군인의 가족, 유족에 대한 부조(扶助), (6) 응소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상의 알선 (7) 그 외 필요한 사업 등등의 7항목으로 되어있다. 제1항목으로부터 제4항목까지는 정신적 후원사업이요, 제5항목은 물질적 후원사업이요, 제6, 제7의 양항목은 말하면 정신 물질 양방면에 걸친 후원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를 국민 각 개인 측으로 본다면 정신 물질 양방면의 후원이 다 가능한 이도 있을 것이요, 혹은 각각이 어느 한 방면의 후원밖에 더 할 수 없는 이도 있을 것이나 요는 국민 각 개인은 각각 힘자라는 데까지를 목표로 하고 응분의 성의를 다하는 데 있을 것이다. 있는 이로서 몇 만원을 내는 것도 총후의 임무요, 출정장병을 향하여 위로 및 고무격려의 편지 한 장을 보내는 것도 총후의 임무일 것이다.

〈출전 : 「銃後의 任務 - 朝鮮軍事 後援聯盟의 目的」, 『朝鮮日報』, 1937년 8월 2일〉

3) 지나 응징과 국민의 각오 - 견인지구(堅忍持久)의 정신이 필요

1

20일 고노에(近衛) 수상은 신문기자단을 상대한 시국담에 있어서 “제국의 방침은 종래의 사건불확대주의(事件不擴大主義)라는 소극적 방침을 일척(一擲)²¹⁾하고 금후는 적극적으로 지나(支那)²²⁾ 응징의 태도로 변한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제국의 대중(對中) 방침의 질적 전환을 설명하여 일반국민의 시국인식을 환기했다. 동일(同日)에 조선에서는 미나미(南) 총독이 총독부 고등관 이상 및 소속관서장, 각 도지사, 언론계 대표, 재계 대표, 중추원 고문, 참의(參議), 및 조선인 유력자

21) 한 번에 내던짐. 또는 한 번에 버림.

22) 중국을 뜻함. 이하 중국으로 고침.

등을 각별히 소집한 석상에서 “지나의 무반성, 무모는 벌써 용사(容赦)²³치 못할 바로 제국의 사건불확대 방침에 의한 은인자중도 그 폭발점에 달하여 지금은 제2단의 전시체제에 들어갔다.”는 요지를 설명하여 시국인식의 철저와 거국일치의 강화를 재강조한 바 있었다.

2

지나의 오만불손 항일불신의 도전적 태도는 북지에 있어서는 남구사변(南口事變)을 유치(誘致)²⁴했고 중남지(中南支)에 있어서는 상해사변(上海事變)을 유발한 결과로 7월 7일 이래의 북지사변은 벌써 지방적 국부적의 사변이 아니요, 전면적 전 지나적 사변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이 사실에 따라서 제국의 대중방침에도 역시 근본적 전환을 초치(招致)했으니 그것은 즉 수상의 시국담, 총독의 훈시에 명료히 표현된 바와 같이 사건불확대주의는 일척되고 지나옹정주의로 변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금후부터는 단순한 비상시가 아니요, 제국은 완전히 전시체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국민일반의 인식과 각오에도 일대 전환이 있음을 요한다. 물론 지나옹정주의로 전환된 금일에 있어서도 “지나의 대중은 이를 적으로 대하지 않고 다만 국민정부²⁵의 반성을 구할 뿐이다.”라는 태도는 여전히 제국의 신조로 이를 엄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국으로서는 무고한 지나의 대중을 전화(戰火)의 도탄에 함닉(陷溺)시키는 것은 그 정(情)에 있어서 불인(不忍)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기만에 걸려서 어디까지든지 완미(頑迷)²⁶ 불손한 도전적 태도를 여전히 지속하는데 있어서는 제국은 부득이 그들에게 정상(頂上) 일침의 각성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로 그들이 자진하여 전죄(前罪)를 깨닫는 날까지 무력철퇴를 가하는 것이 곧 응징의 유일한 목적이다.

3

지나의 영토에 대하여는 척토(尺土)도 제국이 욕심내는 바가 아니다. 요는 그의 반성을 구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금일이라도 그가 반성만 하면 사건은 그 즉시로 종국을 고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전적 태도를 계속하는 그 동안까지는 제국의 응징행위는 제국이 바라건 바라지 않건 간에 이를 지속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사건의 단기 해결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나 4억의 민중을 위하여 제국이 바라는 바이니 그들의 태도 여하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는지 모르니까 제국 영토 내의 일억 신민은 적어도 그 각오에 있어서는 최악의 사태와 장구한 시일이 걸릴 것을 예기(豫期)하고 견인지구(堅忍持久)의 정신과 거국일치의 관념을 가지고 제반산업의 개발진전을 도모함으로써 제국의 이 중대 사명 달성 도상에 만유감이 없기를 기해야 될 것이다.

〈출전 : 「支那膺懲과 國民의 覺悟」, 『朝鮮日報』, 1937년 8월 23일〉

23) 용서하여 놓아 줌.

24) 피어서 데려옴.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임.

25)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국민정부를 뜻함.

26) 완강(頑強)하여 사리(事理)에 어두움.

4) 전시경제체제

1

시국 타개를 위한 임시의회를 앞두고 제국의 재정 경제는 드디어 전시 경제 체제를 취하고자 각종 방안을 세우고 있다. 임시사업자금통제법안도 그 하나요, 군수공업동원법의 발동을 결의했다는 것도 그 하나이다. 전자는 새 법률의 제정 실시에 관한 문제요, 후자는 기존 법률의 발동에 관한 문제나 이 양자는 일국의 재정경제 상으로 보아 막대한 영향을 파급하는 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 국가가 전시체제에 들어설 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1) 사람 (2) 돈 (3) 기계의 세 가지이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육해공 삼방면으로 제일선에 서는 장병을 가리키는 것이요, 돈은 사건비요, 기계는 총포탄환을 위시하여 일체의 군수품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제2항과 제3항을 위해서는 일국의 국부 또는 산업의 전부를 동원시킬 수 있는 최대한까지 동원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 바, 정부는 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시 경제 체제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대중(對中) 사건비는 이미 제1차 및 제2차를 합하여 약 6억 원에 달하는 바 오는 임시의회에 제출할 제3차 사건비는 해륙군을 합하여 다시 20억 원이라는 거액이다. 현하의 정세에 있어서는 이 재원을 전부 공채 발행에 의하여 보전(補填)해 갈 수밖에 없는데 통화의 부당한 팽창을 유기(誘記)치 않고 이것을 소화(消化)시키려면 불가불 민간의 공채 소화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 필요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안출한 것이 말하자면 자금통제(임시사업자금통제법안)다. 즉 민간 소유의 자금을 (1) 불필요한 데, (2) 불급(不急)한 데, (3) 필요의 정도를 넘어서 등에는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간접으로 공채 소화력을 배양하자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물론 이 법안은 불급사업, 불요사업, 초과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억압하나 국방사업,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침을 취할 것이니까 공채 소화와 아울러서 생산력 확충의 목적도 이를 겸유한 것이다.

3

또한 다른 한편 군수공업동원법의 근본정신은 전시를 맞이하여 (1) 군수품의 생산 또는 수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간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사용 또는 수용(收用)하며 (2) 군수품의 생산, 수리 또는 저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간의 토지 가옥 창고 그 외의 공작물 및 부속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사용 또는 수용하며 (3)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전 2항목에 수반하는 종업원도 이것을 공용(供用)시킬 수 있다는 등등의 세 가지에 그 근본정신이 있는 것이다. 즉 일국 내의 생산기관의 전부를 들어서 군수품우선생산의 원칙하에 총동원시키자는 것이 곧 군수공업동원법의 근본정신이다. 이것을 보면 오는 임시의회를 통과하여 자금통제법이 실시되며, 군수공업동원법이 발동하면 제국의 재정경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시 경제체제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평시경제와는 상당한 정도

의 거리가 있는 정세에 놓일 것을 추찰(推察)할 수가 있는 것이다.

〈출전 : 『戰時經濟體制』, 『朝鮮日報』, 1937년 8월 27일〉

5) 조선에 지원병제도 - 획기적 중대 사실

1

15일 육군성(陸軍省) 발표에 의하면 조선인에게도 금년 4월부터 지원병제도를 여행(勵行)²⁷⁾할 터인데 우선 400명 정도를 보병에 한하여 연령 17세 이상 심신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6개월 간 훈련하여 조선부대에 배치시키기로 한다는 바, 재영기간은 2개년이라 한다. 병역제도는 일본 및 사할린(樺太)에 본적을 둔 사람에게만 한하던 것인데 이제는 조선인에도 지원병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획기적 중대 사실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일현현(一顯現)이라 볼 수 있다.

2

무릇 국민에는 납세, 교육, 병역 3종의 의무가 있는데 종래 조선인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었고 교육, 병역의 의무는 없었다. 듣건대, 당국은 우가키(宇垣) 전 총독의 초등교육 10개년 계획을 5개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8년을 기하여 의무 교육 실시의 기초를 삼는다 하니 금차 발표된 지원병제와 아울러 조선인도 점차 3대 의무를 다하게 될 터이다. 당국이 금차 교육 및 병역에 일대 획기적 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은 지나사변(支那事變)²⁸⁾을 계기로 국가가 중대한 국면에 제회(際會)한 결과 국민총동원의 결실을 거두고자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믿는 바이다.

〈출전 : 『朝鮮에 志願兵 制度實施』, 『朝鮮日報』, 1938년 1월 18일〉

6) 국가총동원법 성립

1

현하 절박된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전시체제의 고도화를 기하는 국가총동원법안(國家總動員法案)은 국민생활에 중대 변혁을 재래(齎來)할 획기적 법안인 만큼 의회제출 전부터 찬부(贊否) 양론의 와중(渦中)에서 일시는 그 성립이 의문시되었으나 지난 2월 24일 중의원에 상정된 지 만1개월인 지난 25일에

27) 행하기를 장려함.

28) 1937년 중일전쟁을 뜻함.

이르러 마침내 원안대로 귀족원까지 통과하여 이에 성립을 보게 되었다. 금회에 귀족원을 통과한 국가총동원법은 “전시 또는 사변에 즈음하여 국방목적에 달성코자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인적 자원이라 함은 제국신민으로 직업능력을 가진 자를 지칭함이고 물적 자원이라 함은 군수물자는 물론 기타의 일반물자와 □무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총동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에 의하여 이를 정부통제 하에 운용하게 되어있다.

2

최초 정부 일부에는 사변 발발 당시 임시의회에 본 법안을 제출할 의향도 있었다 하나 동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대 법률이요, 또 국민의 절대 지지를 필요로 하므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기회를 주어 일반국민의 이해를 철저케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불편을 참아가면서 금 의회에 제출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비록 형식만은 법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규정은 칙령에 위임하여 있는 점이 가장 파란을 유기하였던 것이다. 첫째로 본법의 내용은 운용 여하에 의해서는 “헌법의 정지(停止)”를 유치(誘致)하게 되고 둘째로 본법은 금회 사변에도 적용할지 안 할지가 명확치 못하다는 이유로 정(政)·민(民) 양당은 반대론을 주장하고 소회파만이 본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과 전시 또는 국가 사변에는 비상 대권(大權)이 발동할 수 있다는 논지로 찬성론을 주장했었다.

3

총동원법안을 중심으로 찬부 양론의 대립이 격렬한 중에서 정부도 최초에는 의원의 신랄한 질문에 응답할 바를 모르리만치 당황초조하였으나 그 후 치츄 스키야마(杉山) 육상(陸相)도 장래전에 대응하기 위함에는 병역법의 개정만으로는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과 현재와 같이 긴박된 국제정세 하에 있어 전시체제가 필요한 것도 물론, 따라서 국가총동원법의 규정이 긴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고노에(近衛) 수상도 전시가 장기에 걸치게 된 이상 정치 경제 등 각반 문제를 신사태에 적응하도록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또 정부는 본안이 성립되는 동시에 총동원법의 평시 규정은 적용할지라도 금회의 지나사변에 있어서는 제3국이 간여치 않는 한 전시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는 것을 언명한 것으로 것처럼 반대하던 정당들도 점차 시국의 중대성과 정부의 고충을 양해하고 본법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4

특히 18일 귀족원 동법안위원회에서 수상으로부터 본법 적용 방침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사변 관계 임시 입법은 사태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한 현행대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결과 문제로 되어있던 신문 출판의 취체규정은 본법 시행과 함께 변동치 않고 종래대로 신문법과 출판법에 의하여 취체할 것이 명료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 중에 있는 것은 본법안시행의 구성방침이다. 정부는 본법에 의한 칙령을 공포할 시에는 의회에 대한 심의회(審議會)에 부의(附議)하여 발동하리라고 하는데 그 심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관료 위원과 국민대표위원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국

민대표의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選任)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그러나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바이다.

〈출전 : 「國家總動員法成立」, 『朝鮮日報』, 1938년 3월 26일〉

7) 물자동원계획

- 장기전(長期戰) 즉 경제전(經濟戰)

1

23일 고노에(近衛) 내각은 각의에서 물자동원계획을 결정하고 국민의 협력을 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의 요점은 (1) 위체(爲替)²⁹⁾ 시세의 견지, (2) 일반물자의 소비절약, (3) 수출 증진을 꾀할 것, (4) 주요 물자의 수입 및 배급을 원활히 할 것, (5) 저축의 보급철저를 꾀할 것, (6) 국민생활의 간소, (7) 주요물자의 증산, (8) 군수공업 능력의 증진, (9) 폐품의 회수, (10) 실업자의 구제 등으로 물자 전반에 걸친 동원 계획이다.

2

지나사변이 장기전에 들어가 이에 준비할 재정적 경제적 대책이 필요한 것은 누차 논평한 바이지만 그 중에도 가장 긴요한 것은 물자에 대한 대책이라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화폐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군수품으로 전쟁하는 것이니 군수품의 조달 없이 전쟁은 수행되지 못하는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물자의 풍핍(豐乏) 여하는 곧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의 여하는 수출입 무역에 관계하며 무역액, 물가 등의 고저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하는 때문이다.

현하 일본 정세로 보면 평시에도 가솔린, 철재(鐵材) 등은 수요액에 전자는 10분의 1, 후자는 반도 공급치 못하는 상태라 전시인 금일의 수요를 완전히 공급하려면 약간의 수입 가지고는 안 되며, 수입의 과다는 자연 금(金) 유출의 다액을 요하며, 연산액(年産額) 4억을 불과하는 현하 상태로는 입초(入超)에 대한 금 준비가 부족하니 어찌 위체 유출입, 물가, 소비의 통제, 주요 산물의 증산, 군수 공업의 증진, 근검저축, 폐물 이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대책이 필요치 않으랴.

3

물론 물자동원을 재정, 경제 정책의 일부분이요, 따로 공채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물자 대책은 다른 재정, 경제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물자 정책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일찍 제정한 위체관리법, 수출입조치법 외에 따로 물자동원계획을 수

29) 외환을 뜻함.

립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공성(商工省)에서는 따로 물가 최고 표준 가격을 결정하고 다른 장관에게 통달 하였으며 만일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국가총동원법까지라도 발동시킬 방침을 가졌다 하는 것은 저간의 소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4

이 물자동원계획은 말할 것도 없이 물자의 통제인 만큼 국민 생활에 허다한 부자유가 있을 것은 추상(推想)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장기전 하에 있어서의 경제통제는 구극(究極) 국민생활의 안전을 의미함이니 그 취지를 이해하고 정부에 협력함은 국가생활상 불가피한 사정이다.

요컨대 장기전은 즉 경제전이며, 경제전은 곧 물자전이니 이것은 구주대란(歐州大亂)³⁰⁾이 증명했으며 현하 지나사변이 산 교훈이다. 이것이 물자동원계획이 수립되는 소이이다.

〈출전 : 「物資動員計劃」, 『朝鮮日報』, 1938년 6월 25일〉

8) 지나사변 1주년

1

세간에서는 흔히 노구교상에 있어 수발의 적탄으로 말미암아 금번의 지나사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 는바 물론 금번 사변의 직접 동기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장(張)³¹⁾ 정권의 항일 용공(容共) 정책 은 제국으로서 묵시하기 어려운 바로서 만일 제국의 자중함이 없었던들 실력의 발동은 이미 그 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제국은 만주국(滿洲國)이 건설된 이래 누차 일만지(日滿支) 삼국의 공존 공영을 위 하여 장 정권에 제의한 바 있었건만 장 정권은 소허(少許)³²⁾도 제국의 진의를 이해치 못하고 도리어 적대하여 옴에 동아의 평화를 위하여 소련의 적세(赤勢) 침략을 배제키 위하여 제국의 황도이상을 달성 시키기 위하여 장 정권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된 터인 즉 금번 사변에 있어 제국의 태도는 실로 부득이 한 일이다. 여하튼 황군이 한번 이르는 곳에는 막을 자가 없어서 북지는 물론이요 중지에도 강소(江蘇) 절강(浙江) 안휘(安徽) 등 제성(諸省)이 전부 평정되었다. 지금 장 정권은 오지로 도피하여 여명(餘命) 을 보전할 방도 외에 없는 대신 북중지에는 이미 신 정권이 확립되어 제국의 지도 아래 신 지나가 건설 되어 가고 있는 현세(現勢)이다.

2

지금 북지사변의 일주년을 임하여 우리는 그 원인과 경로를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코자 하거니와,

30) 제1차 세계대전을 뜻함.

31) 장개석(蔣介石) 국민정부를 뜻함.

32) 얼마 안 되는 적은 분량, 얼마 안 되는 동안.

이타가키(板垣) 육상(陸相)이 성언(聲言)한 바와 같이 금번의 북지사변은 제국에 있어 파괴가 아니요 건설이라는 것이다. 파괴는 단기로써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건설은 결코 단기로써 가능할 것이 아닌 만큼 우리는 금번 사변이 장기로 끌 것을 각오하는 동시에 그 장기 건설을 달성하기에까지 꾸준한 인내력을 요하게 된다. 장기 건설의 첫 조건은 장정권의 괴멸이니 어떠한 오지에 어떠한 형식으로 그것이 존속되던지 그 철저한 괴멸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또 그의 둘째 조건은 신 지나의 완성이니 그것의 기초가 서고 토대가 잡히도록 까지 제국의 실력적 원조를 아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금번사변은 일찍이 일정전역이나 일로전역보담도 더 한층 거대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관민이 다 함께 시국의 비상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니 금번 사변을 단순한 군사행동으로 이해해서는 실로 인식의 착오가 크다고 볼 것이다.

3

지나사변에 대한 제국의 사명이 얼마나 거대하다는 것은 이미 전단(前段)에 있어 진술한 바가 있거니와 이와 같이 거대한 사명을 달성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일심협력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전선에 나간 장병들의 희생을 생각하여서라도 총후(銃後)의 국민은 마땅히 정성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이 난관의 돌파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당국 및 사회 각 단체에서는 이러한 견지 아래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을 결성함으로써 전국민의 정신적 협조를 고조하려는 바 지나사변의 일주년인 이날을 맞이하여 조선연맹의 발회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제국의 신민된 자로서는 누구나 이 연맹의 취지를 찬성치 않을 자가 없겠지마는 한 걸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출전 : 「支那事變 一周年」, 『朝鮮日報』, 1938년 7월 7일〉

9) 총후후원 강화주간

- 일반의 시국 인식을 철저케 하라

1

북지사변은 발발된 지 이미 1년 3개월이 되었다. 북지와 중지에 있는 광범위한 전선에 걸쳐 과거에 혁혁한 무훈은 실로 역사상에 보기 드문 효과를 수득(收得)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어능위(御稜威)³³⁾가 내리신 바인 동시에 밖으로 장병이 손신(損身) 보국(報國)하는 일념에 불타고, 안으로 일반국민이 총후의 적성(赤誠)을 다하여 얻은 바의 결과다. 과거 1년 3개월 간의 성과를 회고할 때에 실로 일본 국민의 위대한 노력을 자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열국도 또 전선(前線) 장사(將士)의 비할 데 없는 충용(忠勇)과 후방 국민의 적성 단결에 대하여 감탄(感歎)과 경외(敬畏)를 표하지 않는 이가 없는 바이다.

33) 매우 존엄한 위세.

2

한구(漢口) 함락이 목척(目睫)간에 절박한 것을 알면서도 장 정권은 “방위무한(防衛武漢)”이라는 표어 하에 장기 항전을 절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구 함락은 시간문제라고 할지라도 장정권의 오지 둔인(遁人)은 기정사실로 그 장기 항전의 실질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며 더욱이 협서(陝西) 일대에 반거(蟠居)하는 공산군 및 점령지구의 오지에 산재 준동(蠢動)하는 패잔병은 부득불 청소치 않으면 안 될 형세에 있다. 더욱이 열국의 동향은 자칫하면 금번 성전의 목적을 이해치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음으로 양으로 장 정권을 원조하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일본 국력의 소모를 기대하고 있는 현세다. 북지사변을 싸고 있는 정세가 이와 같으므로 사변의 종결이 도저히 단기에 되지 않고 적어도 5년이나 10년의 세월을 요할 것을 일반 국민은 심각히 인식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지나사변의 발발 이래로 총후국민의 적성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다. 혹은 국방헌금으로 혹은 비행기의 헌납으로 혹은 위문품과 위문사절의 파송(派送)으로 혹은 백의(白衣) 용사들의 위안으로 혹은 출정 장사 가족의 부조와 위안으로 혹은 전몰 장사 영령의 조위로 혹은 신사불전에 기원으로 각양각색으로 다 이 적성의 표현이 아님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시국에 대한 인식이 철저히 못하고 따라서 성심성의를 십이분 실천과 공행으로 표현되지 못한 감도 없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일선 장사가 총후국민을 대하여 신명을 걸고 악전고투하는 이유가 충분히 일반국민의 의식에 투철(透徹)치 못한 까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금번 총후 후원 강화 주간은 이와 같은 의식을 환기하고 가일층 후원의 결실을 거두는 데에 그 근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 강화 주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마침 황공하옵게도 300만 원 거액의 내탕금을 하사하옵시고 또 우악(優渥)³⁴⁾한 칙어를 내리신 것은 일반국민에게 범(範)을 내리신 것으로 실로 성공 성구(誠恐誠懼)³⁵⁾에 불감(不堪)할 바이다. 일반국민은 이 강화주간의 각종 행사를 통하여 시국을 가일층 철저히 인식하고 총후 후원을 가일층 강화하여 사변의 목적달성에 매진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막연하게 한구 함락으로써 사변이 종결을 고하는 것처럼 알고 민심이 이완되는 것과 같은 것은 크게 경계할 바이다.

〈출전 : 「銃後後援 強化週間に 際하여 一般의 時局認識을 徹底케하라」, 『朝鮮日報』, 1938년 10월 6일〉

34) 은혜가 매우 넓고 두텁다.

35) 공구(恐懼) : 매우 두려움.

10) 광동합락

- 한구(漢口) 공략에 대한 영향 다대

1

21일 오후 3시 황군은 전차대(戰車隊)를 선두로 당당 광동시(廣東市)에 입성하였다 한다. 지난 12일 우리 육군부대가 바이야스만에 상륙한지 불과 10일 질풍신뢰적(疾風迅雷的)으로 진출한 황군은 연전연승 파죽지세로 지나군을 격퇴하고 어제 극소의 희생을 보고 광동을 점령하였다. 상해(上海) 공략에 2개월을 요하고 남경(南京) 함락에 상당한 고초를 당한 것에 비하면 실로 파기록적 행군이어서 우리 남지(南支) 상륙부대가 얼마나 정예(精銳) 충용(忠勇)한가를 알 수 있는 동시에 지나군의 방비와 전투력이 얼마나 박약한가를 알 수 있다.

2

광동은 본래 신해혁명(辛亥革命)의 책원지로 남경 정부가 잇을 래야 잇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곳인 동시에 한구 방비의 필요한 군용품 및 군자금을 조달하는 중요 거점으로서 상해에 지지 않는 중요성을 가졌었다. 이제 광동이 함락되어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군수품(軍輸品)이 일체 광동에 들어오지 못하고 베트남(安南) 등지로부터 직접 입항하는 선박이 절대(絶大) 광동에 정박하지 못한다면 한구에의 군비(軍備) 조달은 절대로 두절되어 경한선(京漢線)의 차단과 서로 비슷하여 일대 고립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남지에서의 항일 중요 거점인 광동이 함락되었다는 보도는 항일 중추인 한구에도 적지 않은(不少) 영향을 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3

물론 장정권은 월한선(粵漢線)의 한 역인 형양(衡陽)으로부터 광서성(廣西省) 계림(桂林)에 이르는 철도를 부설(敷設)하여 계림, 유주(柳州), 남녕(南寧), 용주(龍州), 하내(河內)를 연락하는 트럭선(線)에 접속하여 해방(海防)으로 들어오는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도 일시적이오, 한구를 포위한 황군의 맹격은 한구에서 떨어지기를 불과 200리에 접근했으므로 1개월을 넘지 않아 함락되지 않을까 한다. 설사 한구를 포위한 부대의 진격이 늦더라도 남지로부터의 진격이 지대한 효과를 낼 것은 광동군 전부가 황군에게 투항한 사실과 앞선 해 지나혁명 시에 황포군관학교생의 북벌 호령(呼令)에 남지 전 군벌이 피를 보지 않고 굴복했던 것으로 보면 한구 함락은 그리 멀리 않았다 할 수 있다.

4

그러나 지나는 토지가 광대하고 인구가 다대하고 경제 조직이 원시적이며 다년 전란에 경험이 있으며 오랫동안 배일 교육에 젖은 지나라 광동이 점령되고 한구가 함락된다 하더라도 장정권이 즉시 몰락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시 도읍을 중경(重慶)이나 혹은 곤명(昆明)으로 이전하여 초토

항전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광둥 함락으로서 이제 곧 사변이 다간 것으로 낙관하지 말고 수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각오해야 할지니 장개석(蔣介石) 정권의 몰락, 친일 정권의 확립을 보기 전에는 사변이 종료한다고 볼 수 없다. 광둥 함락을 기회로 일층 견인지구(堅引持久)의 염(念)을 굳게 할 필요를 인정하는 바이다.

〈출전 : 『廣東陷落』, 『朝鮮日報』, 1938년 10월 23일〉

11) 일본정신발양주간 실시

1

대일본제국 황기(2599년³⁶⁾의 기원절을 맞이하여 2월 8일부터 동 14일까지 1주간 일본정신발양주간을 실시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그 실시 방법으로 기원절 봉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신사(神社) 참배, 신단(神壇) 예배, 국체(國體) 천명, □사(□史) 현양, 동아 신사태에 대한 인식 강화에 자(資)할 각종 전람회, 영화회 개최, 성묘(省墓), 사당(祠堂) 예배, 근로 봉사, 무도(武道) 대회, 각종 경기회 개최 등, 10여 종목이 거시(擧示)되어 있는데, 요컨대 그 취지는 진무천황(神武天皇)의 어창업(御創業)을 회상하여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정신 천명을 중심으로 일본제국의 존엄한 국체, 광원(宏遠)한 조국(肇國)의 이상, 일본 문화의 발양에 노력함으로써 동아 신질서 건설에 매진할 국민의 각오를 일층 더 견고하게 함에 있다.

2

그러면 일본 정신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학문적 이론이 아니다. 말하자면 일본 민족의 심경이 오 기질이오 그 성품으로서 일본 고유의 민족정신이다. 이 정신이 발로되는 첫째의 표징으로는 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통치(天皇統治)에 대한 절대적 익찬(翼贊)³⁷⁾과 국체에 대한 부동의 신념을 들 것이오, 둘째로는 팔굉일우의 도의적(道義的) 이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군신화락(君臣和樂) 대동대화(大同大和)의 정신을 들 것이오, 그 넷째로는 명정(明淨), 직정(直正), 협용(俠勇), 의기(義氣)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일본 민족의 4대 덕목인 동시에 일본 문화의 극치이다. 진충보국(盡忠報國) 경신숭조(敬神崇祖)와 그러하고 일군지하(一君之下)의 만민보익(萬民補翼)이 그러하며 화충(和衷)³⁸⁾ 협동과 의용(義勇) 강직이 또한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서양의 개인주의 또는 개체를 가하여 전체를 이르는 전체주의의 정신과는 근본부터 다른 것으로서 팔굉일우, 즉 도의적 이상이 그 대(對)세계관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지나사변 처리에 있어서도 이 정신이 그 기본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36) 1939년.

37) 보도(輔導).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이끌어 감.

38) 마음 깊이 화목함.

그러나 장 정권은 아직도 미몽을 깨지 못하였다. 중경을 그 근거지로 하고 소련과 영국, 미국, 프랑스에 의존하여 여전히 항일을 부르짖고 또 그 준비에 여념이 없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대(對)지나 최대 권익국인 영미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대지나 크레딧을 허여하고 대일항의를 거듭하여 조금도 동아시아 신사태 일본의 성업(聖業)을 인정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아니한다. 소식에 의하면 대일 공동 경제 탄압책을 연구하는 중이라는 말도 있다. 어떻게 장정권이나 원장(援蔣)³⁹⁾ 제국(諸國)인 영미불소가 한결 같이 일본의 진의를 깨닫지 못한 것만은 가릴 수 없는 사실이다.

금후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에 있어서는 국민총력을 요하는 바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첫째 지나에 대하여는 파괴에 있어서나 건설에 있어서 팔굉일우의 황도정신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고, 또한 이익국인 영미불 등 원장(援蔣) 제국(諸國)에 대해서도 이 이상을 구현함으로써 그들의 착오를 깨닫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는 화중, 의용협화, 일치, 도의적 세계관의 4대 덕목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이 정신이 더욱 긴요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변 처리에 일본 정신의 발양이 필요한 이유이다. 모름지기 일본국민은 이 기회에 일단(一段)의 정신 진작으로써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에 매진할 각오를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日本精神 發揚週間實施」, 『朝鮮日報』, 1939년 2월 8일〉

12) 해남도 점거의 의의

지난 10일大本營 육군부 공표로 동일 새벽부터 육해군 정예 부대는 긴밀한 작전 하에 해남도 기습 상륙에 성공한 것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외국 권익에 대한 불침해와 국가 자위권의 발동인 것을 명백히 하고 하상(河相) 정보부장은 담화의 형식으로 이번 해남도(海南島) 점거는 남지해상의 봉쇄 강화가 목적이요, 또 이 군사행동은 즉 기존 제조약과 하등 저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 상륙 부대는 상륙 제1일에 요충 경산(瓊山)과 해구(海口)를 점령하고 각 방면에 향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중에 있는데 원래 이 해남도에는 장(張) 정권⁴⁰⁾의 항일 군단의 주둔이 없고 약간의 보안대 및 도민으로 조직된 자위대가 있을 뿐이라고 한족 전도(全島) 요지(要地)의 완전 점거는 수일을 지나지 않아 완성할 가능성이 확실한 것이다.

39) 장개석 정권을 원조하는.

40) 장개석(蔣介石) 국민정부를 뜻함.

2

원래 해남도는 광동성 남부에 두출(斗出)한 뇌주(雷州) 반도 남방에 있는 하나의 큰 섬으로 일찍이 송자문(宋子文) 등이 동도(同島)의 개발을 위하여 획책하던 곳이다. 그러나 동도는 경제상 제(諸) 조건보다도 군로(軍路) 상으로 보아서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정치상으로 보아서도 또한 극히 중요성을 가진 것이다. 그것은 해남도 일대가 극동 방면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 양국 권익의 중심부로 또 요충에 해당하는 까닭이다. 즉 환언하면 해남도의 경산과 뇌주 반도 남단의 서□(徐□) 사이에 낀 좁은 해협은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극동 권익을 옹호하는 교통의 요충이요, 또 프랑스의 광주만(廣州灣) 조차지 및 프랑스령(佛領) 인도차이나와의 중간 지대에 있고 게다가 영국령(英領) 홍콩과 프랑스령 하노이(河內)와의 교통 최단경의 요점이다. 그러므로 이것의 점령은 원장(援蔣)⁴¹⁾ 블록의 영국·프랑스 양국에 대하여서는 적지 않은 중대성을 띤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

3

해남도의 점거가 항일의 본원 중경(重慶)정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도 극히 막대한 바가 있으니 그것은 곧 상해의 봉쇄가 완성되는 남지에서의 해군 거점을 획득함으로써 대장원조(對蔣援助)의 무기 및 하노이 경유 군수품 수송의 감시와 금알(禁遏)⁴²⁾을 일층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임에 영·미·프 의존의 장 정권에게는 항일의 저력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항전력의 감쇄는 거론치 않아도 자명한 이치이다. 프랑스로 보면 저간에 원장에 분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보아서 광주만 조차지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의 연락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홍콩과 연락도 중단될 가능성이 충분하여서 극동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상 막대한 지장과 불편이 있게 된 것이다.

4

그러나 프랑스로서는 일·프랑스 간 제조약에 하등 저축이 되지 않는 이상 하등 고정(苦情)을 말할 여지가 없고 또 지나사변과 동양(同樣)으로 금번의 군사 행동은 자위권의 발동인 이상 다소의 구두 항의가 있다고 하여도 족히 패념할 바가 아니다. 영국으로서도 내심 극히 불쾌 불안 하겠지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상책임을 간파한 모양이어서 하등 적극의 동향을 표시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보아 오면 이번 해남도의 점거는 지나사변의 종결을 촉진케 하는 데에도 가장 의의가 깊은 바가 있는 것이라고 안 할 수가 없다.

〈출전 : 「海南島 占據의 意義」, 『朝鮮日報』, 1939년 2월 13일〉

41) 장개석 정권을 원조하는.
42) 금지. 억제(抑制)하지 못하게 함. 눌러 막음.

13) 전쟁과 평화

-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하라

1

인류 역사는 평화와 전쟁을 반복하는 기록이다. 원래 역사는 “도로메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수 천 년을 회고할 때에 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 참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다. 다만 인문(人文)이 진보되고 인지(人智)가 발달됨을 따라서 역사가 도로 먹는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선상(螺旋狀)의 전개를 시현(示現)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욱 참에 가까울까 한다. 좌우간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평화의 회전이라고 하면 큰 착오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 유럽(歐洲)의 험악한 풍운은 독일·이탈리아(獨伊)나 영국·프랑스를 물론하고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소위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0년에 또 보다 규모가 크고 보다 참화가 심할 대란의 전주곡이 아닌가. 실로 사람의 기억은 빈약한 것이다. 대전의 참화가 저렇게도 컸었는데 20년이 다 못 되어서 또 다시 보다 큰 것이 앞에 닥쳐온다는 것은 도저히 기억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2

그러면 인류는 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생존욕, 종교욕, 지배욕, 소유욕 등의 욕망이 인류의 본능으로 부여되어있는 까닭이다. 원시 야만 시대의 전쟁은 그 원인을 고구(考究)해 보면 생존 경쟁의 자연 법칙 하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 다음 인류가 조금 진보된 때의 전쟁은 신앙을 기초로 한 종교적 전쟁이었다. 또 그 다음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는 정치적 전쟁이었다. 그리고 현대의 전쟁은 생존보다도 신앙보다도 정치보다도 소유욕, 즉 다시 말하면 경제적 전쟁으로 전화하였다. 그래서 경제적 근거가 없는 공막(空漠)⁴³⁾ 정치적 또는 종교적 전쟁은 현대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병합을 단행한 것이나 독일이 체코 합병을 감행한 것이나 기타 모든 전쟁은 경제적 이유에 입각한 것을 발견할 것이요, 이 전쟁을 반대하고 국제 조약의 존중과 정의나 인도니 하는 나라도 이면에 함축된 것을 더듬어 보면 결국 아전인수로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그러나 전쟁은 아프고 쓰리다. 참화가 상반(相伴)되지 않은 전쟁이 없다. 생존을 위하여서든지 신앙을 위하여서든지 지배를 위하여서든지 소유를 위하여서든지 다 한결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는 사랑을 말하였고 석가는 자비를 말하였고 공구(孔丘)⁴⁴⁾는 인(仁)을 말하여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없이는 평화가 없는 것이 진리다. 지나사변도 동아에서의

43) 아득하게 넓은. 막연(漠然)하여 종잡을 수 없음.

44) 공자를 뜻함.

영원한 평화를 확립시키기 위한 전쟁이다. 전쟁을 싫어하고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구차하게 평화를 가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욕이요, 패망이다. 그러므로 전쟁으로서만 오직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있고 평화를 향락할 수가 있다. 발칸 문제로 인하여 □회의 일보 앞에 있는 유럽은 진정한 평화가 오려는 일종의 인류 역사적 전개의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다. 만일 전쟁이 이와 같이 불가피하다면 한번 경천동지(驚天動地)의 대충돌을 일으켜라.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전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출전 : 「전쟁과 평화 眞正한 平和를 爲한 戰爭을 하라」, 『朝鮮日報』, 1939년 4월 17일〉

14) 지나사변 2주년

1

7일! 오늘은 재작년 7월 7일 북경 교외 노구교(蘆溝橋) 경계(畔)에서 지나군의 불법 사격에 의하여 지나사변이 발단된 지 만2주년 기념일이다. 그간 황군(皇軍)은 육지로 바다로 하늘로 백전백승 혁혁한 전과를 거두어 찰합이(察哈爾), 수원(綏遠), 하북(河北), 산둥(山東), 산서(山西), 강소(江蘇), 안휘(安徽) 등 전성(全省)과 하남(河南)의 대부분, 절강(浙江), 강서(江西), 호북(湖北), 광둥(廣東), 복건(福建)의 각 일부분, 해남도(海南島) 전부를, 즉 제국 영토의 한 배 반이나 되는 광대한 지역을 점거하고 또 전 지나 해안선을 완전히 봉쇄하며 400여 주의 제공권(制空權)을 완전히 장악하여 비류(比類) 없는 무위(武威)를 중외에 선양하는 동시에 점거 지역 내에서는 응징전(應懲戰)으로부터 동아 신질서 건설전으로 옮기며 착착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능위(御稜威)⁴⁵⁾ 하에 충용무쌍한 황군이 신명을 홍모(鴻毛)보다도 더 가벼이 여기고 용전(勇戰) 분투(奮鬪)하는 소치로서 우리들은 이 기념일에 맞이하여 성전 중도에 희생된 전몰장병의 영령(英靈)에 삼가 경조(敬弔)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제일선 황군 장병의 고로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표한다.

2

금번 사변의 목적은 정부의 성명(聲明)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나로부터 항일 용공(容共)을 일삼는 장개석(蔣介石) 정권을 완전히 타도하고 지나로 하여금 영국, 프랑스, 미국(米)의 반(半)식민지적 기반(羈絆)⁴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동아 신질서를 건설함으로써 일지(日支) 양국민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결합을 완전히 하여 동양의 영구적 평화를 확립하려는 데 있는 바로 금번 성전의 참 목적은 파괴에 있지 않고 그 반대인 건설에 있다. 이리하여 점거 지역 내에서는 친일 신정권을 원조하여 치안 확보는 물론 도의선정(道義善政)을 펴서 적년(積年)의 압제 정치를 대신하게 하며 지하자원 개발을 시작하고

45) 천황의 위광을 뜻함.

46) 굴레를 씌운다는 뜻으로,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함을 이르는 말.

재정, 경제, 산업의 신경제 건설에 매진하여 이 지역 내의 양민 1억 7천만은 황군의 은위(恩威)를 구가(謳歌)하며 생업에 힘쓰고 있으나 완미한 장 정권은 완전히 지방 정권으로 화한 후에도 서남사성(西南四省)을 중심으로 항전을 부르짖고 또 유격전술을 이용하여 점령 지역 내의 치안 교란을 일삼고 있는 한편 제국 참 목적을 이해치 못하는 영·불·미·소도 원장 정책을 고지(固持)하여 신질서 건설 공작을 방해하고 있어 성전 목적을 완수함에는 보다 더 확호(確乎)한 태도와 공고한 결심으로 매진치 않으면 안 될 현세이다.

3

천진(天津), 상해, □□□ 각 조계(租界) 문제와 만몽(滿蒙)국경의 소몽군(蘇蒙軍)의 도전적 불법 행동 □□은 성전 전도(前途)에 더욱 다사다단(多事多端)할 것을 예상케 하는 바로 성전의 목적인 건설에의 길은 탄탄한 대로가 아니요, 산이 높이고 내가 있는 험로인 것을 사실로 알려주고 있다. 최후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결코 간과(干戈)를 거두지 않을 결심을 한 우리로서는 과거 2년 동안의 혁혁한 진과에 도취하여 현실의 전쟁을 경시함을 경계하는 동시에 국가 총력 발휘와 국민정신 양양에 협력하여 상하군민일치, 성업달성에 매진하여야 한다. 총후국민은 모름지기 이 기념일을 다 같이 과거를 검토하고 동아 신질서 건설에 대한 불퇴전, 부동의 결의를 새로이 함으로써 의의 깊게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출전 : 「支那事變 二周年」, 『朝鮮日報』, 1939년 7월 7일)

15) 지나중앙정부 설립 - 국민적 경축과 각오

1

동아 신질서 건설의 획시기적 단계는 도달하였다. 전 동아 민족이 백색 제국주의의 기반(羈絆)에서 해방되는 여명이 왔다. 오래전부터 선린우호, 공동방공(共同防共), 경제제휴의 고노에(近衛) 일원칙에 호응하여 친일방공의 기치(旗幟)를 고양하고 평화구국의 신념을 향하여 매진하여온 지나혁명의 원로 왕조명(汪兆銘) 씨가 수반이 되는 신국민정부가 오초(吳楚)의 고도(古都) 남경(南京)에서 금일의 가진(佳辰)을 복(卜)하여 성립하게 되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실로 구미 자본주의의 침략과 공산주의의 마수 및 용공(容共) 항일(抗日)의 정책 하에 도탄의 고통(苦)에서 신음(呻吟)하는 4억의 지나 민중에게 신광명, 신생명을 재래(齋來)하는 것으로 인류의 복□(福□)와 동아의 발전을 위하여 충심으로 경축할 바이다.

2

회고하건대 장(張) 정권이 용공항일로 써 그 기간(基幹) 정책을 삼아서 선린우의를 무시하는 폭거가 비일비재했다. 제국은 이에 응징(應懲)의 사(師)를 일으키어 벌써 만1년 9개월이 되었다. 저 동안 지나

대륙에서 황군 장사(將士)의 충용과 또 정부 당국의 고심 경영이 다대하였던 것은 오늘 이 경축의 시간에 명기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대아시아의 갱생부흥을 이상으로 하던 손문(孫文)의 유지를 받아서 용공항일의 미몽에서 번연(翻然) 각성하고 순정(純正) 국민당을 조직하여 화평구국의 목표를 향하여 만년을 배제하고 1년여 반 꾸준한 노력을 하여온 왕씨 및 그 일당의 희생도 이 순간에 절대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 중앙정부는 지금으로부터 그에게 부과된 화평건국의 사명에 충실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밖으로 제국 조야가 일치한 지원이 있고 안으로 지나의 추요(樞要) 지역을 중심으로 한 4억 민중의 화평 희구에 입각한 화동(和同)이 있다. 이것은 실로 천시와 지리와 인화를 겸전(兼全)한 기초 위에 확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 중앙정권이 날로 강대 발전하여서 한 지방정권으로 전락된 중경(重慶) 정권을 해소케 하고 그 본래의 사명과 소부(所賦)된 임무를 완수하는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이 점은 국민 일반이 절절히 신 중앙정부가 건전한 발전을 기원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3

그러나 일반국민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지나 신 국민정부의 성립이 신동아 질서 건설의 일 단계요, 사변 처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항전건국을 절규하면서 경제전, 사상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몽상하는 장 정권의 세력이 서북남지나에 잔존하여 있고 제3국의 동아 신질서 건설을 백안시하는 태도가 또한 경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다시 결의를 공고(鞏固)히 하여서 상하일체 협심전력으로 신 중앙정부의 발전을 원조하고 중경 세력의 복멸(覆滅) 및 제3국의 마찰을 배제하여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견인지구(堅引持久),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정신으로 흥아(興亞)의 위업을 완성할 각오와 결심을 계제에 굳게 하여야 할 것이다.

〈출전 : 「支那中央政府成立」, 『朝鮮日報』, 1940년 3월 30일〉

16) 정치체제의 강화

- 신정당 탄생□□□□

1

제국□□의 최대 과제가 지나사변 처리에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정치체제의 재조직 내지 강화 문제가 힘차게 고조되는 까닭이 있다. 사변 처리에 있어 강력한 정치가 필요하다 함은 내외정(內外政)이 일반이다. 그러나 국내 사정과 내정이 외정의 기간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 체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통제경제는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은 장구한 자유주의의 인습에 익숙하여 좀처럼 신체제에 따르려 하지 않는다. 사변 처리는 동아 신질서 건설이라는 일언에 그칠 것이요, 국민은 이 대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과거에 모든 인습을 버리고

전연 새로운 질서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신문화건설과 아울러 국민 재조직 문제는 실로 각하(刻下)의 급무이다. 이 문제가 급하면 급할수록 여기에는 강력적인 정치체제가 요구된다.

2

돌이켜 현하의 정치체제 강화의 이면 사정을 살펴보면 조직적인 정치 중추가 결여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현하 정치적 추진력이 군부(軍部)에 있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으나 이 추진력과 국민이 혼연일체(混然一體)가 되는 조직을 가지지 못한 데 유감이 있다. 이것은 군부와 국민 간의 간극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국민은 군부의 절대 신뢰 하에 살고 있다. 문제는 군부는 군부 자체의 성격상 직접으로는 정치운동에까지 관여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면 이 신질서건설을 생명으로 하는 신정치중추를 어디서 구할까. 여기에 정치체제 강화의 원동력이 될 신당운동의 의의가 발견된다. 현하 제국의 정치는 내외정 간(間) 강력적이어야 하겠고 이것이 강력화하려면 신정치중추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이것은 오로지 신당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의 신당 조직이 태동하고 있는 것은 이미 3, 4년 이래의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가 원숙하지 못하였던 까닭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사변 처리가 단서를 얻게 되고 유럽의 정세가 또한 급회전을 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 제국 국내에 정치체제 강화의 요구가 절실했던 것은, 하나는 시기의 원숙이요 하나는 내외 사정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할 것으로 이제 이것의 실현도 멀지 않은 장래에 있을 것으로 추찰된다.

〈출전 : 「政治體제의 強化」, 『朝鮮日報』, 1940년 6월 2일〉

17) 시국과 투자

- □시대에 대□하라

1

세계적으로는 구주대전(歐州大戰)의 형세를 역도(逆睹)키 어렵고 동아로서는 사변 처리, 장기 건설로 신질서 창생의 고뇌가 크다. 경제체제 확립, 경제도덕 작흥이 고창(高唱)되는 이때에 있어 무슨 사업을 할까, 무엇에 투자할까는 바로 일반이 궁금히 여기는 것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유경제에서 통제경제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군수(軍需) 줄부, 통제(統制) 줄부, 암취인(闇取引)⁴⁷⁾ 줄부가 건성드 못하고 개인이나 사회나 의외의 전시 이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요, 이 감몽(甘夢)에 취하여 세계정세나 시국의 동향을 정시(正視)치 못하고 평시보다도 오히려 추리주의(追利主義)에 빠져 있음은 개탄치 않을 수 없다. 독일의 절대적 승리로 영불의 패전이 역연(歷然)한 바 있거니와 그렇다고 단기로 해결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단기로 끝이 날지라도 지나사변으로 크게 소모한 제국으로서는 역시 난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구주대란으로 거리(巨利)를 거둔 미국이 동에 있고 영토를 확대한 소련이

47) 암거래.

서에 있어 그 중간에 끼인 입장은 괴로운 것이 있으니 이런 정세를 내다보고서 투자의 길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2

경성상의(京城商議)⁴⁸⁾에서 조사한 5월 중 전 조선 회사 이동(異動)을 보면 기업의 변모가 뚜렷이 나타났다. 11사(社), 불입자본금 1,897만 원이 전월보다 증가된 그 내용을 보면 군소상업회사는 계속 정리도태되고 시국산업인 공, 광업 부문이 대자본 경영으로 계속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로도 금후를 점칠 수 있거니와 구주대란으로 물자 부족은 더욱 더해가고 물동계획, 물가대책에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민수(民需)억제에는 거익(去益) 확대심화될 것이 명백하다. 이런 만큼 상업 경영은 투자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이니 팔 상품을 사들일 수 없고 사오더라도 물가 공정(公定), 소비 억제로 소위 상업의 묘미는 통제로 막히고 있다. 그러면 시국 색채가 많은 광공업은 어떠한가. 광업은 정부의 장려보조가 후하지만 소자본으로서는 국책사업에 상부(相副)치도 못하고 투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공업은 중점주의 강화로 원료를 얻기 어렵고 이윤 통제로 채산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규모 경영으로선 낙제다. 그러면 무엇이 공익도 되고 사익도 될 수 있는 사업일까가 문제된다.

3

기본 물자를 생산하는 사업인 농업과 수산업 등 제1차적 산업이 가장 시국 하에 적절타당한가 한다. 재산 보전의 의미로서도 설령 악성 인플레이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타격이 없을 것은 물론 일층 광채를 발하게 될 것이다. 농, 수산은 소규모, 소자본으로도 영위할 수 있고 물자의 자급자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물자의 부족을 완화시키고 이것이 악성 인플레이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세계적 자본부족시대, 세계적 대소모시대, 세계적 인플레이시대에 대처하여 안전 투자, 안전 경영의 길을 찾아서 선처해야 할 일이다. 자발적 희생에 의하여 국민생활의 절하가 모든 점으로 강요되고 시국의 중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까지의 생활태도는 고쳐질 것이다. 말로는 시국을 운위하나 행동은 경제전사(經濟戰士)로서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 적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의 통제에도 결함이 있어서거니와 개인주의 경제의 이념을 청산치 못한 때문이다.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사불란 통제를 행하고 있는 독일을 배워야 한다. 사익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며 자본이 적고 규모가 적더라도 각기 □분해서 경영할 수 있는 적합한 것으로서 농수산을 들 수 있다.

〈출전 : 「時局과 投資」, 『朝鮮日報』, 1940년 6월 5일〉

48) 경성상업회의소를 뜻함.

18) 사변 3주년

1

제국이 동아의 맹주로서 세기적 위업인 그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지나 대륙에 황군 장병을 파견하기 3개년, 금 7월로서 의의 깊은 그 만3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황군이 향하는 곳에 □□이 없이 황군은 문자 그대로 백전백승, 지나 400여 주(州)는 거의 전부가 황군의 장중(掌中)에 들게 되었는데 특히 최근 남지 작전에 의하여 영불의 원장(援張)⁴⁹⁾ 루트가 단절될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용공항일항전의 본거, 중경(重慶)의 궤멸(潰滅)이 또한 불원(不遠)하였음에 이제 장 정권은 빈사(瀕死)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혁혁한 전과가 본시부터 어능위의 소치(所致)이며 충용무비한 황군의 분전(奮戰)분투(奮鬪)의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는 바로서 이제 이 의의 깊은 사변 제3개년 기념일을 맞이함에 있어 성전 중에 희생된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삼가 경조(敬弔)의 의를 포함과 동시에 현재 제일선에서 용약(勇躍)하고 있는 장병의 고로(苦勞)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2

사변의 의의는 이미 천명된 바와 같이 동아 제민족의 상휴상조 즉 동아에 있어서의 신질서 건설이 그 구극(究極) 목적이거니와 사변 제3주년을 더욱 의의 깊게 맞이하는 이유는 이제 이 구극 목적을 완성시킬 최후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왕정위(汪精衛) 씨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권운동은 착착 진전, 지난 3월 30일 국민 정부가 남경에 환도하였다. 그리하여 제국에서는 그 성장을 전적으로 지지 원조하는 동시에 한편 특명전권대사를 파견하여 지난 5일부터 일중 양국의 신관계를 제도화할 조약 체결의 교섭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제국 측으로 보나 지나 측으로 보나 신동아건설의 제일보임이 틀림없는 일이다. 다음에 신정권으로 하여금 전 지나를 대표케 하는 지나 유일의 정권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장 정권의 붕괴가 최대 과제인데 그동안 황군장병의 분전 결과는 이미 중경 궤멸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제3국, 소위 원장루트 차단(遮斷)에 착수하고 있다. 이 모든 점으로 보아 동아 신질서 건설의 이상은 그 현실의 최후 완성기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데 이때에 있어 사변 3개년 기념일을 맞는 것은 더욱 의의 깊은 일이다.

3

그런데 신질서 건설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는 역시 장 정권의 존재이고 장 정권의 존재는 오로지 원장국가에 의존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신질서 건설의 최후 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국가의 격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때마침 유럽에는 전화가 확대되어 제국으로서는 지나 남방에 있어서 그 원장 수혈로의 차단을 단행하기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때를 넘기고는 다시 이런 기회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전에 아리타(有田) 외상(外相)의 방송으로도 선명(鮮明)된 바와 같이 제국정부로서도 여기

49) 장개석(蔣介石) 정부를 지원하는.

에 대한 공고한 결의를 하고 있다. 이리하여 사변 제3개년을 사변의 신단계 사변 처리의 완성기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 깊게 맞이하는 바이거니와 그와 동시에 이 기념일을 당하여 국민은 이 중대시기에 처하여 금후 더욱더 긴장 일억일심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분투 노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事變 三周年」, 『朝鮮日報』, 1940년 7월 7일〉

3. 『동아일보』의 주요 친일사설

1) 전시체제와 우리의 태도

1

북지사변이 일어난 이래 시국은 아연(俄然) 긴장의 도(度)를 더하고 조선 전토(全土)도 준전시체제 하에 놓이게 되어 자못 계심(戒心)을 요하게 하더니 갈수록 관외의 방울소리가 거리를 □레임이 갖게 됨을 따라 긴장에 더욱 긴장을 가하여 작금에는 아주 전시체제 하에 들고 말았다. 즉 북지의 풍운은 급할 듯 느릴 듯 예측을 허하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 전투에 들어가고 만 것이다. 지금 형편으로서는 시국은 매우 중대하여 1, 2일의 단기간으로서는 그 평□을 볼 것 같지가 않고 그 이상의 예측은 더욱 어려운 바 있다. 이러한 전시체제 하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어떠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일언이 있고자 한다.

2

우리는 전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적어도 현세대의 우리는 그러하다. 우리는 금일과 같이 우리의 생활과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전시를 일찍이 경험한 일이 없는 것이다. 역사를 뒤져보아도 상고는 머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대에 와서는 너무도 문약(文弱)에 흘러 자진하여 용무(用武)한 일이 없고 혹시 전쟁이 있었다 하나 거의 다 수동적이어서 전쟁 그것을 공포(恐怖)하는 것이 고작이고 이를 정시(正視)하고 이에 선처할 줄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이란 말만 들어도 망지소조(罔知所措)하여 동정(動靜)이 도를 넘고 거취가 궤를 벗어나는 수가 있게끔 되어가는 것이다.

3

그러므로 금일과 같은 전시를 당하면 부질없이 □□을 내세워서 유언비어를 지어내기가 쉽고 심지어는 한번 내던졌던 풍수설에 다시 귀의하여 도피의 생문방(生門方)을 찾기에 금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 거조(擧措)⁵⁰⁾를 불사하기도 하고 이런 틈을 타서 흑세무민의 사교(邪敎)를 안출하여 중우를 속여 사리를 꾀하는 도배(徒輩)도 도량(跳梁)⁵¹⁾하게 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전쟁에 대한 무경

힘과 공포로서 유래하는 인식 착오의 소치이다. 이미 인식이 착오되었는지라 그에 대한 정당한 각오를 가질 수가 없게 되고 정당한 각오를 가질 수가 없는지라 그 행동이 적극성을 잃고 준수(浚巡)⁵²⁾도일(度日)⁵³⁾로 일삼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업을 버리고 □□적, 절망적인 구령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어찌 우려할 일이 아니라.

4

금일의 이 중대한 시국은 우리의 각반 생활에 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한 그릇된 공포와 불안을 가질 것이 아니요, 그 □념과 진퇴를 곧 우리의 휴척(休戚)과 관련시킴으로써 그 중대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정당한 각오로써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현하의 전시체제 하에서 이 시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능의 한계가 있는 것이니 그 범위 내에서 시국의 중대성을 정식(正視)할 줄 알아야 하겠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각오도 행동도 규정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시국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언제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오하고 있는 것이 우선 이 중대 시국에 당면한 우리가 취할 태도인가 한다. 이러한 태도는 실로 시국에 대한 정당한 인식에서만 유래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 비상시의 비상시인 시국의 인식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오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출전 : 「戰時體制와 우리의 態度」 『東亞日報』, 1937년 7월 31일〉

2) 애국일

1

9월 6일로 애국일이 창정되었다. 연년세세 이 날을 기회로 하여 전 조선적으로 국민은 애국의 지정을 한층 더 배양하고 유로(流露)시킬지며 그럼으로써 국운의 장구(長久)를 기원하고 축복해야 할 것이다. 북지사변이 발발하자 조선 전역에는 충후의 성의가 타오르고 있으며 그 후 사태가 더욱 확대 악화함을 따라서 그 성의는 다시 일층 고양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애국일이 창정됨도 우연한 일이 아니겠다. 그 창정된 제1년의 애국일을 당하여 전 조선에서는 백만 명의 학생생도가 동원되었다. 부내(府內) 공사립 전문, 중등, 초등학교의 1,600 직원과 2만 학생생도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조선신궁(朝鮮神宮)에 참배하여 국위선양을 기원하였고 학교 내에서는 동방요배식, 국기계양식을 거행하였음에 기타 각 지방에서도 각기 동일한 절차를 행하였다. 실로 애국일에 맞는 성대하고 의의 있는 이날의 보냄이

50) 말이나 행동 따위를 하는 태도. 어떤 일을 꾸미거나 처리하기 위한 조치.

51) 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

52) 어떤 일을 단행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함. 또는 뒤로 멍척멍척 물러남.

53) 세월을 보냄.

다. 전 조선 학교의 이와 같은 동원은 학생생도에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도 애국심을 재음미할 기회를 주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2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기본 조건은 국민의 애국심일 것이다. 국민의 애국심이 언제나 발로되고 있으면 그 나라는 언제나 흥하고 성하는 것이며 일시라도 마비되고 있으면 그 때의 그 나라는 멸하고 망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애국의 지정이 있으면 기대하지 않아도 자연 결합되며 결합되는 데에 자연 국위를 선양할 힘이 생기는 것이니 그 나라가 흥하고 성함밖에 없는 것이오, 국민에게 애국의 지정이 없나 보라, 그 국민의 마음은 겁□해질 것이며 따라서 그 □는 산환(散渙)하여지고 말지니 그러고서 그 나라가 쇠하고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史實)이 우리에게 소소(昭昭)히 설명해주는 것이거니와 현재 세계 강국의 국민을 보라. 그 얼마나 국민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지순강렬함일런가. 동방 일각에 의연히 그 존재를 빛내고 있는 제국이 2천 5백여년 간 국토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국위를 선양시켜온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국민의 진충보국(盡忠報國)한 결과이며 오늘에 이르러 능히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념도 또한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3

때는 바야흐로 중대 시국이다. 제국의 동아 안정 세력적 책무는 동아의 평화를 위하여 지나가 반성을 하고 순응할 때까지 철저히 응징하지 않을 수 없는 결의를 제국으로 하여금 공고히 하게 하였다. 이에 남북전선에서 저들은 패퇴□□되고 있다. 이 때에 있어서 황군의 노고(勞)도 노고려니와 총후의 성의도 여기서 자세히 매거(枚擧)할 것 없이 열렬하였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직업을 구별할 것 없이 전 조선적으로 타오르는 애국의 열성은 이 국가 중대의 가을에 당연한 발로라 하겠지마는 그래도 보고 듣는 자로 하여금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바 있다. 그러나 시국이 갈수록 중대화하고 있음을 재인식할 때에 열성에 열성을 가하여 이 난국의 하루라도 빠른 극복을 염원하지 않으면 안 될지니 이에 애국일을 맞아 전 조선적으로 팽배하는 애국의 지정을 축복하는 동시에 다시금 시국의 재경계의 기회를 삼아 다시 일층 격양(激昂)발분(發奮)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愛國日」, 『東亞日報』, 1937년 9월 7일〉

3) 국민정신총동원의 강조

1

지나사변(支那事變)⁵⁴⁾은 드디어 전면전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과거 수차에 걸쳐 제국이 경험한

사변과는 전연 그 □□를 달리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난 임시의회에서 육상(陸相)이 말한 바와 같다. 그 뿐만 아니라 『제국을 위요하고 있는 현하의 국제 정세는 더욱 혼돈』하여질 뿐이 라는 것도 숨길 수 없는 목전 사실로서 국민이 다 같이 양지하는 바이다. 이때에 있어서 국민이 『시국의 추향을 명찰하고 견인지구 생□보국의 신념을 견지』하여 『금후에 올 어떠한 간난(艱難)이라도 능히 감내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관철할 만한 결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고노에(近衛) 수상과 미나미(南) 총독이 거국일치의 □효를 내고자 발포한 고□와 유고(諭告)에 명시한 바와 같다. 그것은 근대전이 물질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로 하면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그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니 여기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강조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다시 말할 것도 없이 현 시국에 있어서 국민정신총동원의 대책은 국민적 체력을 완성하는데 있을 것이다. 국가의 간난은 거□의 □□와 장사의 충용(忠勇) 의열(義烈)로서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력협심하여 전투의 한 단위로 움직임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그 나라의 성립과 진□의 역사를 보면 명□해주는 바이다. 국가는 문화적 사명을 가진 협동체인 동시에 그 국민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유물적 존재가 아니라 민족국가를 통하여 공헌하려는 정신적 결합체이거늘 이 관념 하에서 국가 행진이 시작하였을 때에 국가의 목적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여 총후의 후원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자에 고노에(近衛) 수상이 가도에 나타나 공중의 면전에서 시(試)한 연설의 결론이거니와 신분의 차와 직업의 구별을 물을 것 없이 다 같이 동일한 이해와 의식으로 동원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층 유효한 동원이 필요하다 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과연 그 철저함이 □□든가.

3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이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어 전개되□□ 정부에서는 9월 13일에 지나사변에 처한 국민정신총동원 계획 실시 요강을 발표하여 실시 방법□ 지시하고 실천 사항을 시사하였□ 그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심혈을 경주(傾注)하여 지도하여 왔다. 그러나 정신적 총동원의 고무격려에 대하여 아직도 철저히 못한 바 없지 아니하여 민중이 방황하고 있는 감도 없지 않은지라 정부는 이 사태를 경계함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사변의 진전은 다시 일층 국민의 이해와 의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를 느껴 10월 13일로부터 19일까지의 한 주 간은 국민정신총동원 강조주간으로 작정하고 이 한 주간 내각 및 각 성(省), 도부현시정촌(道府縣市町村), 각 회사, 은행, 공장, 상점과 각종 언론 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를 기관이 총동원하여, 이에 조선총독부에서도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서 총동원하여 견인지구(堅引持久)의 정신함양, 총후 후원의 강화 지속, 비상시 경제정책의 협력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다시금 철저히 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이 기회에 있어서 정부의 고무격려를 효과 있

54) 1937년 중일전쟁을 뜻함.

게 할 수 있을 터이니 이 운동은 시간(時艱)⁵⁵⁾의 극복에 적지 않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출전 : 「國民精神總動員의 強調」, 『東亞日報』, 1937년 10월 13일〉

4) 국민정신작흥

1

국민이 건전건실한 정신을 함양발굴하고 진지 명량한 생활을 기도 실현함으로써만 그 국민을 기초로 한 국가는 진보발전하는 것이다. 국가가 간난(艱難)한 경우에 처하여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렇거늘 때마침 지나사변이 발발하자 황군은 남북 전선에서 지나 응징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국민은 총후에서 국운□□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평소에 함양해 오던 건전건실한 국민 정신의 발휘이며 평소에 기도해오던 진지명량한 국민 생활의 실현이다. 그러나 이로써 어찌 만족할 바리오. 시국은 거익(去益) 간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라 국민은 더욱 정신을 건전케 하고 생활을 진지케 해야 국가 이상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당국에서는 금 7일로부터 13일까지의 한 주를 국민정신작흥 기간으로 설정하고 같은 기간 중 국민에게 건전한 정신과 진지한 생활을 강조하여 써 이 비상시국에 있어서의 국민총동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이 주간이 경과한 후라 할지라도 그 취지를 일상생활에 침투시키려 하는 것은 의의 있는 바라 하겠다.

2

이 기간을 설정 실시함으로써 당국이 지도하고자 하는 실현 방법은 주간 각 일의 명목으로 정해있음과 같이 신사참배, 국제명징(제1일), 근로존중, 노력□□(제2일), 생활개선, 반성계심(제3일), 조서환발(詔書煥發)⁵⁶⁾기념, 극기인고, 시국인식(제4일), 공덕실행, 공동 봉사(제5일), 경로애유, 건강증진(제6일), 보은감사, 국민친화 등인데 이에 수반할 당일의 행사로서 중요한 것을 들면, 제1일에는 신사(神社), 신사(神祠)의 참배, 황거요배를 행하고 제2일에는 생업, 사무, 학업, 가사 등에 있어서 자기 의무를 존중하는 정신을 발양시키고 제3일에는 생활양식의 개선합리화, 소비절약, 가정□□, 시간 존중 등의 미풍양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물심양방면의 생활 내용을 반성케 하여 생활의 진보 향상을 꾀하게 하고 제4일에는 조서환발을 기념하는 동시에 극기인고하여 모든 결핍에 감내할 □□□□, 견인지구(堅引持久)의 정신을 진기(振起)하고 □□□□한 사조를 일소시키며 또한 시국에 인식을 새롭게 하여 그 추이에 순응 선처하도록 노력케 하고 제5일에는 동양 도의(道義)의 우월한 까닭을 고조할 뿐 아니라 공중도덕의 존

55) 그때의 어려움. 또는 시국의 어려움.

56) 조서(詔書) :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환발(煥發) : 임금의 명령을 세상에 널리 알리던 일.

중 여행(勵行), 재해방지, 교시(交時) 훈련, 준법관념의 함양에 노력시키고 제6일에 경로애유의 시설, 표창을 행하고 제7일에는 황군, 조선(祖先)의 은혜에 감사하고 상하일치, 인보상조(隣保相助)의 관념을 양양시키자는 것이다. 어느 하나가 국민정신을 건전케 하고 국민 생활을 진지케 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아니리오. 국민은 모름지기 당국의 지도에 순응하여 각각 그 일일을 의의 있게 보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그런데 이 국민정신작흥 주간의 제항목은 하루하루의 실행으로써 그 목적하였던 효과를 완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 실효를 일상의 염□와 일상의 생활에 침투 구현시키어 영구히 국력의 충실에 기여한 바 있고 국운신장의 추진력이 되고 국가 생활을 진지 명랑케 하는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변 이래 당국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획한 바 있었으며 실행시킨 바 없지 않았으나 혹은 일시의 열은 냉각하기 쉬웠고 따라서 혹은 시국의 인식과 대응에 방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있어서 혹은 반성하고 혹은 각오를 새롭게 하여 써 국민정신총동원의 실효를 발휘할 것은 물론이요, 1일의 실행은 일상생활에 길이 연장하여 어떠한 간난에 당하여서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과 생활을 맞는 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전 : 「國民精神作興」, 『東亞日報』, 1937년 11월 7일〉

5) 경제통제 강화의 필연성

1

최근 경제 상태는 낙관을 불허하는 여러 점들이 발견 된다. 사변 이래 금일까지에 수립된 비상시 경제대책은 현실의 사태에 적응함에 충분치 못한 점이 있어 보여 표면적으로는 경기□양(景氣□揚)이 있음직한 형태가 구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면에 있어서 일종의 고뇌상이 보인다. 먼저 자역(資易) 통제에서 그 일례를 볼 수 있다. 수입을 억제하는 액수는 군수품 수입 필요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하건마는 그러면서도 그것은 수출을 저해(阻害)하는 세력을 다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 방면에 있어서도 일시적 팽박은 구제되었다 할지라도 기□시장이 언제나 부활할지 아직 막연하다. 금년도 말까지에는 3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므로 그것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폐의 증발은 상당액에 달할 것이니 그 결과 저금리는 유지되고 공채 소화력은 증대할 것으로되 타방에 있어서 국제수지상에는 따라서 통화의 건전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지 일고(一考)를 재촉하는 점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군수품 이외의 국내수요□상품계에도 군축이 보이며 국민생활의 절하가 더욱 심심해질 것으로 상상된다. 그러면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증세(增稅)가 □□되지만 이 또한 정부에서는 그 때문에 평화적 산업이 위축될까봐 그러하고 국민의 고충을 살피어 주저하

고 있는지라,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금후에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은 불가피의 사실로 되어있다.

2

시각을 돌이켜 볼지라도 일중 관계의 전도 및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의 복잡성은 더욱 최고 도적 전시경제 체제의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사변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력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선결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통제이면서도 전쟁과는 하등의 직접 관계도 없는 면화, 양모, 목재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던 지난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을 것이거늘, 하물며 지나사변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가 복잡의 도를 가하고 있는 이 때에 있어서랴. 또는 전투가 가령 급속한 종식을 본다 할지라도 치안 유지 때문의 군사비라는 것보다 경제개발 때문의 부담이 더욱 중대성을 띠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홀저히 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결국 그것은 일방에 있어서 국력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목전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 통제의 극도의 강화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주 개발에 있어서만 할지라도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는 만족치 못하였거늘 하물며 장기를 예측시키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사변 일과(一過) 후의 중대한 수습을 위하여 중대한 난관에 봉착한 일본 경제에 있어서 □□의 대변혁이 필연의 운명으로 되지 않을까 보나.

3

이러한 정세에 있어서 전시(戰時)大本營(大本營)⁵⁷⁾ 설치론이 구체화하여 머지않아 실현될 모양이다. 재계에서는 「경하」의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그 정치적 경제적 색채가 띠어 있지 않은 점을 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시 위□의 염(念)에서 오던 압력이 해소된 감을 주고 있다. 물론大本營의 기구에는 □료 외에 병참부 □□ 통신부를 설치하였지마는 그것은 용병작전의 필요상 행동이므로 거기에는 하등의 특수 이데올로기도 없을 것이며 통제하기 위한 통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설명함과 같이 대세로서 경제 정책이 통제 강화에로 일층 진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는 것이니 일시에 재계를 우려케 하였던大本營설치의 정치 경제적 색채가 해소되었다 할지라도大本營 이외의 행정 관청에 의하여 실행될 것은 필연의 형태이다. 이 형세에 순응하지 않고는 전시경제의 수행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오는 운명이라 할진대 재계는 모름지기 전시 경제의 구축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종래와 같은 관료적 통제의 폐해는 극력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이며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 진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출전 : 「經濟統制強化의 必然性」, 『東亞日報』, 1937년 11월 21일〉

57) 태평양 전쟁 때에,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군대를 통솔하던 최고 통수부(統帥部). 1944년 7월에 최고 전쟁 지도 회의로 이름을 고쳤다.

6) 남경함락의 의의

1

지나사변이 발발한 이래 우금 5개월 동안에 북지 및 중지의 전선을 통하여 일반 장병의 충용(忠勇)무비(無比)와 신병기의 전술적 효과는 절대적 전과를 거두어 왔다. 북중 방면에서는 이미 □수일□(□袖—□)의 산둥성(山東省)을 남기고 전국(戰局)은 일단락을 짓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남중 방면에서는 국민정부의 수도인 남경(南京) 함락이 경각시간(頃刻之間)으로 되어 있다. 대상해(大上海)의 포위가 완성된 이래 황군의 신속 과감한 진격으로 말미암아 장강 제1관문으로서 그 요해(要害)를 자랑하던 강음(江陰)이 이미 함락되었고 이어서 □양(□陽), 금□(金□), 단양(丹陽)이 아침에 한 성, 저녁에 또 한 성이라는 격으로 점령되었으며 이제는 표수(漂水), 구용(句容), 진강(鎭江)의 산지를 이용하여 견진(堅陳)을 □□하고 30만의 대군을 배치함으로써 남경 방어의 최후선으로 삼으려는 이 방수진마저 표수, 구용의 함락으로 붕괴되었으니 남경 함락도 시간 문제로 되어 있는지라 실로 놀라운 전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경은 국민정부의 수도이니 만큼 그 함락은 금후 전국에 대한 지대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 보도를 접할 날이 없지 않음을 일반적으로 하여금 한가지로 기쁘게 할 것이다.

2

이 기쁜 소식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고대하며 전 조선적으로 대축승(大祝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보정(保定), 석가장(石家莊), 태원(太原)이 함락되었을 때에 또한 상해가 함락되었을 때에도 전승봉고제(戰勝奉告祭), 축□행렬 등이 거행되었지만은 머지않아 전할 남경 함락의 소식이야 말로 과거의 어느 곳의 함락 소식보다도 기쁨을 줄 것은 물론이다. 그것은 남경 함락의 금번 전국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이상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승의 정도도 자연 지난 번의 어느 축승보다도 성대할 것을 예상시킨다. 그러므로 총독부 당국에서도 남경 함락의 축승에 있어서는 전승봉고제를 비롯하여 축등행렬, □행□화화(□行□火花)는 물론이거니와 야연(野宴)까지도 간소한 정도에서는 허용할 방침이어서 지난 4일부로 각 도에 통첩하였다니 그러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시국의 긴장이 단시일에 해소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 기쁨도 긴장한 중의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니 어디까지든지 이 점을 망각하지 않도록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만은 알아야 할 것이다.

3

물론 남경 함락이 국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장기 항전의 계획을 축소시킬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배일항일을 가지고 유일의 정책을 삼아온 국민정부인지라 그 국민정부가 급각도로 전환하여 제국의 파병 목적에 부합하도록 까지에 반성할 날이 남경함락과 동시가 되리라고는 기필(期必)할 수 없다. 아니 현재 국민정부는 무한, 장사(長沙), 중경, □한 철도, 광둥, 홍콩 등을 연결하는 군사, 금융, 경제, 교통상의 장기 저항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국민정부가 곧 항일 정책을

포기하리라고 속단하고 긴장을 해이하며 따라서 기쁨에 도취하기만 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군사행동의 성과도 성과이거나와 국제 관계는 더욱 복잡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때이라 설령 군사상의 목적을 달한 후라 할지라도 금후의 시국 수습책은 다시 일층의 관심을 꾀할 것이니 모름지기 이 기쁨을 기뻐하는 동시에 각오를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경 함락의 축승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 일언을 다시 말하는 것이다.

〈출전 : 「南京陷落의 意義」, 『東亞日報』, 1937년 12월 7일〉

7) 지원병제의 설립

1

오랫동안 문제되어 있던 조선 현역 지원병 제도가 설립되리라는 것은 지난 15일에 육군성에서 발표한 바와 같다. 만주사변 이래 특히 지나사변 이래 현저히 변화한 객관적 정세에 □□하기 위하여 조선에 지원병제도를 설립코자 미나미(南) 총독이 결의를 굳게 한 바 있었다는 것은 그 최초의 도동(渡東) 시에⁵⁸⁾ 각 각료 참□석상에서 지원병제도를 연구 중이라고 표명하였던 것으로 그 일단을 규지(窺知)하였던 것이거니와 이래 미나미 총독은 한편으로 총독부내 관계 당국자에게 그 뜻을 전하여 □□에 착수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조선군 당국과 협조를 거듭할 뿐만 아니라 육군성과 척무성에도 구체적으로 타협절충하여왔던 것이어서 그 최후적 결정을 보자 곧 도동하여 15일에 궁중(宮中)에 □내, □곡 상□한 결과 드디어 육군성에서는 15일 그 대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국방상 신색채요, 통치상 신기원인 조선인 현역지원병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니 어찌 미나미 총독의 영단이 아니며 조선군 당국의 노고가 적다 하리오.

2

지원병제도에 관한 실시 세목은 그 구체적 결정을 본 후에 칙령으로 공포될 것이지만 이미 발표된 대□에 의하면 조선인은 종래 병역의 의무를 향수(享受)하기커녕 현역 지원의 길도 얻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 칙령의 소정에 의하여서 한정된 조건에 합치함으로써 매년 육군부대에 편입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은 금년 4월부터 (1) 만17세 이상으로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 (2) 재□년한 2개년, (3) 채용병적은 보병, (4) 채용 인원은 400명, (5) 훈련기간 6개월이라는 조건 밑에서 조선 내 사단에 분산편입케 되어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는 중대한 의무를 분담케 되었다. 이와 같이 한정된 조건에서만 특히 채용 인원내에 있어서 400명으로 채용 병과에 있어서 보병에 고정함으로써만 조선인의 병역의 무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처럼 설립을 보게 된 저 제도에 대하여 우리의 적지 않은 부족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이 아니로되 이는 역대 총독과 종래의 조선군 당국이 상상치도 못하던 중대사

58) 동경에 갔을 때.

를 결행하는 초창기인 만큼 일정 기간의 시험기가 있을 것은 부득이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우리는 이번에는 이 획시기적 제도 설립이라는 영단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제도를 더욱 확충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장래에 일반 징병제에까지 미치도록 진행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

3

원래 문명된 국민에게 세 가지 의무 즉 조세, 병역, 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노노(嗚嗚)⁵⁹⁾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정당국자는 이 세 가지 의무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이 이 의무를 완전히 수행함으로써 줄 바의 권리를 줄 것이요, 그리하여 완전한 국민이 되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며 또한 국민으로 말할지라도 그 국민적 □격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그 의무여행을 할 바이다. 국민이 징병제를 실시하라, 의무교육을 확립하라, 조세의 부담을 공평히 확립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요컨대 자기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려는 의향에서 일 것이다. 그렇거늘 역대 총독도 후자의 2항목에 대해서는 유의한 바 있었지만 전자의 1항목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한 바 있었는데 미나미 총독은 부임 이래 다시 일층 후자의 2항목에 대하여 특히 교학쇄신에 열의를 경주(傾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기초가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하여 초등교육 10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단축하는 치적을 보였는데 이제 다시 징병제의 □□로서 지원병제도를 설립하였으니 그 획시기적 정책을 보고서 우리는 그 영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거니와 끝으로 일언하고자 하는 바는 이외 당연히 향수하여야 할 모든 제도 시설에 대해서도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이 많을 뿐더러 설령 기왕의 시책이 있는 것도 자못 불비한 점이 없지 않는 터이니 이 방면에 더욱더 연구를 거듭하고 영단이 있기를 우리는 희망한다는 것이다.

〈출전 : 「志願兵制의 設立」, 『東亞日報』, 1938년 1월 19일〉

8) 양 제도의 실시 축하

1

4월 3일 진무대황제일(神武大皇祭日)을 복하여 조선통치상 획시기적 제도인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개정조선교육령의 시행 축하를 행하게 되었다. 이 의의 깊은 날을 당국은 거국일치 강조일로 정하고 그에 적합한 모든 행사를 실행하게 되었다. 즉 이날이 진무천황제일임을 기하여 어성조(御聖詔)에 의한 팔굉일우의 대정신의 해설 보급을 도모하기에 적당한 기념행사를 행하는 동시에 이날이 개정교육령 및 지원병제도의 실시일임을 당하여 조선 신궁에서 그 봉고제(奉告制)를 거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전 조선적으로 기(旗)행렬, 혹은 축연(祝宴)도 있어 이 날 하루를 성대히 기념할 절차이다. 그러므로 민중으

59) 구차한 말로 자꾸 지껄임.

로 하여금 거국일치의 정신을 체득시키는 동시에 양 제도의 진수(眞髓)를 정해(正解)시키려는 것이다.

2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조선 민중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일보이다. 종래에는 조선 민중에 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주저하여 왔다. 그리하였으나 지나사변을 계기로 조선 민중의 총후 활동은 열성을 다한 바 있어 이 점에 있어서 당국의 조선 민중에 대한 이해를 깊고 새롭게 한 바도 있으며, 또한 제국의 대륙정책의 확충은 더욱 조선의 중요성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에 따라서 조선 민중도 나서 중대 임무를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에 있어서 미나미(南) 총독의 영단은 역대 총독이 상상도 하지 않던 병역의 의무를 조선 민중에게 부담시키는 제일보를 답출(踏出)케 된 것이다. 이에 조선민중은 이 제도가 실시되는 제1일부터 당국의 지도에 순응하여서 그 운용에 협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또한 교육령의 개정은 미나미 총독의 5대정강 중의 국체명징(國體明徵), 교학 쇄신의 구체화로서 조선 교육사상 획시기적인 것이다. 조선의 실정은 과거와는 판이할 뿐더러 시세의 진전은 조선민중으로 하여금 당국이 지도하는 인적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교학을 구태에서 탈각시켜 신정세에 적합하도록 함양 보육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졌다. 이에 국체명징,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을 3대 안목으로 하여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드디어 실시를 보게 된 것이니 이 또한 이날로 그 개정 취지를 다시금 충분히 인식하는 계기를 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금일을 복(卜)하여 전 조선적으로 성대한 축하행사가 전개됨은 의의 있는 것이다.

〈출전 : 「兩制度的 實施祝賀」, 『東亞日報』, 1938년 4월 3일〉

9) 총후보국의 강조

1

지나사변 이래 제일선의 병(兵)은 신명(身命)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왔으며 총후의 국민은 만난(萬難)을 배척하고 성실히 후원하여 왔다. 이와 같이 공고(鞏固)한 거국일치의 체제 하에서 금일의 승리는 있게 된 것이니 전단(戰端)이 개시하여 1년이 채 못되는 오늘에 있어서 북에선 북지 5성을, 남에선 강남 일대를 이미 약(畧)하였으며 이제 다시 서에선 산서성(山西省) 경계를 □하여 구황하(舊黃河)의 선에 진출하고 동에선 서주(徐州)를 협(挾)하여 남북진공군(南北進功軍)이 접속하러 하고 있다. 동시에 몽강(蒙疆), 북지, 중지에 걸친 광대한 점거지역에서는 몽강자치정부(蒙疆自治政府), 북지임시정부, 중

자유신정부(中支維新政府), 삼정권이 탄생하여 제국의 비호하에서 □□로 육성되고 있다. 이리하여 동아 평화를 확립하려는 성전은 그 목표를 향하여 착착 그 공과를 거두고 있나니 어찌 장병의 존중한 희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총후국민의 열렬한 후원이 빛난다 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2

그러나 전쟁은 이로써 종지(終止)된 것이 아니다. 장(莊) 정권이 완전히 궤멸되기까지는 간과(干戈)를 돌리지 않을 것은 제국정부의 부동의 태도임에 장 정권이 아직도 상당한 병력을 가지고 퇴패에 퇴패를 거듭하면서도 소위 후방교란의 게릴라 전법으로서 장기지구전(長期持久戰)의 자태를 단념하지 않은 이상 전쟁의 종지는 먼 장래에 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점거 지역 내에는 신정권이 출현하여 황군의 협력 하에서 치안에 노력하겠지마는 워낙 점거 지역이 광대한지라 패잔병의 소탕이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님에 있어서라. 더욱이 장 정권의 항전에 있어서는 미묘 복잡히 움직이고 있는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변 이래 지나의 용공(容共)친소(親蘇)정책의 강화로 말미암아 소련(蘇聯)의 노골적인 원지(援支) 행동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장 정권의 궤멸로써 지나에 있어서의 자기 세력이 근본적으로 □□될 것을 두려워하여 가장 열심히 장을 원조하고 있는 영국이 있다.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정세에 구애되어 기분(幾分) 주저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지마는 그래도 홍콩을 중심으로 군수품의 매각은 왕성하며 이든 외상의 퇴각으로 영국의 외교방침은 실리주의적인 태도로 전환하였다고 하지만 최근의 구주 정세의 변화는 영국의 극동에 대한 태도가 적극화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으리오. 이와 같이 장 정권의 배후에 이 모든 국제세력이 움직이고 있는지라 동아 평화의 확립이라는 성업은 지나 일국만을 상대로 하여서도 난관이 없지 않거늘 기타의 나라도 동시에 상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터이니 여기에 금번 사변이 장기화하는 이유가 자재(自在)하다.

3

이에 시국은 항구적으로 중대화하였는지라 국민은 시국이 이렇게 된 원인을 깊이 인식하고서 다시 일층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그런데 국민의 긴장된 심리는 다소 이완해진 감이 없지 않다. 그것은 황국이 이른 곳에 적이 없다는 세(勢)로 전필승(戰必勝)하니 사변은 벌써 절정에 달하였다고 봄으로써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사변은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제2단계에 들어 있는지라 사변의 장래를 너무 낙관하고 요즘과 같은 이완 상태를 □□한다는 것은 여간 위험한 바가 아니매 어찌 국민의 반성과 심려가 없어서 되리오. 사변의 장기화는 국민에게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은 물론이어서 특히 재정 경제, 국민 생활의 방면에 있어 전시 체제의 항구화에 관련하여 물가 등귀, 악성 인플레이션 발생 등의 우려도 또한 없지 않는 것이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협력 하에서 절약, 저축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당국이 천장절(天長節)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총후보국 강화 주간으로 정하고 국민에게 시국을 재인식시키고 써 다시 일층의 총후 긴장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국민에게 향하여 절약, 저축을 강조함은 의의가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당국의 지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출전 : 「鈇後報國의 強調」, 『東亞日報』, 1938년 4월 26일〉

10) 사변 1주년

1

금 7일은 지나사변이 발발하여 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회고컨대 사변의 발단은 작년 7월 7일 야반에 노구교반(蘆溝橋畔)에서의 29구의 항일□□에 있었다. 그 때에 제국정부는 그 불법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함으로 써 지나의 반성을 요구하면서도 어디까지 사건불확대방침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국민정부는 조금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공산당과 결탁(結托)하여 어디까지 무력 저항을 책하였기 때문에 제국정부는 드디어 불확대방침을 포기하고 철저히 폭지(暴支) 응징의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한번 근본방침이 서게 되자 황군의 신속 과감한 군사행동은 실로 세계전사상에 그 전례가 드물 만큼 위대한 전과를 거두었다. 보라, 지나의 문화상, 경제상 중□지는 거의 전부가 황군의 점령권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범위는 전 제국 판도 이상에 해당하는 광대한 것이 아닌가? 작년 12월 13일에 수도 남경(南京)이 함락되었다는 거대한 사실은 장(蔣) 정권이 반성할 최후의 기회였건마는 이 기회를 잃은 장 정권에 대한 제국정부의 방침은 장 정권 철저궤멸로 비약하여 이제 그 □적을 추격하고 있는 중이니 한구(漢口) 공략은 그 표현이다. 이와 같은 전과를 단시일에 거두었을 때에 황군의 노고와 희생이 어찌 적었으리오. 사변 1주년을 당함에 있어서 다시금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저 위대한 전과와 병행하여 북지, 몽강(蒙疆), 중지에 걸친 광대한 점거 지역에는 세 신정부가 출현하여 용공배일의 국민당과 완전히 메별(袞別)⁶⁰⁾하고 일본과의 공생공영의 기치 하에서 건설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이리하여 점거 지역 내에는 도시나 농촌이나 점차, 이 신정부의 산하에서 부흥에 매진하고 있는 명량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 반면에 있어서 장 정권은 그 호□하던 초토항일도 하등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패전에 패전을 거듭한 나머지 이제는 그 제2근거지인 한구까지도 방기하고 다시 오지로 정부 제기관을 분산시키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봉착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간문제로 되어 있는 황군의 한구 공략의 완성을 기회로 장 정권은 군대의 대반(大半)을 상실한 데다가 겨우 명맥을 보전해오던 항일재정경제력도 위태롭게 될 뿐만 아니라 국공⁶¹⁾ 양당의 내부알력은 표면화할 것이니 □□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받는 타격은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일 것이다. 따라서

60) 소매를 잡고 헤어진다는 뜻으로, 섭섭히 헤어짐을 이르는 말.

61) 중국 국민정부와 공산당을 뜻함.

그 몰락의 색채는 극히 선명하게 될 것이다. 혹은 제3국의 원조가 끊기지 않는 한 장 정권이 곧 항전을 중지하리라고 속단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게릴라 전법으로 황군을 괴롭게 하는 정도는 혹 모르되 대규모 항전은 벌써 불가능한 계단에 도착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장기항전에 대한 장기응징은 금후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것 같다.

3

그러나 제국의 장 정권에 향하여 간과를 움직이게 된 근본 목적은 극동의 질서와 평화를 수립함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양 문화를 수호하고 지나의 산업경제를 개발하여 일중 양국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이념하는 바이다. 이에 금후의 대지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제는 장기 항전에 대한 장기응징이라는 반사적 문제보다도 육상(陸相)이 말한 바와 같이 장기 건설에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장 정권의 소위 초토항전의 결과로 그 패퇴의 적(跡)은 크게 황폐하여 그 건설 사업을 지극히 곤란케 하는 것이니 황하 결□의 한 사실만 상상하여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방면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나니 그렇다면 장기 건설에 있어서 국민적 인고는 더욱 요구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국민정신총동원과 아울러 모든 경제 국책을 발동시키고 있음도 이상의 요구에 의한 것이니 국민이 국책에 순응하여 장기 건설의 난사업(難事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事變一周年」, 『東亞日報』, 1938년 7월 7일〉

1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그 창립총회에 즈음하여

1

장기전 체제하에 국민으로서 철저와 동원을 목표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이 백여 단체와 유력자 제씨(諸氏)의 합동 궤기(蹶起)로 그 성립에 향하여 모든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이제 동 연맹은 사변(事變) 1주년의 기념일인 7월 7일을 기하여 성대한 발회식을 단행하는 한걸음 앞서서 금 7월 1일 오전 10시에 부민관(府民館)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리하여 동 연맹은 예정과 같이 7월 7일에 정식의 성립을 보려니와 동 연맹은 다시 각 지방에 지방연맹을 결성시키리라고 하니 이에 조선 내의 모든 단체와 전 민중은 일체가 되어 이 연맹의 지도하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선상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제1착으로 경성연맹은 조선연맹과 동시에 창립되었다.

2

생각하건데 지나사변이 발발하여서부터 거의 1년, 이 동안에 황군의 용감한 분전(奮戰)과 그 때문에

받은 존귀한 희생의 결과는 금일의 승리를 초래하여 최근에 와서는 수도를 잃은 국민정부의 제2근거지 한구(漢口)를 삼킬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거니와 장(蔣)정권의 소멸을 곤란하게 하는 이면의 사실이 복재(伏在)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영국·프랑스·소련 등의 제3국이 음(陰)으로 양(陽)으로 장(蔣)정권 지원에 암약(暗躍)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사태 해결의 전도(前途)에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소련의 착오적인 원지(援支)적 행동과 태도가 금후의 사태를 각일각(刻一刻)으로 긴박화시키고 있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불의 제국주의도 소련에 못지않을 만큼 반일(反日)적 행동과 태도를 취하지 않던가? 이와 같은 난관을 물리치고 극동의 영구평화를 확립하려는 위업을 달성하려 할진대 장기에 걸친 국가총력전에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지니 여기에 시국은 항구성(恒久性)을 띄우게 되고 중대화하게 된 것이다.

3

그러므로 국민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다시 한층 각오를 깊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만일 국민이 그 경단(輕斷)⁶²⁾에 의한 낙관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조금이라도 이완(弛緩)하기라도 해 보라. 이 아니 위험스러운 일이라. 확호불발(確乎不拔)한 정신을 토대로 총후의 긴장을 항구적으로 지속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니 국민총동원운동의 의의가 여기에 자재(自在)한 것이다. 이에 거대한 조직체를 통하여 장기적인 만큼 이완(弛緩)하기 쉬운 정신을 재단(裁斷)하여 긴장을 실천시킴으로써 장기전에 대응하고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금번에 성립되는 것이매 연맹 금후의 성과는 일반으로 하여 금 다대한 기대를 갖게 하거니와 민중은 모름지기 연맹의 지도에 순응하여 언제나 정신을 긴장시키어 모두가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듯이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출전 :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그 創立總會에 際하여」, 『東亞日報』, 1938년 7월 2일〉

12) 한구(漢口)함락

1

항일장정권의 최대 거점인 한구(漢口)는 마침내 황군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작년 12월 13일 수도 남경(南京)이 함락되자 국민정부는 그 형식상의 수도를 사천성(四川省)의 중경(重慶)으로 옮겼다고 하나 실제로는 정부의 여러 중요기관을 한구에 두고 항일전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한구는 사실상 과거 1년 간 국부(國府)의 수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국부는 남경함락 후 무한삼진(武漢三鎭)⁶³⁾을 최대 거점으로 하고 장기 저항을 호언하면서 완강한 항일전을 근 1년 반 간 계속하여 왔

62) 경솔하게 단정함.

63) 양쯔강의 우안의 무창(武昌), 한수(漢水) 이북 좌안의 한구(漢口), 한수 이남 좌안의 한양(漢陽)을 무한삼진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군사·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왔다.

다. 그러나 신속(神速) 과감한 황군의 진격으로 국부의 무기, 물자의 최대국제항인 광둥(廣東)이 금월 22일에 함락되자 장 정권도 소위, 무한삼진의 사수를 방기치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

물론 한구의 함락으로써는 항일 장 정권이 완전히 궤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무한삼진의 상실이 장 정권에 대해서는 막대한 치명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지리상, 군사상, 경제상으로 극히 중요한 무한삼진을 잃고 오지로 쫓겨 가게 된 장 정권은 사실상 지방정권으로 전락되는 동시에 외국의 원장(援蔣)정책에도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금후 장 정권의 항일전이란 극히 소규모의 □□적 □□를 벗어나지 못할 것인 까닭이다.

3

그러나 제국 정부로서는 무한삼진의 입수로서 곧 사변의 종식으로 안심하는 처지는 결코 아니다. 비록 장 정권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거점을 거의 다 상실하였다고는 할지라도 의연(依然)히 장기 항전을 호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간접으로 장 정권을 원조하여 주는 모모 외국이 아직도 그 태도를 선명히 하고 있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도 금후에도 사변의 장기성을 철저히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漢口陷落」, 『東亞日報』, 1938년 10월 27일〉

13) 배영국민대회

1

금일 국민의 정신을 발양하고 국가의 총력을 발휘하여서 사변 목적 달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동아에 항구한 평화가 오도록 신질서를 건설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벌써 만 1년 간에 걸쳐 항일정권의 국민정부를 타도함에 있어서 황군의 무운이 혁혁하고 총후국민도 일치 결속하여 그 성과가 다대하거니와 이때에 오직 한 가지의 장애물(障害物)으로써 갖은 화근(禍根)을 가져오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구질서를 의연히 그대로 유지하고 반일과 반신정권(反新政權)획책을 계속하여 오는 제3국들이다. 그 중에서도 유독히 영국·프랑스 양국의 적극적 대일정세정책은 심각한 사태에까지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현저한 바 있고 그 온갖 획책의 근거지로는 일찍이 그들이 각지에 획득해 놓은 조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각지의 조계가 사변 목적 달성에 중대한 □□으로 되어 있는 중 목하 고랑서(鼓浪嶼), 상해(上海), 천진(天津) 등을 중으로 한 조계 대책은 다만 지나사변의 외곽(外廓)문제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핵심 문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다.

오늘 이 지구상에서 일몰을 모르고 “유니온잭”⁶⁴⁾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영국은 그 모두가 과거, 현재를 통하여 감행한 부정불의의 소산이다. 가는 곳 마다 닥치는 대로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자 점진적으로 정치적 지배를 수립하고 그 위에 노회(老獪)한 외교수단을 부려 제3국과 합작함으로써 소위 제국주의 공식을 그대로 하는 실천하는 것이 영국이다. 이제 잠시 지나에 있어서의 영국 소위(所爲)를 사적(史的)으로 개관하면, 16세기 초엽 이래 경제적 진출을 기도하여 교활한 외교와 무력의 협위으로써 드디어 아편전쟁을 유지하여 1842년에는 남경조약으로 홍콩 할양과 오항(五港) 개방에 성공하였고, 그 후 다시 프랑스와 합작하여 1858년의 천진조약, 1860년의 북경조약의 체결을 강행하여 경제적 진출에서 정치적 특권까지 획득하여 지나의 대외무역을 거의 독점하였고, 1895년 이후는 각 이권을 탈취하기에 전력을 경주하였으며 다시 국민정부가 성립되자 조삼모사의 갖은 술책을 다하여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실상의 지나 분할을 실천하여왔다. 그것은 저 서장(西藏), 청해(青海), 운남(雲南) 등 오지에까지 그 세력을 부식(扶植)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도 지나 전역에 얼마나 뿌리 깊게 침식하고 있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현 항일정권에 대해서는 인적 합작 혹은 물질 원조 등으로써 사변을 점점 천연(遷延)시켜가고 있다.

지난날 영국의 죄상을 더 지적할 것도 없으며 또 금일 조계를 항일 거점으로 형성하여 발로되는 항일 테러단의 횡행, 원장(援蔣) 행위의 여러 가지 구체적 사실도 열거하기 어려운 터이다. 이제 이상 영국의 오만한 태도를 이 이상 더 인용할 수 없는 정부는 엄중조치의 부득이함을 단정하였고 현지 군부에서는 천진의 영불 양 조계 봉쇄를 실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터인데 조선 언론기관의 대표자회(代表者會)인 춘추회(春秋會)가 꺾기하여 어제 오후 경성에서 배영국민대회(排英國民大會)를 개최하고 영국 응징의 취의(趣意)를 성명(聲名)하는 동시에 원장□공의 근거지인 조계의 철저적 □청(□淸)을 격(檄)하게 된 것도 또한 부득이한 처사라 하겠다. 만일에 조계 당국 내지 영불 각국 정부가 극동의 신사태를 양해하고 구질서 타파에 동의하여 성의 있는 항일 취체(取締)⁶⁵⁾를 한다면 오늘의 조계 문제가 이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리라. 그렇지 않고서 어디까지 신정권의 정치, 경제 정책을 교란하는 행동에 나아가는 것은 점령 지역 내에 신적국이 존재되는 것이니 이 존재를 그대로 두고서 사변의 목적을 어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곧 조계 문제의 현실적 해결이 긴급하게 된 소이인 것이다.

〈출전 : 「排英國民大會」, 『東亞日報』, 1939년 6월 16일〉

64) 영국국기를 일컬음.

65) 단속이라는 뜻.

14) 지나사변 2주년

1

금7일은 지나사변 발발 제2주년 기념일이다. 시난(時難) 극복에 매진하는 총후국민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전몰장병의 영령에 경건한 묵도를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난에 대처할 결의와 준비를 갖추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은 우리 국민에 한하지 않고 아시아의 민족이 계기(繼起)하여 기념할 날이며, 후일 역사상에 특기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운장구제(武運長久祭)를 집행하며 혹은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며 혹은 장절(壯絶)한 모의전을 실연하고 가무, 연회 등도 금지하는 등 모든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참으로 의의 있는 일이다.

2

돌아보면 재작년 7월 7일 노구교사건(蘆溝橋事件)에서 발단한 지나사변이 오늘과 같이 진전되었으나 이것은 결코 우연적인 한 사실이 아니었고 지나 측의 무모한 항일용공의 도전적 태도에 대한 부득이한 거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대륙의 민중으로 하여금 질곡으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하여 먼저 장개석(蔣介石) 정권을 타도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음으로 양으로 장 정권을 원조하는 제3국의 온갖 마수를 숙청하여 동양에 구원한 평화를 가져오고자 마침내 진무(神武)의 총검(銃劍)을 들게 되었으니 지금 대지에는 방공친일의 큰 깃발이 나무끼고 거룩한 동양의 신사명에 전 아세아 민중의 축복을 받으면서 가장 씩씩하게 수행되어 가는 중이다.

3

그동안 충용한 황군은 그 모든 신고를 참아가면서 삭북(朔北)의 위험한 산악에서 혹은 강남의 광황(廣荒)한 야원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군을 공격하여 파죽의 세로써 연전연승의 전과를 거두어 만리장성의 벽상(壁上)에 혹은 대황하의 변안(邊岸)에 혹은 자금산두(紫金山頭)에 혹은 저 멀리 해남도충(海南島沖)까지 광휘있는 일장기가 날리게 되었고 그 작전의 규모가 크고 또는 전투의 성과가 큰 것은 인류 전사상의 실로 공전의 기록으로 되었다. 이것은 오직 황공하시옵신 어능위(御稜威) 하에 보국 성충(盛忠)을 다한 출전장병의 무훈이 혁혁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온 2년을 회고하면 더욱 감개 무량한 바 있나니 오늘 기념일을 맞이하여 황군장사의 전훈을 경하하며 이 기념을 같이 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령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아직도 그 흑염맹풍(酷炎猛風)과 싸우고 있는 현지 장병의 노고를 삼가 위로하고 감사해 마지 않는다.

4

그러나 한편 현하의 실정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 자못 투안(偷安)⁶⁶⁾을 불허하는 바 있으니 그 집요한

장개석 정권은 의연 장기 항전을 지속하고 있고 또 영국, 소련, 프랑스 등이 그와 형영(形影)을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이다. 아직도 장 정권을 괴멸시키기에는 여일(餘日)이 있고 제3국의 간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남은 과제로 되었다. 천진, 고랑서(鼓浪嶼) 등지의 조계 문제와 소련의 불법월경(不法越境) 사건 등이 모두 그 표현의 하나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연상도 하지 못한 어떤 최악의 경우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 기념은 지난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앞날을 약속하고 경계하는데 의의가 더 큰 바 있다 하겠으니 국민된 자는 이 비상시 극복의 의기와 열성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총친화(總親和)의 대도(大道)에 내선일체의 구현으로써 사변 목적 달성에 어그러짐이 없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출전 : 「支那事變二周年」, 『東亞日報』, 1939년 7월 7일〉

15) 구주대전과 일본경제계

1

독파(獨波)⁶⁷⁾개전은 드디어 구주대전(歐洲大戰)으로의 발전을 보게 되어 경제계는 이에 대처해서 각종의 방책이 요청되고 있다. 생각건대 정치적으로 본다면 구주가 동양에 용□할 여력이 감쇄되었으므로 지나사변 처리는 촉진케 될 것이며 사변 처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제국의 국제적 지위는 현저히 양화(良化)될 것을 잇을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수출무역, 해운 등의 진전은 명백하다 하되 생산력 확충과 대륙 개발이 앞에 놓여있는 금일에 있어서 원료수입에 장애가 없다 할 수 없는 만큼 수출 여력이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현재와 같이 블록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세계대전 당시와 같은 무인황야를 자행자지(自行自止)할 수 있었던 수출의 진전도 기대키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도 구미로부터의 수출 원료 외에 생산 확충 자재 수입에 곤란하게 되리라고 본다면 자연 물동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은 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구주대전의 발발은 지나사변 처리 촉진, 수출 무역 진흥 가기(可期)란 호영향이 나타날 것인 만큼 요는 전쟁에 의한 악영향을 극력완화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그러면 구주대전에 의하여 제국경제계는 어떠한 반격을 일으키고 또는 일으키려 하고 있는가? 먼저 무역에 있어서 첫째 수출 무역이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1) 교전국의 대외 수요 환기로 제국 상품에도 수요를 환기하고 (2) 종래의 경쟁적 입장에 있던 교전국의 경쟁력 감쇄를 저하시켜 지극히 유리하다 할

66) 할 일을 미루어 두고 눈앞의 안일을 탐함.

67) 독일과 폴란드.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1) 군수품 수출은 난망이고 (2) 평화 상품도 무조건 □응은 어려우며 (3) 옛날과 같이 수출품 원료의 수입엔 자유가 없고 (4) 전시 불안에 의한 상거래의 □□ 등등의 사정도 있는 만큼 호악재(好惡材)는 상쇄케 된다. 더구나 수입난은 물론인 만큼 미국 의존의 도가 가중될지나 일미통상조약 폐기를 고려하면 이에는 또한 지장이 없다 할 수 없다. 여기에 물동계획에 지장을 운운케 되는 것이어서 요컨대 무역이 구주대전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수입무역의 방면에서 중시치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구주전이 오래 간다면 물동계획, 생산력 확충 양방으로 □□이 불가피할 것이 아닌가 하는 대□성의 □측도 무릇 이에서 출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터이다.

3

그러면 위체(爲替)⁶⁸⁾ 관계는 어떠한가를 일별하면 파운드화(磅貨)의 폭락은 자연 파운드화에 링크하고 있는 엔화에 지장이 미칠 것이요, 이를 엔화 링크에 대신한다면 달러화(佛貨)가 있으나 여기에는 현재 관측으로 보아서 위체 기준 변경 파운드링크제의 개편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곳에 일치되어 있다. 이것은 영국이 파운드화 동요를 방임한다면 영국의 전시 경제 수행상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므로 미국 원조 하에 위체 평형 자금의 재출동, 위체 관리의 단행 등으로 급속히 파운드화 안정에 착수할 것이라는 곳에 이유가 있고 따라서 세계대전 당시의 경험으로써도 필지(必至)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영일지이편(對英一志二片)의 위체 수준을 제국으로서는 근본 국책 시세로 하고 있는 만큼 금후의 형세를 충분히 감시할 필요는 충분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주대란이 가져오는 가장 잇을 수 없는 경제계의 선물은 해운□기의 전개인 것이다. 원양해운의 부진 중에 있는 해운계로서는 항권 회복의 호기를 구가치 않을 수 없을 것이요, 교전국의 하나인 대상선국(大商船國) 영국이 물러서게 된 오늘에 있어서 제국 상선은 오대양에 걸쳐 그 위용을 거둘 수 있을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닌 상식론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4

이상으로써 보면 무역은 수입 장해 염려와 물동계획의 영향이 중시되나 수출 진흥은 기할 수 있고 위체 수준은 당분 감시할 필요가 있으나, 해운계는 희유(稀有)의 활황이 상상됨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다시 생사(生絲)는 미국의 군수 산업 활발에 의한 인건 감산이 예상되는 만큼 생사 수요는 증가될 것을 기할 수가 있고 일영(日英) 면업전(綿業戰)에 있어서도 쉽게 제패될 수 있음을 생각해 하고 있다. 이제 제2차구주전은 극동에 있어서의 제국의 지보(地步)⁶⁹⁾ 강화와 자주 독왕(獨往)⁷⁰⁾의 전시 국책 진행에 유리한 소지(素地)를 주고 있음을 상상기에 어렵지 않은 한편에 있어서 구주대란의 발발은 총체적 개괄적으로는 호영향을 가질 수 있지만 극단적인 낙관은 경계를 요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전 : 「歐州大戰과 日本經濟界」, 『東亞日報』, 1939년 9월 6일〉

68) 환(換).

69) 자기가 처하여 있는 지위, 입장, 위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회 활동에서 바탕이 되는 일정한 지위.

70) 홀로 감. 남에게 기대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떳떳하게 나아감.

16) 경제전 강조운동

1

지난 1일부터 1개월 간을 경제전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국민운동을 일으키기로 되었다. 현대전의 특징이 경제전에 있고 이 경제전을 수행함에는 물자 동원이 철저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상식론이다. 그러므로 지나사변 발발 이래 벌써 3년 간의 전쟁 상태를 지속해온 오늘에 있어서 경제전의 취의를 다시 늘어 놓을 것이 없다. 또 우리는 그 동안에 있어서 경제전 주간 혹은 정신운동 주간 등 여러 이름 밑에서 전시에 있어서의 적절한 운동을 많이 실시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번 경제전 강조 기간에 있어서도 무슨 행사를 어떻게 실시할까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실행에 옮겨서 좀 더 성과를 나타내자 하는 것뿐이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데 항상 사람의 약점이 있거니와 알고서 또 행할 것을 선포해 놓고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된 자의 큰 수치가 안 될 수 없다.

2

우리는 지나간 무슨 주간이 있을 때마다 백 가지를 떠들기 전에 한 가지라도 기어이 실행하지는 것을 역설해왔는데 지내 놓고 보면 매양 실천에 유감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운동에 한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또는 그 무엇임을 불문하고 다 같이 한번 실행해보자는데 최대 목표를 두고서 새삼스러운 실행 사항 몇 가지를 되풀이 하고자 한다.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이번 경제전 강조 운동에 있어서는 물자 절약, 물자 활용, □미 절약, 생활 쇄신, 저축장려 등에 주력하게 되었다. 물론 이제 새로 필요를 느끼는 일이 하나도 없으며 더구나 어느 것이든 조금도 등한히 할 문제가 아니고 또 이때까지 일상생활에 실천화를 부르짖어오던 것들이다. 다시 그것을 열거해가면서 일반의 주의와 협력을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실행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천언만구(千言萬句)가 실행 두 자로 요약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해두고자 한다.

3

그러면 실행에 □□가 있는 원유(原由)는 무엇일까? 그것은 절대가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한 가지 타성에 있다 하겠지마는 첫째로 강조운동 그 자체가 다소 형식에 지친 공식방법에 기울어지고 마는 경향이 없지 않을 것을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어떤 행사를 주재(主宰)하는 측에서도 그저 공식적 행사에 대해 성량(聲浪)⁷¹⁾만 높이고 또 협조하여야 할 사람들은 그 때 그 때의 체면을 □□하고 마는 풍조가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한 때 한 일은 실행했으되 시간과 경우를 바꿔서 실행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의 실행이 헛되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행할 여유가 있는 층에서 실행이 적다는 것이다. 즉 물자를 절약할 여유가 있다는 사람이 절약을 하지 않고 물자를 좀

71) 세평(世評), 음파(音波).

더 더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활용하지 않으며 □미 절약, 생활 쇄신, 저축 여행(勵行) 그 어느 것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간에는 이 실행하여야 할 사람들에 절대 실행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4

물자를 절약하고 생활을 쇄신함에는 얼마든지 강력성이 있는 만치 실행할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는 없으며 비교적 부유한 계급과 지식을 가진 층계의 사람들이 많이 경제전 강조 운동에 참가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용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대다수의 세민들은 실행해야 할 행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참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를 □미 절약에 몬다면 조선의 세농(細農)들은 잡곡 소비 등으로 평시에 있어서 □미 절약을 부득이 하게 된다. 그러나 실행할 수 없는 사람은 도리어 실행하되 실행해야 할 사람이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다지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모두가 경제전에 참가해야 금일의 혁혁한 전과를 얻고 있는 것도 잘 아는 것이나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도 실행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실행을 보여 사변의 목적 달성에 나아가기를 다시 환기해 둔다.

〈출전 : 「經濟戰強調運動」, 『東亞日報』, 1939년 12월 2일〉

17) 부녀자의 노무동원

1

부녀자의 산업 동원은 반드시 근대 초유의 현상이 아니다. 경제적 주권자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던 상고의 모계시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업 중심인 봉건시대에 와서도 남경여□(男耕女□)이 비록 분업적 형식은 적격했을지언정 부녀자가 산업권내에 제외된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일과(一科)를 담당했던 것이다. 물론 소수 부귀층의 부녀에 한해서는 예절이란 질곡을 쓰고 대□□□으로 일생을 규각의 □중에서 보냈으니 이를 가리켜 상업상 무능력자라 하면 동서의 역사를 통하여 누가 부정할 것인가. 그러나 이는 어찌 여성에만 편□할 바이랴. 특권의 전당에 앉아서 농노의 노작을 성과로 향수한 남성 그들은 과연 산업상 정당한 능력자였던가. 이런 부류는 비단 봉건시대에 뿐만 아니라 산업 만능의 현대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 이상의 정도를 얼마라도 지휘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과거 혹은 구식의 여성을 무조건하고 산업상의 무능력자라 하는 것은 시정치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인식적 착오이다.

2

그런데 최근 조선에 있어서 각종 산업 부문이 기형적이거나 발달해온 도중에서 노동력을 유일한 밑천으로 한 농촌 남녀를 남경여□의 종래 세계로부터 현대적 산업 동원으로 소집치 아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남성뿐 아니라 여성까지라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서 공장으로 이동한 숫자가 또한 적지 않다. 더구나 근래 비상시국 하에 있어서 노무동원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조선인 노동력은 여력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부족한 감이 적지 않은 만큼 급격히 수요되고 있는 바이다. 실례를 들면 당국이 금년 중에만 각기 도외(道外)로 알선 이주시켜야 할 노동자가 8만 여명이며 또 일본 내로 도항(渡航)시켜야 할 노무자가 상당히 다수리라 한다. 현재 농번기를 앞둬도 불구하고 내외 도시, 광산 등 대규모적 공작으로부터 노동력의 공급지인 농촌인구에 대한 수요가 이러하므로 총독부에서는 이 노무동원에 관한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협조키 위하여 수일 전 사회과장회의를 열었는데 이 석상에서 내무국은 노동력 동원의 특별조치로서 각 노동장에 여자를 대신 동원시킬 것을 지시했다 한다. 그런데 여자를 동원하자면 무엇보다도 일정한 노무 시간에는 그들 자녀를 대리 간호하는 기관의 설치가 선결적 문제이다. 이 대책으로서 농촌마다 탁아소(托兒所)를 설치하고 적어도 농번기에 있어서는 유아를 탁아소에 맡겨 공동간호하는 동시에 그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리라 한다.

3

종래로 여자가 가간사(家間事)만을 맡고 옥외 활동은 남자에게 일임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 유아 양육이 중요한 조건이었다. 만일 탁아소의 설비가 예상과 같이 되면 부녀의 옥외 노동이 훨씬 자유로울 뿐 따라 능률이 물론 증진될 것이며 또는 유아의 양육에 있어서도 그 성적이 훨씬 양호할 것이다. 빈한하고 바쁜 농가 여자가 적신(赤身)⁷²⁾의 유아를 등에 업거나 품에 안거나 하며 노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노무에 방해될 뿐 아니라 양육에도 여간 불리한 것이 아니다. 탁아제는 이 양자를 동시 구제하는 사회적 사업이다. 선진사회에서는 이 제도를 아동 보호와 농촌 건설에 대한 중요한 것으로 하여 착착 진행하고 있는 바이다. 현재 빈궁한 조선 농촌에서 만일 당국의 예정과 같이 부녀의 노력(勞力)을 전부 자유롭게 옥외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비상시의 노무계획을 위하여 또는 어린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최대 □□할 바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을 실시하려면 시설의 처음에 있어서는 설립 및 그 유지비는 일종의 공영사업으로서 국고가 전부 부담하며 동시에 제반 설비를 충분히 하여 모성으로 하여금 불만이 없이 안심하고 영아를 임탁(任託)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만 제도의 유명무실의 통□을 극복할 것이다. 하루 바빠 실시되기를 기대(企待)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출전 : 「婦女的 勞務動員」, 『東亞日報』, 1940년 6월 1일〉

18) 지나사변 3주년

1

금일로써 의의 깊은 사변 제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마침 황기 2600년의 광휘 있는 식년(式年)을

72) 알몸. 맨몸.

맞이하러 국민된 자의 감개(感慨)는 실로 무량한 바 있는 것이다. 회고하면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야반의 총격을 발단으로 한 금차 □전도 연전연승, 이에 4년 황군공□군의 예봉은 □일의 중경(重慶) 항일군에 더욱 최후적 타격을 주고 있다. 원래 금차 사변은 북지 제29군의 폭력(暴戾)한 배일 행위에 대한 자위권의 부득이한 발동으로 당초에는 어디까지든지 불확대주의를 견지하였으나 전 지나에 걸친 배일 항일의 대세로 말미암아 황사(皇師)는 드디어 전면적 □□의 □□를 들게 되었으니 이것이 소위 침략적 전쟁과 그 질을 달리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개전 직후 8개월에 이미 북지 전역을 거의 점령하고 다시 5개월에 적(敵) 수도 남경(南京)의 역사적 공략에 성공하고 □□하여 크게는 전사(戰事) 불멸의 서주, 무한, □□, 남경, □□의 각 공략□을 감행하였으나 방금 지나 400여 주는 완전히 황위(皇威) 하에 □□되고 있다. 이 원래 어능위(御稜威)의 의연함이나 또 출전 장병의 진충보국(盡忠報國)의 대정신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 군에 대한 □□의 염을 일층 깊이 하는 바이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은 왕정위(汪精衛) 씨 중심의 남경 신국민정부 성립을 계기로 하여 종합적인 건설적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 3월 30일 화평건국의 대이상 하에 그 역사적 산성을 올린 정통 정부는 그 뒤 4월 26일 빛나는 남경 □도□축 식전을 거행하고 일로(一路) 일중 양국의 호조(互助) 연쇄적 유대강화를 목표로 그 정치적 방향을 준비 추진하여 왔다. 그리하여 재작년 5일부터는 동아 신질서 건설의 역사적 일중 국교조정교섭이 드디어 남경에서 우리 아베 특명전권대사 및 □□과 국민정부 대리주석 왕정위 씨 이하 행정원, 수뇌부 간에 정식 개시되었으니 선린우호, 공동방공, 경제제휴의 삼원칙이 구체화되어 동아 100년의 대계(大計)가 확립될 날도 머지않은 목전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써 곧 사변의 전도(前途)를 난관□함은 절대 금물이나 항일의 미몽에서 깨지 못한 장(蔣) 정권은 아직도 집요한 책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그뿐만 아니라 동아 전국(全局)의 형세와 이를 위요한 국제적 동향을 통찰하면 의연히 타개할 난관은 오히려 금후에 가로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구주대전과의 연관에서 극동 문제의 핵심은 벌써 제국의 뚜렷한 세계 정책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없다. 사변의 외연(外延)이 그 당초부터 극동전역을 전연 □□하였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으니 단적으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및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문제로 나타나는 전란, 구주의 파문은 아마 사변의 방향과 직접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원래 금차 사변은 지나를 무대로 한 열강의 각축으로 공산 및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거니와 영국·프랑스의 압력은 최근 점차 변색되고 있음이 사실이나 그 대변대행자인 미국의 태도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한편 소련은 동란에 대하여 표면 불개입 태도를 사칭하고 있으나 항일적성(抗日敵性)을 발휘하며 장 정권을 사주하여 제국의 대소전력 소모와 지나의 피폐에 의한 적화(赤化) 촉진을 기도하고 있으니 꺾간에 처하여 극동의 자주원칙 실현 즉 동아 신질서 건설 운동의 전도가 얼마나 용이치 않은가는 상상기에 어렵지 않은 바이다. 사변의 외연을 이렇게 생각할 때 사변 제3주년을 맞이한 국민의 각오는 어디까지든지 군관민일체, 황국의 대이상 하에 과